

1998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7. 11. 8

[농촌개발]

총6권중 제5권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8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9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8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개발과(전화 589-2040, 589-2042)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기획과(전화 589-2021, 589-069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8
3. '98. 주요 변경사항	11
4. 해설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자율사업	16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30
3. 주요골자	31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13호)	53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12호)	103
V. 참고자료	127
1. 42조원 지원계획	12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3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3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39
1. 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14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70
3.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공공)	192
4. 발기반정비(공공)	207
5. 일반경지정리(공공)	223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33
7.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248
8. 배수개선(공공)	270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3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22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46
12. 농촌생산기반조사및생산기반정비시범사업(공공)	365
13.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00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41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개량물꼬지원, 청정돈생산공급기지화, 소규모지표수개발, 지하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지역특화개발사업,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471
II. 농업기계화	489
16. 일반농가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491
17. 생산자조직및쌀전업농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540
18.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6
19. 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자금지원(공공)	606
III. 생산및유통개선	613
20. 미곡종합처리장및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615
21.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37
22.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 실시(공공)	640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5
23.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지원(공공)	677
24. 화훼계열화사업(공공)	685
II. 생산및유통개선	687
25. 과실생산유통지원(자율)	689
26.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자율)	714
27. 노지채소생산유통지원(자율)	748
28. 특용작물생산유통지원(자율)	766
29. 농산물규격출하(자율)	786
30. 생산자단체유통지원사업(자율)	797
31. 농산물포장센타건설및집하장시설보완(공공)	807
32.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46
33.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868
34.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875
35. 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880
36. 농수산물물류센타(공공)	887
37. 농산물화여객선건조(공공)	901
38. 농수산물도매시장및물류센타출하촉진자금(공공)	914
39.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921
40.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928
41.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34
42. 농산물무역진흥센타건립(공공)	954
43.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958
44. 우수농산물수매및유통지원(공공)	967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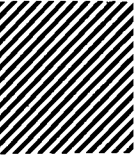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985
45.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자율)	987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가축,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분뇨처리)	
46.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071
47.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080
48.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1089
49.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097
II. 생산및유통개선	1099
50. 축산물종합처리장및공판장건설(공공)	1101
51. 축산물등급판정(공공) ..	1108
52. 축산물품질향상및유통시설지원(공공)	1113
53. 경영상담·홍보및기술개발(공공)	1140
54. 축산업협동조합경영개선(공공)	1143
55.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1149
56. 사료제조시설및사료원료구입(공공)	1153
57. 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공공)	1164
58. 학교우유급식(공공)	1178
59. 축산자조금(공공)	1185
III. 가축개량	1189
60. 한우개량사업(공공)	1191
61. 젓소개량사업(공공)	1209
62. 돼지·닭개량사업(공공)	1215
63.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223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1251
64.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및환경농업지구조성(자율)	1253
65. 농산물가공산업및특산단지육성(공공)	1295
II. 기술개발및정보화	1381
66. 농림수산물기술개발(공공)	1383
67.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393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68. 기술지도사업*(공공)	1414
(새기술보급시범사업및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기술시범사업, 품목별전문교육및농업인학습단체육성)	
III. 인력육성	1451
69.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453
70. 전업농및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1490
7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544
72.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공공)	1556
(특성화대학, 자연농수고, 축산교육시설지원,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IV. 소득원개발	1569
73.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571
74. 농공단지육성(공공)	1631
75. 한계농지정비(공공)	1648
76. 농축산경영자금(공공)	1662
V. 생활환경개선	1677
77.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679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시설, 농가주거환경개선*),	
78.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752

채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775
79.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777
80.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781
81. 임도시설(공공)	1785
82. 영림계획(공공)	1789
83.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1793
8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796
II. 생산및유통개선	1803
85. 임산소득증대(자율)	1805
(단기소득임산물생산, 조경수·분재소재생산)	
86. 임산물이용가공및저장시설(자율)	1824
87. 임산물생산자단체회원조합육성(공공)	1834
8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840
89.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1858
III. 인력육성	1863
90.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1865
91.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1873
IV. 환경임업육성	1885
9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1887
93. 산불방지대책(공공)	1892
94. 사방사업(공공)	1898
95. 산림생태보전(공공)	1902
96. 산촌종합개발(공공)	1908
V. 산림자원조성	1917
97. 해외조림사업(자율)	1919
98. 산림조성(공공)	1925
99. 산림병해충방제(공공)	1935



I. 생산 및 유통 개선

여 백

I.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 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소농단지는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농업기반 구축
-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인증 등 유통지원

3. 근거법령

- 농특세특별회계법제3조(회계의세입및세출) 및 농어촌발전대책(중소농지원대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00-04
사 업 량	개소 100	100	118	100		
사 업 비	계	25,000	25,000	29,500	25,000	
	국 고	12,500	12,500	11,800	7,500	
	지방비	5,000	5,000	5,900	5,000	
	융 자	2,500	2,500	5,900	7,500	
자 답	5,000	5,000	5,900	5,000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전업농육성 등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중소농 지원대책을 환경농업육성과 연계하여 농특세 재원으로 '95년도 부터 사업 시작

(2) 지원대상자(단지)

- 소유농지 1.0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ha이상 규모의 단지, 다만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는 소유농지 1.0ha이상 규모의 농가도 참여토록 하거나 10ha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음
 - ※ 구성원의 2/3이상인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 이상 이어야 함
 - ※ 단지에는 축산 또는 비닐하우스 농가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반드시 포함(시·군 관내에 벼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되어야 하며, 1.0ha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거나 10ha이하의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함.
- 유기·자연·토종농업의 경우 가급적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되 시장·군수가 사업목적에 적합한 지구를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음.

(3)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단지당 250백만원(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 융자조건 : 연 5%, 3년거치 7년 상환

(4) 지원시설

단 지 별	구 분	시 설 내 역	지 원 한 도
유기·자연농업단지	공동시설	○ 토착미생물생산시설(생산 시설 및 창고, 배합기, 로다, 운반차량 등 포함)	백만원 100
		○ 예냉시설	30
		○ 냉 장 차	20
	개별시설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60 40
기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단지	-	-	250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과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단지당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동·개별시설 상호간 사업의 규모 및 사업내용의 조정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타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은 사업중에서 중소농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신규로 발굴될 경우 단지조성과 함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 토착미생물을 접종·증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배양기, 간이건축물도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로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차량, 뒤집기, 콘베어벨트, 분쇄기, 톱밥제조기 등 필요한 기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원하는 단지에만 지원하되, 원하지 않는 단지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대신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또는 하우스 등의 시설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음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00	백만원 25,000	15,000 (60%)	7,500 (30%)	7,500 (30%)	5,000 (20%)	5,000 (20%)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후 7년상환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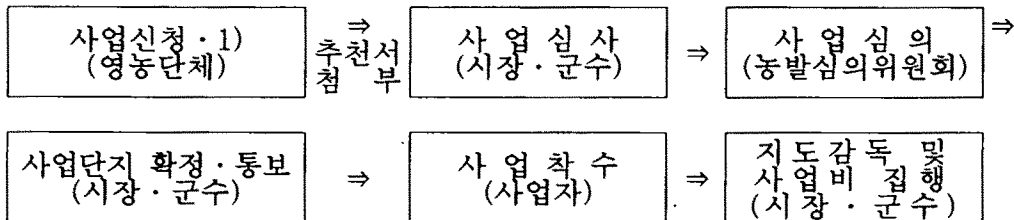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직할시 : 농정과)
- 시·군 : 산업·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주 : 1) 추천기관 : 농촌지도소, 농검, 농·축협, 유기, 자연농업협회 등

(2) 시설설계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 기 개발되어 있는 「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또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가 공동 개발 보급한 「유기·자연농업형 축사 설계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규모를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도를 작성 시공

○ 예냉시설

- 기 개발되어 있는 예냉시설 설계도를 이용(농업과학기술원, 식품개발 연구원의 설계도)

○ 토착미생물생산시설

- 자체설계도 작성 시공

○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기타시설

- 기 유사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기존시설 활용

- 시장·군수는 예냉시설, 냉장차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생산품목, 물량,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근의 기존예냉시설, 냉장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설치된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축사에 대한 규모확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음.

(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 시설별(공동·개별)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 참여농가의 합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승인된 단지(참여농가포함) 및 사업내용변경시
 - 사업계획변경(시설, 참여농가)은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 읍·면·리간 변경은 시장·군수가, 시·군간 변경은 시·도지사가 변경신청을 받아 승인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시공업체 선정

- 단지대표자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민 스스로 시공

(5)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기술 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6)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단지대표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설계서를 요하는 정도의 건축물 기성고는 전문직이 확인)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 (농가 직접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단지 및 시공업체로 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유인비 등 필요한 경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라. 기타 사항

- 소유농지 1ha는 토지대장상 논, 밭의 소유개념이며 동일거주인(처, 부모)은 동일인으로 간주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토착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비료는 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판매시는 비료 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아서 판매
- 단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은 희망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보증을 받아 출하
- 추천기관·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기술·경영지도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사업비 회수 명령을 할 수 있음

- 동 사업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내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중소농사업(보조금)으로 취득한 모든 시설·장비	준공·구입후	10년	타용도 및 사업목적외에 사용금지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사항 등을 기록

※ '97이전 중소농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도 소급적용함.

- 중요재산의 관리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나. 보고 기타

-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3월 20일, 6월 20일, 10월20일까지) (3월말, 6월말, 10월말까지)

※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은 별지1호서식 으로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월20일까지) (익년 3월말까지)

6. '99년도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소유농지 1.0ha 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유기·자연·토종농업조직, 우수농산물 작목반 등 복합경영농가조직)으로서 10ha 이상 규모의 단지, 다만,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는 소유농지 1.0ha 이상 규모의 농가도 참여토록 하거나 10ha 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음

※ 단지에는 축산 또는 비닐하우스 농가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반드시 포함(시·군 관내에 벼 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 되어야 하며, 1.0ha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거나 10ha 이하의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함.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 조직의 대표는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농협, 축협 및 환경농업단체연합 회원인 각 단체의 추천을 받고, 추천기관·단체의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추천기관·단체는 기술, 경영지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추천서,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5(사업개요)의가(2)”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단체로서 논에 타 작물재배,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설치시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함.

○ 우선순위

공통 :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여건이 적합하고 지도자가 있는 지역

- ※ 동일 조건시는 단지내에 소유농지 1.0ha이하의 중소농가 참여가 많은 영농단체가 사업자 선정에서 우선함.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중산간지 등으로 유기·자연·토종농업 선도농가가 있는 영농단체로서 단지참여 희망농가중 신청일 현재 1농가 이상이 농검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하고 있는 영농단체

2순위 : 유기·자연·토종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단체

3순위 : 중소농으로서 고품질농산물생산 단지화가 가능한 영농단체

○ 선정절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를 확정

바. 기타사항

-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사업의 시설메뉴 외에도 타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시설·장비)중에서 중소농의 소득증대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권자(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1호서식]

심사제외

'97 중소농사업계획(IV)

사업명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¹ 조사기준일 년 월 일

1. 일반사항

² 단 자 명	³ 사업시작년도	⁴ 농법	<input type="checkbox"/> 1.유기 2.자연 3.토종 4.혼합 5.일반 6.기타			
⁵ 대표자	⁶ 주민번호	⁷ 전화번호				
⁸ 주 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 □□ □□□ □□□	⁹ 학력	<input type="checkbox"/> 1.농수산계 2.기타 <input type="checkbox"/> 1.대졸 2.전문대졸 3.고졸 4.중졸 5.국졸 6.기타			
¹⁰ 작 업	<input type="checkbox"/> 1.농업 2.축산업 3.어업 4.임업 5.기타	¹¹ 영농종사경력	개월	¹² 교육훈련	주	
¹³ 경영장부 기록여부	<input type="checkbox"/> 1. 일별기록 2. 주별기록 3. 월별기록 4. 미기록					
¹⁴ 환경농업실천	<input type="checkbox"/> 1. 환경농업100%실천 2. 80~100%미만 3. 50~80%미만 4. 50%미만					

2. 조직(단지)현황

¹⁵ 설립일	¹⁶ 단지위치	<input type="checkbox"/> 1.상수원보호구역 2. 중산간지 3. 평야지 4. 기타 <input type="checkbox"/> 1. 개발제한구역밖 2. 개발제한구역내 3. 기타 <input type="checkbox"/> 1. 반경 1km이내 집단화 2. 2km이내 3. 2km밖			¹⁷ 단지규모	ha				
¹⁸ 참여농가수	호	¹⁹ 추천기관	²⁰ 주작목				<input type="checkbox"/> 1.벼 2.시설원예 3.과수 4.화훼 5.축산 6.기타			
²¹ 재무현황 (백만원)	자본금	부 채			자산평가액	가급조성액	²² 사업소득			
		조 합	시중은행	기 타			합 계	지원전	백만원	
							지원후	백만원		
²³ 영농규모	경종농업(ha)				축산(두,수,퐁)			시설원예		
	벼	채 소	파 수	감 곡	기 타	계	소 돼지 닭 염소 양봉 기타	두 수 평수		
²⁴ 유통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집하장		선별기		기타시설	
	동	평	대	톤	동	평	대	톤	중	대

3. 사업추진 상황

(금액단위 : 백만원)

²⁵ 당초 사업계획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하 우 스			축 사			기타
	건축물			부대장비			평수	금액	대수	금액	동수	평수	금액	동수	평수	금액	
	동수	평수	금액	수량	금액	금액											
²⁶ 최종계획																	
²⁷ 집행실적																	
²⁸ 부대장비대수	배합기 <input type="checkbox"/> 대 로다 <input type="checkbox"/> 대 운반차량 <input type="checkbox"/> 대 배양기 <input type="checkbox"/> 대 분쇄기 <input type="checkbox"/> 대 톱밥제조기 <input type="checkbox"/> 대 콘베어벨트 <input type="checkbox"/> 대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																

4. 생산·유통·판매현황 ²⁹

²⁹ 판매방법	<input type="checkbox"/> 1.단지회원공동판매 2.개별판매 3.기타 <input type="checkbox"/> 1.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2.백화점납품 3.회사납품 4.농협위탁 5.협회위탁 6.일반시장 7.기타						
품질보증	<input type="checkbox"/> 1.농검품질인증 2.시·도지사(시장·군수) 3.농협 4.협회등 민간단체 5.무보증 6.기타						
가격차별	<input type="checkbox"/> 1.일반농산물대비200%이상비싸게 2.150~200%미만 3.130~150%미만 4.130%미만						

【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보고서 기재요령 】

※ 모든 숫자는 정수로 기재하고 금액단위는 백만원

1. 조사시점을 기준
2. 단지명칭을 기재하되 약칭으로 기재, 예)자연농업협회나주시지회 → 자농나주시회
3. 사업지원 년도기재(1996)
4.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농법을 기재하되 단지참여 농가마다 농법이 다를 때는 혼합으로 기재
5. ~13. 단지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력, 직업, 영농종사경력, 전문교육이수실적(누계), 영농상황 등 경영장부 기록실태를 기재
14. 단지참여농가중 환경농업실천농가수를 기준하여 기재
15. 법인은 법인등기일 비법인은 결성일 기재
16. 단지위치가 겹치거나 일부지역이 부분적으로 겹칠때는 상위번호를 기재
 예)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중산간지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부지역은 중산간지이고 일부지역은 평야지일 때는 중산간지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밖이고 일부는 개발제한구역내일 때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표기
 ※ 중산간지 : 해발 250m이상, 평야지:해발250m이하
 ※ 단지의 반경거리는 사업시설물 위치를 기준함
17. 단지 참여농가 전체의 소유농지
18. 단지 참여농가수
19. 사업신청시 추천기관을 기재(지도소, 농검, 농·수·축협, 유기·자연농업협회 등)
20. 소득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큰 작목을 기재
21. 단지의 공동사업 자본금, 공동부채, 공동자산평가총액, 공동기금조성액 기재
22. 참여농가 평균의 연간 농업소득을 사업전, 후로 구분 기재
23. 단지참여농가 전체의 영농규모로서 경종농업이 이모작일 경우에는 면적×2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닐하우스의 재배면적은 채소, 과수작목 등 경종농업에 포함하여 년3기작일 경우 면적×3으로 환산기재, 시설원예란에는 비가림시설 등의 하우스 시설규모를 기재
24. 단지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을 기재
25.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하며 단지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은 건축물과 부대장비 및 구입할 장비와 시설을 구분 기재하며 사업비 금액 총계는 250백만원임
26. 최종변경계획 내역을 기재
27. 항목별 사업계획에 대한 시설설치 공정 진도 및 장비구입 실적 진도를 기재
28. 토착미생물생산시설의 부대장비(28항)에 대한 대수 예) 로타 2대인 경우 □에 “2” 기재
29. 유통·판매현황을 기재하되 겹치거나 중복시는 상위번호를 기재

II.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입니다.

1. 목 적

-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개량해 나가며, 이를 모델로하여 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
-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농업기반 구축
 -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 종합농토배양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개량
 -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 참여 확대
- 환경오염방지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 축산폐수 및 생활오폐수처리, 폐영농자재 수집
-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환경농업의 확산
- 사후관리 강화로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3. 근거법령(지침)

-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96.7.1)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년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업량	- 개소	-	-	5		
사업비	백만원					
	계	-	-	10,000		
	보조	-	-	4,000		
	유자	-	-	-		
	지방비	-	-	-	4,000	
자부담	-	-	-	2,00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96.7.1 수립·추진하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에 의거 농약·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개량하며, 유기·자연 농업 등 환경농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국내 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그린라운드 등 환경농업관련 국제논의 동향에 대비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대상자

- 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직

○ 지역

- 정부에서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변 지역도 가능함
 - 환경농업 실천농가가 많고 지도자가 있으며 참여의지가 강한 곳
 - 다양한 품목으로 연중 소득이 가능하고 판매가 용이한 곳
 - 기존시설 활용 및 환경농업 기술교육장으로 활용이 용이한 곳
- ※ 정부가 지원한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사업을 받은 지역을 제외함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을 받는 지역도 선정이 가능함

○ 작 목

- 벼,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전작목

○ 시설·장비

- 농약·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개량하는데 필요한 미생물배양기, 배합기, 분쇄기,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및 폐영농자재 수집·처리시설등 환경농업 관련 시설·장비
-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기술교육장 활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 ※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계획된 시설·장비는 제외

(3) 지원 단가 및 지원조건

- 개소당 20억원(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20%)

(4) 지원시설의 종류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사업	○ 미생물배양증식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창고, 배합기, 로더, 운반차량, 콘베어벨트, 분쇄기 ○ 목초액·녹즙, 현미식초 등 천연자재 제조시설·장비 ○ 병해충종합방제(IPM),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 - 유아등, 제초기계·장비 등 ○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개선
② 축산분뇨 등 오염경감사업	○ 농산부산물 및 음식물찌꺼기 퇴비·사료화시설 ○ 축산분뇨퇴비화시설 및 공동퇴비제조시설 ○ 톱밥제조기, 팽연왕겨 제조시설 등
③ 농토배양	○ 석회, 규산, 객토 등 종합농토배양 ○ 유기질퇴비, 벤트나이트, 제오라이트, 맥반석, 패화석, 활성탄, 유기물 발효제 등 필요한 자재 공급
④ 환경오염방지 사업	○ 축산폐수 및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수집·처리시설 ○ 음식물쓰레기 및 폐영농자재 수집·처리시설 ○ 부레옥잠 등 정화식물 재배시설
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 유가·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 오리사육목책, 우렁이 월동시설 등 필요한 시설 ○ 선별기, 포장기 등
⑥ 기술지도 및 교육 사업	○ 마을회관 또는 휴·폐교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교육장 - 교육장 숙박·난방시설, 실험기자재 등 필요한 시설·장비
⑦ 유통·판매사업	○ 예냉시설, 냉장차, 직판장 등 필요시설·장비 ○ 직거래추진, 계통판매 및 수매, 판매장 등 유통·판매사업
⑧ 기 타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환경농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시설·장비 ○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공동부대경비

※ ①~⑤환경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전체사업비(최고 20억원)의 3/4이상이어야 함.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로 부터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장비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증축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인이용시설장비는 해당농가에 동일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총사업비에서 휴·폐교, 판매장, 부지 등의 구입·임대비는 포함(지원)되지 않음.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환경농업 지구조성	개소 5	백만원 10,000	4,000	4,000	-	4,000	2,000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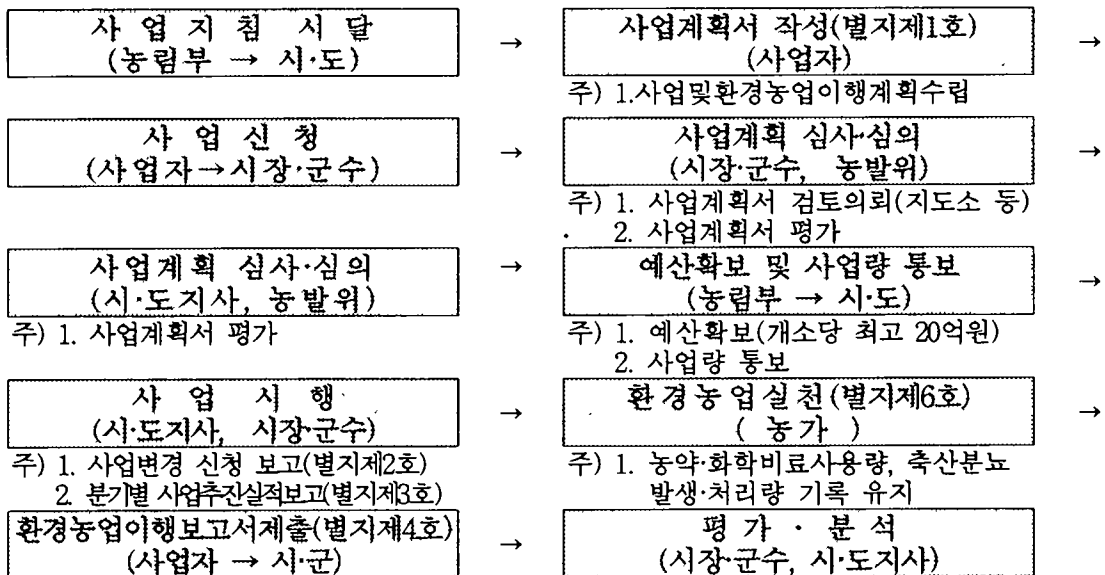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 : 산업·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주) 년회(10년간)환경농업 이행상황 제출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절차

- 사업계획 승인
 - 농림부장관이 확정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
- 사업계획 변경
 -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기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 ※ 시공업체가 공사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 사업자는 사업내용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별지 제5호 서식)이 가능함

○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마을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 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라. 기타사항

- 지구의 규모와 참여농가수의 제한은 없으나 “지구(지역)조성”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시설·장비의 투자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 “관리 카드”를 비치·기록·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부터	10년간	○ 환경농업 이행기간 및 장비 내구 연한을 감안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10년간(장비는 5년)타인에게 시설을 양도를 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장비	장비구입시 부터	5년간		

○ 농 가

- 참여농가는 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인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자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비치하여야 함.

○ 사업자

- 사업자는 참여농가의 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의 기록이행상황을 분기1회이상 확인·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업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작성하여 다음해 1.31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약의 사용량 및 잔류량, 화학비료 사용량,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 토양의 성분(산도, 유기물, 규산, 중금속), 환경농업실천(유기, 자연, 토종, 오리, 우렁이농법 등), 품질인증(유기, 무농약, 저농약)등 환경농업 이행상황을 사업시행 전·후로 나누어 연차별 변동상황을 평가·분석하여야 함.
- 생산물의 농약잔류분석은 농산물검사소, 토양의 성분분석은 시·군농촌지도소에 시험의뢰하여 시험결과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함.

○ 시·군 농촌지도소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자가 토양 성분분석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성적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농촌지도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 방법 등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농산물검사소

- 농산물검사소장은 사업자가 생산물의 농약잔류분석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성적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농산물검사소장은 소속 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품질관리, 각종농법,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의 재배조건 및 포장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품질인증 참여농가가 많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 협

- 해당지역 농협조합장은 환경농업지구에 판매한 농약·화학비료량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역농협조합장은 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서울)이용, 위탁판매 주선, 민간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농산물 판매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환경농업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촌지도소, 농산물 검사소,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성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환경농업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전년도 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사업지구를 도내 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시켜야 함.

나. 보고·기타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98년 다음분기 5일까지) (’98년 다음분기 10일까지)

○ 환경농업이행보고(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99.1.31까지) (’99.2.15까지) (’99.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99.3.20까지) (’99.3.30까지)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99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2)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다.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의 대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설·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 신청

라.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공통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서류(첨부서류 누락시 사업신청 불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지원사업 현황(붙임 1)
 - 현재의 영농현황(붙임 2)
 - 각서 및 참여 동의서(붙임 3)
 - ※ 주민 회의록 사본 첨부
 - 부지사용승인서(붙임 4)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1조 내지 제19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별로 아래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붙임 5)를 발급받아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보완
 - 읍·면·동 : 농가, 경지면적, 지구현황 등 일반여건
 - 지도소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 검 : 품질인증 현황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 협 : 재무구조,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기준(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1. 사업 계획서 (20점)	가. 농약·화학 비료·축산 분뇨 등 오염경감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의 단계별 절감계획, 축산분뇨의 자원화계획 등 환경오염경감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나. 농업환경 유지·개량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농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퇴비)사용, 객토 및 토양 개량제공급, 깊이갈이 등 종 합농토배양확대를 통한 농업환 경유지·개량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다. 환경농업 육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육 성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 한 평가
	라. 유통·판매 대책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현재의 유통·판매 실태 및 앞으로의 유통·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대책 등 장기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
2. 지도자 (100점)	가. 지도력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3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25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20점(상중이외의 신청자) 	○ 과거 이장, 영농회장, 4H회장 등 지도자 경력 반영
	나. 학 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대학졸업자: 20점 ○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자: 15점 ○ 기타 학교졸업자: 10점 	○ 다음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 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관이 인정한 독농가농장 및 연수 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민간단체(환경농업단체연합 회원단체) ※ 교육기간은 통산일수를 적용하며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만 통산일수에 반영됨
	다. 영농교육 훈 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25점 ○ 3개월이상 : 20점 ○ 1개월이상 : 15점 	
	라. 영농경력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15-25년 : 25점 ○ “ 10-14년 : 20점 ○ “ 10년이하: 15점 	○ 농업관련 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 경력으로 인정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3. 일반여건 (100점)	가. 영농규모 (25점)	○ 65ha 이상 : 25점 ○ 30 ~ 64ha : 20점 ○ 30ha 미만 : 15점	○ 대상지역의 지목상 논·밭 면적 기준
	나. 농가의 연령 (25점)	○ 50% 이상 : 25점 ○ 40~49% : 20점 ○ 40% 미만 : 15점	○ 20~50세의 순수농가(학생, 취업자 제외)로서 주민등록표 상의 연령을 적용(여자 포함) ※ 20~50세 농가인구/대상지역 농가의 20세 이상 인구· (남녀포함)
	다. 벼재배 농가 (25점)	○ 90% 이상 : 25점 ○ 60~89% : 20점 ○ 60% 미만 : 15점	○ 전년도 벼 재배기준 ※ 벼재배농가/대상지역농가
	라. 관광 및 홍보 (25점)	○ 상 : 25점(1개소 이내) ○ 중 : 20점(2개소 이내) ○ 하 : 15점(상·중외 신청자)	○ 객관적인 관광·홍보여건을 종합판단
4. 환경농업 여 건 (100점)	가. 환경농업 실천농가 (30점)	○ 20% 이상 : 30점 ○ 10~19% : 20점 ○ 10% 미만 : 10점	○ 전년도 말까지 농검의 품질인증 (유기, 무농약, 저농약) 실적기준 ※ 품질인증농가/대상지역 농가수
	나. 사 업 참여도 (30점)	○ 80% 이상 : 30점 ○ 60~79% : 20점 ○ 60% 미만 : 10점	○ 사업참여 농가의 동의서에 의함 ※ 사업참여농가/대상지역농가수
	다. 가 존 사 설 (20점)	○ 5억 이상 : 20점 ○ 2~4억원 : 15점 ○ 2억원 미만 : 10점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설 투자사업한 투자총액 기준 ※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한 금액도 포함되며 최종정산 금액 기준임
	라. 판 매 방 법 (20점)	○ 참여농가의 80% 이상 : 20점 ○ 50~79% : 15점 ○ 50% 미만 : 10점	○ 자체유통판매망(직거래 포함)을 통하여 판매 ※ 연간 생산량의 1/2 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객관적인 자료 제시)

- 평가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보고서(붙임 6)와 지방비 확보의지 등을 감안한 검토의견서(붙임 5)를 작성 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본일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제출기한 : '98. 2. 28)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도지사는 평가 순위별로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붙임 7) 및 사업비 집계표(붙임 8)를 작성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등 종합 검토 의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본일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및 예산 신청(제출기한 : '98. 3. 31)
- 우선순위
-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평가결과 점수를 적용한 순위
- ※ 평가결과, 사업계획서상 ①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②농업환경 유지·개량 ③환경농업육성 ④유통·판매대책 항목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된 경우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선정절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도 평가항목인 “1.사업계획서”항을 평가하여 시·군의 평가 점수와 합산, 평균치를 적용하고 여타 “2.지도자, 3.일반여건, 4.환경농업여건” 항 점수는 시·군 평가 점수를 적용, 순위를 정하여 시·도 농발위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서식)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최고지원한도액 : 20억원)
- ※ 아래 사업계획에서 5)장기운영 계획이 어느 한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가. 현 황

기본현황

- 위 치 : 사업대상지역 등
- 인 구 : 세대수, 농가수, 인구수(남, 여)
- 농가현황 :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규모, 농법 등
 - 노 동 력 : 20~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 경지면적 : ha(논, 밭)
 - 영농규모 : 경종, 축산, 비닐하우스
 - 농 법 : 일반농법 농가수, ha, 환경농업농가수, ha

조직현황

- 대표자(지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 학력, 경력 등 상세히 기록
 - ※ 필요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
- 조직 : 조직명,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회원수, 사업내용 등 상세히 기록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 총 투자금액 : 백만원
- 본 사업과 연계가능여부 및 활용계획

나. 지구의 특징

- 지리적·기후적 특징

다. 환경농업 실천방법 및 생산물의 특징

- 농법, 농산물의 특징 등
 관광·교육·홍보적 특징
 유통·판매의 특징
 후손이 물려받을 여건 등
 기 타

라. 사업내용

1)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사업	○ ○ 소 계		
2. 축산분뇨 등 오염경감사업	○ ○ 소 계		
3. 농토배양사업	○ ○ 소 계		
4. 환경오염방지시설	○ ○ 소 계		
5. 안전농산물생산사업	○ ○ 소 계		
6.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 ○ 소 계		
7. 유통·판매사업	○ ○ 소 계		
8. 기 타	○ ○ 소 계		
계			

※ 개별시설·장비는 개별 농가명을, 공동시설·장비는 수혜(이용)자 ○○○의 명으로 기재

- 2)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3)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 4) 세부사업 추진일정 :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소요액

5) 장기운영계획

- 현재의 실태와 연차적 절감·개량·육성계획 -

- ①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경감 계획 및 이행방법
-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 계획 및 이행방법
- ③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이행방법
- ④ 유통·판매대책 및 이행방법

- 6)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 환경농업확산대책
- 7) 사업비 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8) 투자 예상효과 : 세부사업별 예상 효과
- 9) 사업계획 도면

바.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사업신청자 작성)
2. 현재의 영농현황(사업신청자 작성)
3. 각서 및 참여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 의견서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8. 사업비 집계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참여 동의를 받은 후, 지역의 농업·교통·인적조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설·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 사업대상지구의 위치, 지리·기후적 특징, 인구,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규모, 농법 등 기본현황
 - 대표자의 학력, 경력 등 지도자의 인적사항 및 조직의 명칭, 목적, 회원수, 사업내용 등 조직 현황
 -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실천농가 및 농법, 품질인증현황, 판매방법 등 농산물의 품질실태 및 교육·홍보·관광·유통·판매의 특징 등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현황(별지 제2호서식)과 그 활용계획
- 환경농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사업비 산출근거, 투자예상효과,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소요액, 현재의 농업환경 실태와 연차별 오염원 경감, 농업환경유지개량, 환경농업육성계획, 유통·판매 대책 등 장기운영계획 작성
 - ①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계획 및 이행방법
 -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계획 및 이행방법
 - ③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이행방법
 - ④ 유통·판매대책 및 이행방법
 - ※ 사업계획서 평가(시장·군수, 시·도지사)시 상기 ①~④항의 장기운영 계획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지목상 논에는 본 사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기술교육장으로서의 활용계획 등 작성

(붙임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읍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2)

현재의 영농현황

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작규모	참여동의		품질인증여부		재배현황				판매방법여부	
			가	부	가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가	부
세 대 주 (동거가족)		ha										
계												

주) ※ 전체농가중 20세 이상의 남, 여를 전부 기재하고 세대주 외는 이름만을()내서로 표시할 것

※ 재배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판매방법은 연간 생산량의 1/2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

(붙임 3)

각서 및 참여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 지 면 적 : ha
- 사 업 참 여 자 : 대표자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 허위, 과대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문구를 명시 하여야 함

199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사 업 참 여 자 주소	성명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을 것(동의 이후의 책임은 본인(동의자)이 짐)

(붙임 4)

부지사용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평)중 m(평)를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
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승낙자 (토지소유자) : (인)

199 년 월 일

○○ 군 수 귀하

(붙임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의 명

2) 검토의견

-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의견
 - 읍·면 : 농가, 경지면적, 지구현황 등 일반여건
 - 지 도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 검 : 품질인증 현황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 협 : 재무구조,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시·군 지방비 확보 의지 등 종합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읍·면·동, 지도소, 농검, 농협 등 각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발급받아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보완
- 시·도 : 사업목적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등 종합 검토의견

199 년 월 일

기관명 ○ ○ ○ ○ 관인

※ 기관별 각각 작성

(붙임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사·군 → 도 제출>

항 목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1. 사업계획서	가. 오염경감대책 나. 농업환경유지개량 다. 환경농업육성 라. 유통·판매대책 소 계	50점 50 50 50 200	
2. 지도자	가. 지도력 나. 학 력 다. 교육훈련 라. 영농경력 소 계	30 20 25 25 100	
3. 일반여건	가. 영농규모 나. 농가의 연령 다. 벼재배농가 라. 관광및홍보여건 소 계	25 25 25 25 100	
4. 환경농업여건	가. 환경농업실천 나. 사업참여도 다. 기존시설활용 라. 판매방법 소 계	30 30 20 20 100	
계	16개 항목	500점	

※ 사·군은 1-4항까지의 전항을 평가하여 시·도에 제출

(붙임 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시도	사업지구	순위	평 가 점 수				비 고	
			계 (500점)	1.사 업 계획서 (200)	2 지도자 (100)	3.일반여건 (100)		4.환경농업 여 건 (100)
								○1항은 시군 평가점수와 시도평가점 수의 평균 치를, ○2~4항은 시·군평가 점수를 기록

※ 시·도는 1항을 평가하여 시·군의 1항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평균함

(붙임 8)

사업비 집계표

< 시도 → 농림부 제출용 >

시·도	사업지구	순 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소 계					
소 계					
총 계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소(사업지구 명칭) :
2. 주민 등록 번호 :
3. 성 명 :
4. 사업 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량)	금 액	시설별(량)	금 액	
				※ 주민회의록 등 주민동의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월 일

신청자 : ○ ○ ○(인)

시 · 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 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심사제외

(/ 분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민등록번호 :

3. 성 명 :

사업내용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 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 다음분기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별지 제4호서식)

환경농업이행보고서

항 목 별	사업시행전(A)	사업후(1년차)(B)	대비(B/A)	비고
① 농 약	사 용 량	kg	kg	%	
	잔 류 량	ppm	ppm		
② 화학비료 사용량		kg	kg		
③ 축산분뇨(처리량/발생량)		()/()톤	()/()톤		
④ 환경농업 유자개량 (토양)	산 도				
	유 기 물	%	%		
	규 산	ppm	ppm		
	중 금 속	ppm	ppm		
⑤ 환경농업 육 성	유 기 농 업	농가	농가		
	자 연 농 업				
	토 종 농 업				
	오 리 농 업				
	우 령 이 농 법				
	·				
⑥ 품질인증	유 기 재 배				
	무 농 약 재 배				
	저 농 약 재 배				

199 년 월 일

○○ 군 수 귀하

보고서 제출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대표자는 매년 환경농업이행 보고서를 사업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익년 1.31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①항중 생산물(쌀)에 대한 농약잔류분석은 농검에, ④의 전항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시험의뢰하여 시험(시험기관이 시료채취)결과 성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5호서식)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위 치		TEL	
대 표 자	한글		사업내용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중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 사업내용중 시설·장비별로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함

(별지 제6호 서식)

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농가명 :)

일자별	농 약 사 용				화 학 비 료 사 용				축 산 분 뇨			대표자 확 인 (인)
	대상 작물	면적 (ha)	농 약 품목명	사용량 (kg)	대상 작물	면적 (ha)	비료명	사용량 (kg)	축종 (두수)	발생량 (톤)	처 리 이용량 (톤)	

※ 축산분뇨 월 발생량 : 한우(마리수) × 600kg
 젓소(“) × 975kg
 돼지(“) × 183kg
 닭 (“) × 4kg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자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농가별로 비치할 것

65 농산물가공산업및특산단지육성(공공)

I. 농산물가공산업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공산업과입니다.

1. 목 적

- 우리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원료농수산물의 구입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포장개선(디자인 및 용기개발)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수출 및 판로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 —
-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 지원으로 포장개선
 -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3. 근거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억원)

구 분	'89~'95년	'96년	'97년	'98년 (예산안)	'99~2004년	
사 업 량	1,053	160	134	101		
사 업 비	계	2,792	981	630	331	
	보 조	750	376	185	79	
	음 자	1,347	382	298	188	
	자부담	695	223	147	64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수산물 가공사업에 농어업인을 주체로 참여시켜 우리 농산물의 수요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대상

사업주체

- 전통식품개발사업 : 농어가 공동 및 생산자단체
 - 농어가 5호이상 출자한 농어가공동, 농어가 5호이상 출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운영기간 : 1년이상)
 - 기 지정된 특산단지 지정업체(식품분야)는 전통식품개발사업에 포함지원
 - 전통식품 명인 (공동사업 경우는 전통식품, 개인사업 경우는 산지일반에 준함)
- 산지일반가공사업 :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농어가 20호이상 출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운영기간:1년이상)
- 포장개선사업 : 정부지원 전통식품개발업체, 산지일반가공업체중 생산자단체,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 명인지정업체

대상지역

- 농어촌특별조치법상의 농촌지역 (법 제2조 제4항)
 - 군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은 전지역,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품목

-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농림부 고시 제1994-55호 의거 지정)
- 국내산 농수산물로써 원료조달이 용이한 품목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원료의 경합 및 판매 전망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취득한 품목

(3) 지원기준 및 조건

□ 신규지원

○ 신규사업 지원

- 기준사업비 이내인 사업 :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 : 기준사업비 보조지원 한도액과 신청 사업비의 20%인 자부담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담보가능한 경우에 융자금으로 지원가능

○ 기준사업비(단가)

- 전통식품개발사업 : 1개 업체당 250백만원
- 산지일반가공사업

┌	생산자단체 : 업체당 1,000백만원
└	일반업체 : 한도 제한없음

* 기준사업비는 예산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 전통식품개발사업비가 300백만원인 경우 (산지일반 생산자단체도 같은 요령임)

- 보조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의 30%인 75백만원
- 융자 : 300백만원(사업비) - 75백만원(보조) - 60백만원(자담) = 165백만원
- 자담 : 300백만원의 20%인 60백만원
- 포장디자인개선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 건당 개발비 기준 : 3백만원 이하
- 용기금형개발 :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 건당 개발비 기준 : 20백만원이하 (기획조사, 디자인개발, 목형, 금형, 생산용금형단계까지)

○ 국고보조 및 융자비율

-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사업(농어가공동, 생산자단체): 보조30% 융자50%, 자담20%
- 산지일반가공사업(일반업체) : 융자70%. 자담30%
- 포장개선사업 : 보조30%. 융자50%, 자담20%

○ 융자조건

-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농어가공동, 생산자단체)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
- 산지일반가공사업 (일반업체) : 연리8%, 3년거치 7년상환
- 포장개선사업 : 연리5%, 1년거치 4년상환

○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지원조건

- 업체당 3회까지 지원가능
- 수출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
- 수출용 추가지원시는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내용확인후 지원

□ 추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추가지원대상 : 기존시설비를 지원받은 공장 (수출 및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성장유망업체)
- 추가사업대상 : 공장증설, 시설현대화, 저장시설, 오·폐수정화시설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업체
- 지원조건 : 읍자만 가능하며, 추가사업비의 70%이내 지원

(4) 지원시설의 종류 등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부속건물, 오·폐수처리 시설 등 (부지구입비는 제외)
- * 저장시설면적은 총 시설 투자면적의 40% 초과 불가
- 가공기계류
- 포장개선사업 : 포장디자인개발(제품홍보물 디자인포함), 용기금형개발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98 사 업 비				자 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어촌구조개선)			
			계	보조	읍자	
합 계	101(150)	33,140	26,710	7,890	18,820	6,430
가공공장건설(계)	101	30,840	24,870	7,200	17,670	5,970
○ 전통식품개발	81	14,962	11,970	4,200	7,770	2,992
○ 산지일반가공	20	15,878	12,900	3,000	9,900	2,978
- 생산자단체	14	11,678	9,960	3,000	6,960	1,718
- 일반업체	6	4,200	2,940	-	2,940	1,260
포장개선(계)	150	2,300	1,840	690	1,150	460
○ 포장디자인개발	130	1,300	1,040	390	650	260
○ 용기금형개발	20	1,000	800	300	500	2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농림부장관
- 포장개선사업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 : (02) 504-9417~8, (02) 500-2677~8
- 시도 : 농정국(농수산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감귤과)
- 시군·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6월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대체지정 요청
 - 농어가공동(전통식품)의 사업대표자는 공동참여자와 함께 주요자산의 출자 내역, 공장건설, 경영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자체정관을 작성

포장개선사업

- 시도지사는 업체별, 용도별(디자인, 용기)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장디자인 개발의뢰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 개발계약 체결 등 사업실시

-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공인디자인 전문회사 이외의 무자격 디자인회사와 계약불가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 의뢰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디자인 전문업체도 가능
- 유리병 제조업체로서 법인신고를 필한 업체
 - ※ 유리병 중개업체(딜러)와 계약은 불허

(2) 사업비 집행방법

보조금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 경유 → 시도지사
 - 결정 : 시도지사 → 사업자
- 보조금확정(정산) : 시도지사가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융자금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협중앙회장(농특회계사무국) → 농·수·축협중앙회장 → 농·수·축협시도지회(지역본부) → 농·수·축협시군지부
- 신청 및 지급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결정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자 (시군지부에서 지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실시
- 시도지사는 수시로 관내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확인을 강화하고 경영부실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실시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사업승인후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 지원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사항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 시군간 사업장 변경
 - 품목변경
 - 시장·군수 승인 및 신고사항
 - 시군내 사업장 변경(승인)
 - 일반업체 구성원내 대표자 변경(승인)
 - 농어가공동·생산자단체 구성원내 대표자 변경(신고)
 - 상호변경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신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과 그종물 ◦ 가공기계류 	준공검사일 설 치 일	10년간 7년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으로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에는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대지를 포함 ◦ 가공기계류의 신규교체 시에는 예외 ◦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 법령 관련조항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용 필름 및 용기 	계 약 일	5년간	농림사업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 이면 허위계약방지 - 보조금 정산자료활용

나. 보고·기타

(1)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공통)

보고서명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서식
1. 사업추진 및 자금 집행실적	○ 매분기익월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별지 6호
2. 생산 및 판매실적	○ 익년 1월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8호
3. 포장개선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익년 3월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9호
4. 포장개선사업추진실적	○ 매반기 익월 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10호
5. 보조금 정산실적	○ 익년1월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7,11호

- (2) 시장·군수는 사업별로 사업현황 및 관리카드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상황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함
- (3) 시장·군수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
- (4) 농림사업평가규정 「농수산물가공업육성」(농림부 훈령 제881호, '96.12.23)에 의거 사업자는 가공공장 건설 및 가동상황을 성실히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5)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는 가공51150-136('97.4.30)로 시달한 가공업체 경영실태 조사계획(조사표양식)에 의거 '97년도까지 지원한 가공업체의 경영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99.1.31까지 농림부에 제출 (농협 회원업체는 농협중앙회가 조사 정리하여 유통공사에 통보)하고, 업체별 조사결과의 D/B구축을 완료토록 함
- 조사기간 : '98. 3. 1 ~ 12. 31
- 시도지사는 관내 가공업체로 하여금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회원업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가공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조치 및 행정지도 강화
- (6)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고, 특히 본 지침에서 정하는 디자인개발회사 또는 업체와 디자인 개발 계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체 이외의 다른업체와 계약시 재계약토록 지도)
- 시도지사는 업체별 사업비 정산시 가공공장 건설사업 및 포장개선사업 (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추진여부를 철저히 확인 (필요시 사진 및 증빙서 비치)하되, 지원자금이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사업계획을 위배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조치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유통과 또는 산업과 (제주는 감귤과)

○ 농산물 가공사업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수산물 가공사업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 ('98. 1. 20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 ('98. 2. 28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 ('98. 3. 31일까지)

다. 신청자격

(1) 지원대상자

전통식품개발사업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촌지역에서 전통식품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55호로 지정한 품목)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농가 공동 및 생산자단체

※ 농가공동이란 농가 5호 이상이 출자, 취업, 원료제공형태 등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동운영 또는 단독운영

- 농가 5호 이상 출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기 지정된 특산단지 지정업체(식품분야)는 전통식품개발사업에 포함지원

※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원

- 공동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통식품"에 준하여 지원

- 개인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일반"에 준하여 지원

산지일반가공사업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촌지역에서 농산물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농가 20호 이상 출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장개선사업

○ 정부지원 전통식품개발업체

○ 산지일반 가공사업지원업체

○ 농수산물가공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업체

○ 농수산물가공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 '98년도 신규시설사업자로 선정된 전통식품개발업체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지원업체

(2) 지원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중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규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촌지역 (법 제2조 제4항)
 - 군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은 전지역,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지원대상품목

-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55호에 의거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 국내산 농산물로써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 유사품목은 원료의 경합,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받은 품목에 한정, 다만, 농림부장관의 주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 사업신청하고 사업자 선정심의회 개최 1주일전까지 주류제조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

(4) 대상자 자격조건

- 가공공장 시설부지 확보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 (지상권) 확보
 -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 (입지기준확인서 첨부)
 - 대구·경북 재정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사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 등 보다 후위 순위로 인정
- 담 보 물
 - 본인(법인)소유 : 본인(법인)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등본 첨부)
 - 타인소유 :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첨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이 1년이상된 법인으로 다음서류 첨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의사록 (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 (시장·군수가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5) 기타사항

- 협동조합은 군지부 및 도지회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조합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청 (시장·군수는 조합이사회 의결내용이 수록된 의사록을 확인후 도지사에게 전달)
- 산지일반가공사업중 생산자단체는 부지를 제외한 시설투자비 규모가 1,0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경영인을 갖추는 조건으로 자금지원 (사업계획서에 위반시 융자금을 반납한다는 각서 별도 첨부)
- 농가공동은 공동출자, 취업, 원료제공형태 등으로 참여하고 공동운영 또는 단독경영도 가능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최저 1억원이상 출자된 법인으로 조합원은 가구당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정관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추천
- 특히, 출자비율 확인 (1인당 출자비율 25%이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총출자비율 준수 등)
- 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간 출자는 불가

라. 지원조건

신규지원

- 신규사업지원
 - 기준사업비 이내인 사업 :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 : 기준사업비 융자한도액과 신청사업비의 30%인 자부담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담보가능한 경우에 융자지원 가능
- 기준사업비(단가)
 - 전통식품개발사업 : 1개 업체당 250백만원
 - 산지일반가공사업

┌	생산자단체	: 업체당 1,000백만원
└	일반업체	: 한도제한 없음
 - 포장개선사업비 : '98사업단가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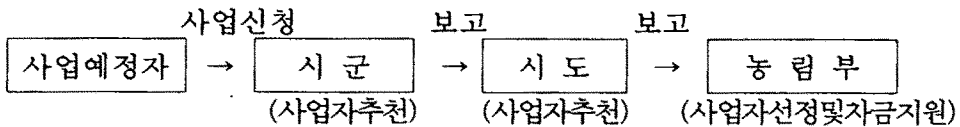
* 기준사업비는 예산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포장개선사업) : 융자70%,자담30%
- 융자조건
 -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농어가공동,생산자단체)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
 - 산지일반가공사업(일반업체) : 연리8%, 3년거치 7년상환
 - 포장개선사업 : 연리5%, 1년거치 4년상환

□ 추가지원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추가지원대상은 기존 시설비를 지원받은 공장으로서 수출 또는 내수분야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성장 유망업체에 대하여 공장증설, 시설현대화 등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하려는 업체
- 추가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용자지원

마.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가공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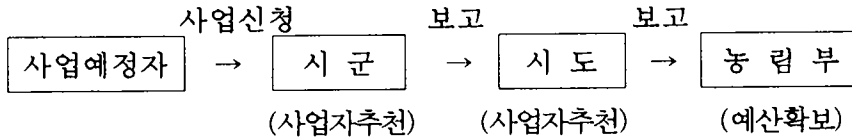


- (1) 지원대상자 지정신청 : 사업신청자 → 관할 시장·군수
 - 구비서류 : 별지제1호, 별지제4호, (별지 제4-1~4-5호서식포함) 3부
- (2) 지원후보자 선정진달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조서(별지 제2호서식)와 농촌지도소장 및 시장·군수의견서 등을 첨부 지원대상자 추천
- (3) 지원대상자 추천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및 시·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대상자를 선정 추천
- (4) 농·수·축·임·삼협중앙회장 : 회원조합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 부지확보 등 사업착수 가능여부 검토
 - 자체자금 조달능력 여부, 제품개발 내역 검토
 - 사업 타당성 검토 (적정투자규모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또는 확대)
 - ※ 사업성이 낮고 사업계획이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신청을 포기토록 유도
- (5) 지원대상자 지정 및 통보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각도별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타당성 검토와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예산범위내에서 장관이 최종사업대상자를 지정
 - 지원대상자 지정결과를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지원대상 예비후보자 지정

- (1) 장관은 사업자선정의 신속한 대체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타당성 평가와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자를 지정할 수 있음
- (2) 장관은 지정업체 대체선정이 필요할 경우 기 예비후보자 중에서 대체사업자를 지정
- (3) 장관은 대체지정된 예비후보자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선정된 예비후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포장개선사업



바. 구비서류

전통식품개발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①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② 산지가공지원후보자선정조서 (별지 제2호 서식)
- ③ 산지가공지원대상자추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④ 전통식품개발, 산지일반가공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식품관계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4-1~4-5호 서식)
- ⑥ 공장예정지 관계서류
 - ㉠ 토지대장
 - ㉡ 입지기준확인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지적도 (위치표시)
 - ㉣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타인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⑦ 담보물 현황

- ㉞ 등기부 등본 (본인, 법인소유)
- ㉟ 사용승락서 (타인소유)

⑧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㉞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 ㉟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부 포함)
- ㊱ 조합원 명부 (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지분율 기재)
- ㊲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군수 확인)

⑨ 농어가공동

- ㉞ 농어가공동(전통식품)의 자체정관

※ 위 순서에 의해 편철

포장개선사업

- 포장개선사업지원신청서 (시도에 비치) (별지 제5호 서식)
 - 붙임 : 사업현황(공통)1부, 수출실적 입증서류(수출용) 1부
- 포장개선사업신청현황 (시도에 비치) (별지 제5-1호서식)

신청서식 및 보고서식

1. 신청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시설비 지원

- 산지가공지원 대상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산지가공지원 후보자 선정조서 [별지 제2호 서식]
- 산지가공지원 대상자 추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전통식품개발, 산지일반가공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의견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별지 제4-1호]
 - 의견서 (농촌지도소장) [별지 제4-2호]
 - 의견서 (농협군지부장) [별지 제4-3호]
 - 의견서 (연구기관 또는 식품가공학 전공교수) : 신제품 또는 시제품 미생산 업체에 한함 [별지 제4-4호]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확인서 (시장·군수)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4-5호]

□ 포장개선사업비 지원

- 포장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신청현황 [별지 제5-1호 서식]

2. 보고서식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보고(분기보)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7호 서식]
- 생산·판매 실적보고(연보) [별지 제8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연보) [별지 제9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추진실적 보고(반연보) [별지 제10호 서식]
- 포장개선사업 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2월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m'	건물	m'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 1	계	정부유자	자부담		
		기준사업비					
		초과사업비					
		총사업비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p>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 ※ 주1) · 기준사업비 : 정부유자, 자부담은 각각 기준사업비의 70%, 30%를 기재
 · 초과사업비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정부유자 : 초과비용중 자부담 (초과비용의 30%)을 제외한 금액
 - 자 부 담 : 초과비용의 30%

[별지 제2호 서식]

산지가공지원 후보자 선정조서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구분	항목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
자격요건	1. 대표자의 지도력				
	2. 구성원				
공장입지	3. 인·허가 요건				
	4. 기존사업자와의 경합성				
	5. 원료권 형성				
	6. 주변환경				
사업계획	7. 사업계획				
	8. 생산계획				
	9. 원료조달계획				
	10. 자금조달계획				
	11. 판매계획				
신용상태	12. 부채				
	13. 자기자본 확보				
	14. 담보물 보유				
사업전망	15. 국내시장 경쟁력				
	16. 해외시장 경쟁력				
종합평가				우선순위	
구비서류	1.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전문가 의견서 1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사서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명	공장 예정지	대표자	사업명	가공 품목	주원 료	사업 형태	구성 원	시설규모			자금조달계획					
									부지 (㎡)	건물 (㎡)	설비 (종)	구분	계	정부 융자	금 기 차 입	음 관 입	자 부 담
1													기준				
													초과				
													계				
2													기준				
													초과				
													계				
3													기준				
													초과				
													계				
계													기준				
													초과				
													계				

※ 순위란은 운영주체 구분없이 전 추천업체에 대한 순위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전통식품개발, 산지일반가공) 사업계획서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

품 목 :

전화번호 :

※ 전통식품개발사업대상

- 농가 5호이상의 마을공동
- 농가 5호이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 이하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영농회사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산지일반가공사업대상

- 기준사업비 250백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일반업체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20호이상)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 당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지방부존자원 활용 측면
- 3) 고용효과
- 4) 향후전망
- 5) 기 타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기계류 평	사업구분 창설·증설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백만원
시설자금 기지원내역			

※ 시설자금 기지원내역(추가업체)은 지원년도와 지원금액(보조, 융자구분) 기재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현직책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붙임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기업체명 및 근무부서 기재

다. 조직현황

○ 영농법인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 인 명		등기연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 억원 (비농업인 억원, 비농업인 억원)		
사업실적			

※ 사업실적자료 붙임

○ 농가공동 (공동참여농가현황)

성명	주 소	소요경지 면적(평)	제품원료생산량		참여형태	날인
			원료(톤)	금액 (백만원)		

※ 참여형태는 출자(금액명기), 원료제공, 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동참여자의 총회의사록 및 자체정관 붙임

○ 일반업체

연 월 일	회사연혁 및 사업실적

3. 제품개발 내역 (계획)

품 목		원 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내역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조달방법 : - 제조가공방법 : - 제품특징 및 내용 ○ 연구용역상황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약 일 - 계약완료일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 비 용 : 			

※ 있을 경우 기재

4. 건설계획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 모	대 지	평	기계류 : 종, 점	
	건 물			
입지조건	제품과 원료의 수송, 노동력 확보, 주변지역 피해가능성, 부지 조성, 용수확보, 진입로확보, 공장설립관련법령상 제약요인 등 기재			
용 수	월 사용량 기재			
전 력	월 사용량 기재			
도 로				
통 신				
기 타				
공 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3」	금액	비고
1. 대지(자부담)					
2. 건 물 1」 가. 작업장 나. 일반창고 다. 저온창고 라. 사무실 등 마. 기 타					
3. 구축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자담) 다. 오폐수시설 라. 기 타					
4. 가공기계 2」					
5. 공기구비품					
6. 전기공사					
7. 설 계 비					
8. 기 타					
계					

※ 주1」 건물의 경우 비고란에는 건축구조계획 기재 (예 : 철골조판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구조 등)

2」 가공기계의 경우 규격 및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수량 및 총금액만 기재 (세부명세는 뒷면 “다”항 “주요가공기계명세”에 구체적으로 기재)

3」 단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

다. 주요 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계명 1」	규격	생산능력2」 (톤/시간)	수량	단가	금액	구입 (계획)처	비고 (TEL)
		W×L×H					

※ 주1」 기계명은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능력은 각가공기계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기재하며 저장탱크일 경우에는 저장능력 및 1회전 처리기간 명기 (필요시 견적서 붙임)

라. 사업부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고

※ 가공공장 시설부지 조건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다. (4)』에
맞아야 함.

5.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 모 (평)	단 가 (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계	용 자	금융기관 차 입	자부담
부지매입(자담)(A)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기 타					
	구 축 물 - 용수시설 - 수배전시설 (자담) - 오·폐수시설 - 기 타					
	가 공 기 계					
	기 타					
	시설자금합계(B)					
총 계 (A + B)						

※ 저온창고는 100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 기준

※ 시설자금 합계란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 금액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자금조달계획

○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 기 자 금				
외 부 차 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요청액은 제외

○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용 도
계						

○ 담보물 현황

소유자	종 류	면적(m ²)	추 정 가 격		지 번	비 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계						

6.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원료명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조달처 : 구입원료의 생산지

※ 조달방법 : 계약재배, 자가생산, 농민직구입, 도소매상 등 구입으로 기재하되 계약재배의 경우 관련 확인자료 첨부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제품명	단가 (원/kg)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기존생산능력을 비교란에 별도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기존 생산능력이 있으면 기재

※ 제품명은 생산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단가는 생산제품의 계획판매단가를 기재

※ 생산능력은 1일8시간 기준하여 년300일로환산하여 기재(기계의 생산능력기준)

8. 판매방법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수 량	금 액	판매(예정)처	비 고

※ 제품별, 판매회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 (예정)계약서, 상담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9. 생산·판매실적

구 분	년 도	물 량	금 액	주수출국	비 고
생 산	전전년도	톤	백만원		
	직전년도				
판 매 (수출)	전전년도	톤 (톤)	백만원 (천\$)		
	직전년도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실적 있으면 기재
 ※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신고내역등), 경영장부상 매출액, 생산일보 등 판매 및 생산실적 확인 자료붙임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자료)

10. 기술개발실적

구 분	적 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실적	
가공식품 KS표시허가실적	
디자인 개발실적	
신제품 개발실적	
가공산업관련 수상실적	

※ 적요란에 관련기관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특허출원 사항 등)

11. 기술인력 확보계획

성 명	주 소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 기술관련자격증 사본붙임

[별지 제4-1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 건)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 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지역내 경합여부, 기대효과 등
- ※ 시장,군수와 시도지사 의견서를 업체별로 각각 별도 작성

199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4-2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년실적, 금년계획)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계약재배 및 조달 가능성 등

199

0 0 군 농촌지도소장 직인

[별지 제4-3호]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199 년 월 일 기준)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음자		자담

2. 재산상태

자산종류	수량	예상평가액	부채종류	차입처	금액
주택,대지, 건물,공장 계		천원			천원

3. 조합거래상황 및 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 여, 부 ○ 조합이용도 : 적극, 보통, 거래없음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유, 무 - 조사기준일 연체금액 :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대위변제시설 : 유, 무 ○ 신용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개인정보신용조회표 활용)
---	---

4. 대출가능액 (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담보대출	공장(대지,건물) 잡종지, 전·답		천원		
신용대출					
계			천원		

※ 담보대출의 담보종류는 대지,건물,전·답,과수원,임야,공장,선박으로 구분

5. 종합의견

199 년 월 일
000 농협협동조합장 직인
농협 군 지부장 직인

[별지 제4-4호]

의견서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제품 생산공정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 ※ 신제품 생산업체 또는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는 업체

199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기록)

[별지 제4-5호]

출자내역 확인서

1. 사업체명 : 00 영농조합법인 또는 00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2. 대표자 :

3. 법인소재지 :

○ 조합원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체명의 회사유형에 ○ 표

○ 준조합원(영농법인), 비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출자자가 기업인 경우 성명란에 기업체명(대표자)기재

199

위 내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00 시장·군수 관인

[별지 제5호 서식]

포장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지원형태	전통()산지일반()기타()		지정년도 공장가동일	
	주생산품			전년매출액	백만원
	공장품목	대지: 평, 건물: 평(공장: 평, 창고: 평, 기타: 평)			
사 업 계 획	사업명			총 소요액	백만원
	재원조달 (백만원)	정부음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부동산() 기타 ()				
<p>상기와 같이 포장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시·도지사 귀하</p> <p>시장·군수</p>					
<p>첨부서류 : 1. 사업현황 (소정양식)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 (수출용개발의 경우)</p>					

< 붙임서류 >

사 업 현 황

1. 가공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내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담보제공계획

(단위 : 천원)

보 증 서			부 동 산				
발행처	보증금액	기 간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	추정가액	선순위액

[별지 제5-1호 서식]

포장개선사업 신청현황

시군별	소재지 (업체명)	생산품목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계	용자	자담	디자인 개발	용기 개발	금형	전통	산지	인증	

심사제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정상추진여부 (부진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공사추진(월일)					
			대지	건물	기계류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부지확보	승인일자	착공일		준공예정
			평(m')	평(m')	점												%	

주)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총공통-9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정산 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조합 및 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량(규모)						사업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집행실적(정산)						비율(E/D)	차년도이월액(E-F)	불용액(E-F)
			대지	건물(A)	기계류(B)	대지	건물(C)	기계류(D)	C/A	D/B	계	보조(E)	용자	자담	계	보조(F)	용자	자담					
			평(m)	평(m)	점																		

주1)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2) 차년도 이월 및 불용액이 있을 경우 발생내역 및 사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별도붙임

자체심사 가26-57

[별지 제8호 서식]

생산·판매실적 보고

(199 현재)

업 체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 품목	생산 능력 톤/일 (ℓ)/일	생산 및 판매현황							비 고 (문제점 및 부진사유)	
				생 산			판 매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판매액		수출액
			톤 (ℓ)/년	톤			톤 (ℓ)/년			백만원	\$	

- 주1)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 산지일반가공산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2) 판매액은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수출액 별도 표시

자체심사 가26-58

[별지 제9호 서식]

포장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계				디자인 개발				용기금형개발				비고(전통, 산지,인증 업체별구분)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보조	용자	자담	

심사제외

[별지 제10호 서식]

포장개선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업 계획									추진 실적								
		사업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사업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계	보조 자	용자 담	용기 형태	수 량	소요 금액	포장 방법	건 수	소요 금액	계	보조 자	용자 담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			%						%			%	

총공통-9

[별지 제11서식]

포장개선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업 계획									사업비집행				비율 (B/A)	보조금 내역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사업비			계	보조 (B)	용 자	자 담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개발 내용	건 수	소요 금액	개발 내용	건 수	소요 금액	계	보조 (A)	용 자							
															%		

Ⅱ. 특산단지육성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 입니다.

1. 목 적

-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고, 제품의 전시 및 판촉활동을 통한 판매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높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특산품을 지정·육성
-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육성 농외고용 및 소득증대 도모
- 특산단지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 특산단지제품의 시장정보제공 및 품질향상을 위한 단기간 공조활동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특산단지의 지정 신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특산단지의 지정과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특산단지육성》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예산안
사 업 량		363	70	60	50
사 업 비	계	80,280	17,500	17,200	13,600
	국 고	6,495	3,325	2,600	-
	지 방 비	6,495	3,325	2,600	-
	용 자	44,730	6,930	8,140	9,520
비	자 부 담	22,560	3,920	3,860	4,080

《특산단지 전시판매장》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예산안
사 업 량		9	1	2	2
사 업 비	계	8,100	1,550	2,000	2,000
	국 고	4,050	775	1,000	1,000
	지 방 비	4,050	775	1,000	1,00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을 생산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지원대상자

- 특산단지 :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단, 비농어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업인 참여)
- 특산단지 전시판매장 : 시·도지사(시장·군수)

(3) 지원규모 및 조건

《특산단지육성》

○ 시장·군수는 농협(군지회 또는 단협) 및 특산단지연합회(군지회 또는 도연합회)의 사업성검토를 기초로 사업성검토 종합평점표(별표2)를 작성하고 사업지구를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후 지원한도 결정

지원등급	평점결과	지원한도	비고
1등급	75점 이상	3억원	
2등급	75점~미만 50점 이상	2.5억원	
3등급	50점 미만	2억원	

○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지당 등급별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신규단지 : 시설비, 개발비, 운영비
- 기존단지 : 시설비, 운영비

'98단지당 지원기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지원기준액	
		국고융자(70%)	자부담(30%)
신규단지	140	98	42
기존단지	110	77	33

구 분	용자조건	비 고
시설비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시설자동화 및 사업장 신축 등
개발비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금형제작,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등
운영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8%	-원료구입 등

《특산단지전시판매장》

○ 총사업비 10억원내외중 국고보조지원액은 50%, 지방비부담 50%

-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지방비에서 추가소요액 부담

(4) 특산단지 육성사업의 참여형태 및 대상품목

-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이상협업형),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 대상품목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단, 일반공산품 및 식료품은 신규지정 대상품목에서 제외 할것
 - ※ 일반공산품의 개념은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말함

업종별	품목
민속공예품	죽제품,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패각가공, 원초가공등
농수산자재	싸리제품, 지물제품, 어망, 인삼발 등
섬유직물	모시, 삼베, 마포, 자수 등
석재분야	돌벼루, 솥돌, 돌가공제품 등

- 구비서류 : 사업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5) 특산단지 전시판매장 사업내용

-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
- 전시장 규모 : 250평 내외
- 운영방식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도 특산단지연합회에서 관리·운영
 - 관내 특산단지 생산업체가 입주판매 또는 직영판매도 가능

나. '98사업비(예산안)내용

《특산단지육성》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계	예산액			자부담
			계	국고	읍자	
계		13,600	9,520	-	9,520	4,080
시설비	110	8,800	6,160	-	6,160	2,640
개발비	50	1,500	1,050	-	1,050	450
운영비	110	3,300	2,310	-	2,310	990

《특산전시판매장》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예산액)	지 방 비
2	2,000	1,000	1,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특산단지육성 : 시장·군수
- 특산단지전시판매장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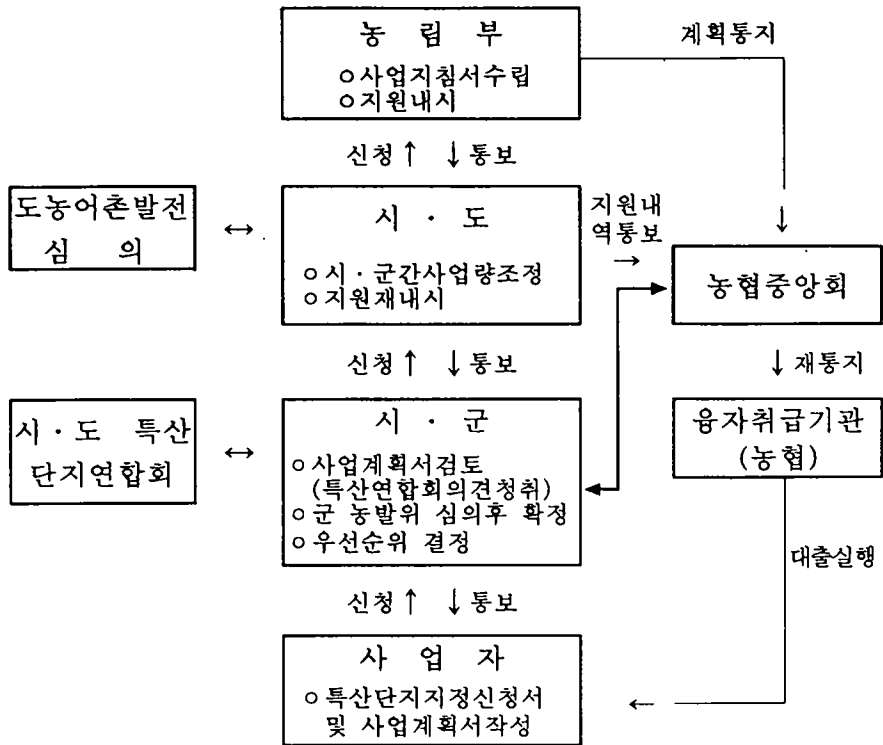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02)504-9404,9405)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추진절차

《특산단지육성》

- 농림부 : 사업지침서 수립 시달
- 사업자 : 지구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군”농발위 심의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확정

○ 시행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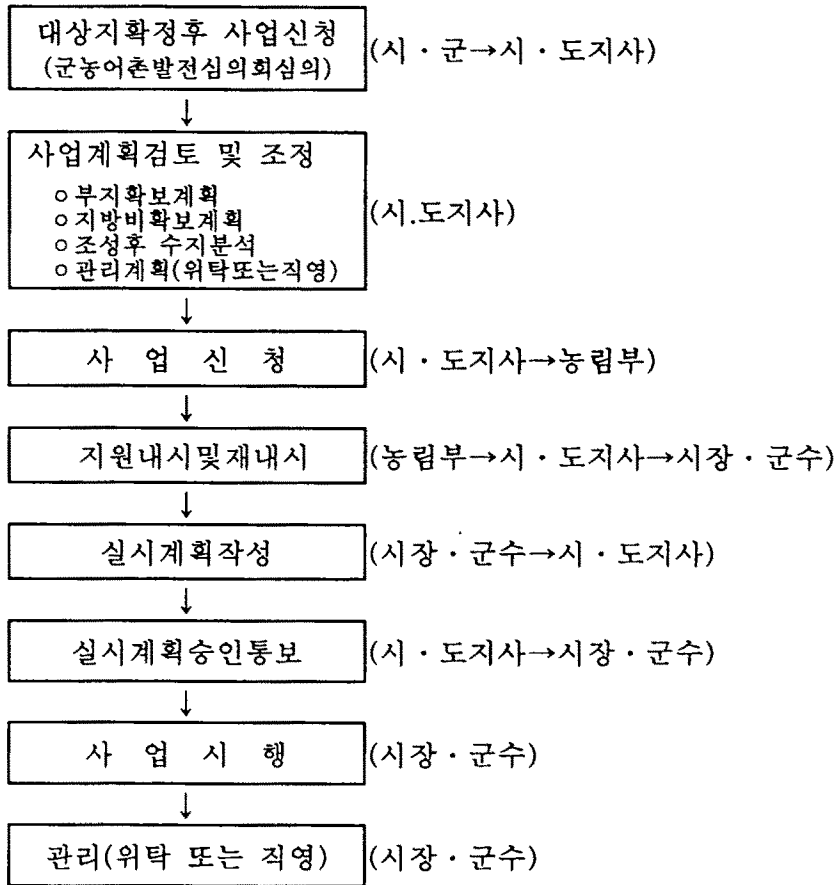
《특산단지전시판매장》

○ 농림부 : 사업지침서 수립 시달

○ 사업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후 농어촌발전심의회의의 심의를거쳐 사업신청
 - 부지확보계획
 - 지방비확보계획
 - 조성후 예상되는 수입·지출 분석
 - 관리계획(위탁 또는 직영)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 시행체제도



라.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구 선정

《특산단지육성》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신규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선정하되, 농업인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 전통민속공예품, 고부가가치제품,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이 가능할 경우에 선정하고,
-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가치가 있는 지역특산품생산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정

- 조성실적(조성단지수) 위주의 무분별한 단지지정 지양으로 사업 부실화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1군1명품」과 「1농협1특산품개발운동」 등과 연계 될 수 있는 품목 우선선정
 - 일반공산품, 식료품을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성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되, 농외소득증대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시설현대화, 내실화에 집중 지원
 - 전통민속공예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성검토는 신규,기성단지 구별없이 시·도특산단지연합회와 농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가 한다.
- 시·도지사가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도”농발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선정절차

- 신규 및 기성단지에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시행전년도 12월말까지)
- (신규 : 별지 제1,2,3호 서식, 기성 : 별지 제2,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와 농발위 심의후 지원계획 확정(별지 제5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공예협동조합, 기타 품목별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 사업자는 시·군의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읍·면사무소에도 통보.
 -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시는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예산변경조치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특산단지전시판매장》

(1)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지역 특산단지 제품의 전시판매가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제품의 시장정보제공등 홍보활동이 용이한 지역
- 특산단지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단기간 공조활동이 용이한 지역

(2)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의 사업계획을 수립후 농어촌발전심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 사업예정지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가 선정기준과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아래사항등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조정하여 농림부에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부지 및 지방비확보계획
 - 조성후 수지분석(예상)
 - 조성후 관리계획 (위탁 또는 직영)
 - 사업추진계획(일정별)

(3) 사업시행

- (가)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실시계획(설계)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및 공사발주

-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이 당초의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판단하여 승인

(나) 시행계획 변경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하여 변경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예정지 변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예정지변경이 부득히 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시·도지사는 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시·도별로 예산내시(추후 별도)

(2) 자금의 운용관리

《특산단지육성》

-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융자금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기성단지 취소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다

《특산단지전시판매장》

-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교부조건 준수 (별표1)

(3) 융자요령(특산단지 육성에 해당)

-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의 여신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자금 융자시 최대한 후취담보 실시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 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4)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바.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물 개발과 농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
- 특산단지 생산제품의 전시 및 판매확대로 특산단지 활성화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 등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

<행정사항>

《특산단지육성》

가. 사업자 준수사항

- 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기계)은 사후관리기간(준공일로부터 10년)내 처분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중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산단지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권자 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특산단지 사업자는 연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 자산, 자본, 부채, 손익상황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농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대학,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기관, 특산단지연합회 등을 통하여 디자인 및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사업에 필요한 상품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로 채택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유사제품과 차별화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다. 사후관리

-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 (2) 점검시기 및 내용
 - 시장·군수는 농협, 특산단지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반기 1회이상) 현장실태 조사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
- (3) 점검결과 반영
 - 사업성 검토결과 부실화 단지는 과감히 지정취소 및 업종전환을 유도 하고 사업전망이 있는 단지는 추가지원 요구시 기성단지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융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 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보조금반환, 지원자금(융자)회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4) 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 필요사항
건물(공장,공동작업장, 창고,사무실등), 기계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처분제한원칙	사후관리기간중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등을 기록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31일까지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시·도지사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한 12월말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지정취소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1.31까지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계획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 계획(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특산단지전시판매장》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추진실적을 다음해 1.31일까지 보고(별지 제9호 서식)
-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연도말 검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준하여 다음해 1.31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6. '99년도 사업신청안내

《특산단지육성》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단, 비농어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업인 참여)

다. 신청절차

○ 신청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단,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라. 구비서류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마.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특산단지 사업 추진 실적 - 운영단지 현황 - 단지별 지정취소 현황 - 연도별 지정 및 취소현황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1. 15 1. 31	별지 제8호 서식
2.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시·도→농림부	1. 31	별지 제11호 서식
3. 특산단지별 지정계획 보고 (총괄, 신규, 기성) -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 명세표	시·도→농림부	1. 31	별지 제5호 서식
4. 특산단지 지정취소 결과보고	시·도→농림부	취소즉시	

《특산단지전시판매장》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나. 신청자격

○시·도지사(시장·군수)

다. 신청절차

○지원을 받고자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도 에
제출

라. 구비서류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별표 1]

보 조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5.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신규단지용 >

신규단지용		배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시 장 성	판매방법	30	8	6.4	4.8	3.2	1.6	
	지명도(소비자선호도)		6	4.8	3.6	2.4	1.2	
	홍보전략		5	4	3	2	1	
	제품차별화정도		4	3.2	2.4	1.6	0.8	
	동업계전망		4	3.2	2.4	1.6	0.8	
	경쟁상태		3	2.4	1.8	1.2	0.6	
특산단지 목적 적 합 성	고용효과	25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활용도		5	4	3	2	1	
사업추진 기 반	노동력및원료조달용이도	12	5	4	3	2	1	
	판매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입지여건및창업준비도		2	1.6	1.2	0.8	0.4	
재무상태	자기자본비율	10	6	4.8	3.6	2.4	1.2	
	채무상환능력		4	3.2	2.4	1.6	0.8	
기 술 성	기술의 독점성	10	5	4	3	2	1	
	기술수준		3	2.4	1.8	1.2	0.6	
	상품성제고노력도		2	1.6	1.2	0.8	0.4	
대 표 자 력	대표자경력	8	5	4	3	2	1	
	대표자재력		2	1.6	1.2	0.8	0.4	
	은행거래신용도		1	0.8	0.6	0.4	0.2	
수 익 성	매출액경상이익율	5	3	2.4	1.8	1.2	0.6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 신규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시장성	판매방법	A B C D E	이미 확보된 고정거래처에 의한 판매 지사무소,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통한 직판 대리점 등을 통한 위탁판매 주문판매(고정거래처에 대한 주문판매분 제외) 기타 일반판매
	지명도 (소비자 선호도)	A B C D E	매우높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홍보전략	A B C D E	대중언론매체(신문, 방송등)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대규모 수요처, 특산물전시판매전 등 전국적인 홍보 도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군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홍보전략 없음
	제품차별화 정도	A B C D E	지역고유 특산물로 타지역 생산불가 독창적 품질로 3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2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유사경쟁제품 출현이 비교적 어려움 제품 차별성 없음
	동업계전망	A B C D E	매우 유망 비교적 유망 현상유지 장기적으로 사양화 예상 단기적으로 사양화 확신
	경쟁상태	A B C D E	독점 과점 보통 비교적 치열 매우 치열
특산단지 지목적합성	고용효과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8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50% 이상 " 40% 이상 ~ 5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20% 미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사업 추진 기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A B C D E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전혀 문제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이 용이함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애로가 많음
	판매계획의 적정성	A B C D E	매우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확실함 비교적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나 달성가능성은 예측 불가 다소 무리한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매우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함
	입지여건 및 창업준비도	A B C D E	①고용양호②전력이용용이③공업용수용이④기후적 합⑤부지적합⑥위치양호⑦공장및사무실확보 중 6개 이상 해당 5개 이상 해당 4개 이상 해당 3개 이상 해당 2개 미만 해당
재무 상태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A B C D E	50% 이상 30% 이상 ~ 5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채무상환능력 ($\frac{\text{차입금}}{\text{매출액}}$)	A B C D E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기술성	기술의 독점성	A B C D E	국공립연구기관 개발기술 또는 추천품목 보유 일반 연구기관 추천기술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특허, 실용신안 출원중 독점성 없음
	기술수준	A B C D E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충분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가능 최신설비는 없으나 인력을 보유하여 기술개발 가능 인력은 없으나 최신설비 보유로 기술개발 가능 인력, 최신설비 등이 없음
	상품성 제고노력도	A B C D E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 ④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 포장재 사용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 이상 해당 " " " 3개 이상 해당 " " " 2개 이상 해당 " " " 1개 이상 해당 " "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대표자 능력	대표자 경력	A B C D E	해당업종 기술분야 경력 5년 이상 " " 5년 미만 " " 4년 미만 " " 3년 미만 " " 2년 미만
	대표자 재력	A B C D E	대표자의 재산세 10만원 이상 " " 10만원 미만 " " 7만원 미만 " " 4만원 미만 " " 2만원 미만
	은행거래 신용도	A B C D E	최근 3년간 불량거래자(연체포함) 규제사실 없음 최근 2년간 " " 최근 1년간 " " 최근 6개월간 " " 그 외의 자
수익성	매출액경상 이익율	A B C D E	4.7% 이상 4.6% ~ 2.7% 2.6% ~ 0.9% 0.8% ~ △1.7% △1.7% 미만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frac{\text{---}}{\text{총자본}}$)	A B C D E	13.2% 이상 13.1% ~ 7.6% 7.5% ~ 2.8% 2.7% ~ 0.6% 0.6% 미만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기존단지용 >

신규단지용		배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30	10	8	6	4	2	
	매출액 증가율		10	8	6	4	2	
	가동율		5	4	3	2	1	
	업력		5	4	3	2	1	
특산단지 목적 적합성	고용효과	25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활용도		5	4	3	2	1	
사업추진 기반	판매방법	15	8	6.4	4.8	3.2	1.6	
	노동력및원료조달용이도		4	3.2	2.4	1.6	0.8	
	제품차별화정도		3	2.4	1.8	1.2	0.6	
재무상태	자기자본비율	10	6	4.8	3.6	2.4	1.2	
	채무상환능력		4	3.2	2.4	1.6	0.8	
사업 전망	가격및품질경쟁력전망	10	4	3.2	2.4	1.6	0.8	
	거래조건및판매전망		4	3.2	2.4	1.6	0.8	
	동업계전망		2	1.6	1.2	0.8	0.4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율	5	3	2.4	1.8	1.2	0.6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기술성	기술의 독점성	5	2	1.6	1.2	0.8	0.4	
	상품성제고노력		2	1.6	1.2	0.8	0.4	
	신제품개발		1	0.8	0.6	0.4	0.2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기존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과업실적	경영성과	A B C D E	최근3년이상 흑자경영이고 순이익규모 증가 추세 최근3년이상 계속 흑자경영과 영업기간2년으로 흑자 최근 2년간 계속 흑자경영과 영업기간1년으로 흑자 전년도 흑자경영 그외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A B C D E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 " " 19 ~ 15% " " 14 ~ 10%, 영업기간 3년미만 " " 9 ~ 5% 5%미만
	가동율 생산실적 ($\frac{\text{---}}{\text{---}}$) 생산능력	A B C D E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업력	A B C D E	7년 이상 6~5년 4~3년 2년 2년미만
특산단지목적합성	고용효과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 8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 6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 4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50% 이상 " " 40% 이상 ~ 50% 미만 " " 30% 이상 ~ 40% 미만 " " 20% 이상 ~ 30% 미만 " " 20% 미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율	A B C D E	4.7% 이상 4.6% ~ 2.7% 2.6% ~ 0.9% 0.8% ~ △1.7% △1.7% 미만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frac{\text{---}}{\text{총자본}}$)	A B C D E	13.2% 이상 13.1% ~ 7.6% 7.5% ~ 2.8% 2.7% ~ 0.6% 0.6% 미만
기술성	기술의 독점성	A B C D E	국공립연구기관 개발기술 또는 추천품목 보유 일반 연구기관 추천기술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특허, 실용신안 출원중 독점성 없음
	상품성 제고노력도	A B C D E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 ④특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 포장재 사용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이상 해당 " 3개이상 해당 " 2개이상 해당 " 1개이상 해당 " 해당사항 없음
	신제품개발	A B C D E	신제품 월간 판매액이 전년도 월간 판매액의 50%이상 신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판매실적 있음 신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공인기관 시험 완료 신제품 개발중 신제품 개발없음

특산단지 지정신청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이 특산단지를 조성하고자 지정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업계획서

19

○○특산단지 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참여가구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 가 공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계	농어가	기타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번호	가구주명	주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참여형태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시기별 소요금액			
	합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2/4	3/4	4/4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건 물 · () · () · () · () 기계·기구 · · · 생산부대시설 · · ·						
개 발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원료구입비 기 타						

-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
하고, ()안에 신축·증축·개축·매입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을 토지와 일괄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적음.

3. 제조공정

--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4.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수입 등으로 구분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자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여가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경우에 한함)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 : 3월~6월)로 구분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19)			당년(19)			2년차(19)			3년차(19)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 수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 수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 수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 수출												
	다음해로 이 월												

-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제 품 명	수 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 매 실 적
				○ 판매기간 : 년도 ~ 년도(년간) ○ 제 품 명 : ○ 총 판매금액 : ○ 판 매 처 :
향후판매전망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예) 판매기간 : '94~'96(최소한 3년간 이상)
 제 품 명 : 도자기
 판 매 처(상세히) : 서울 미도파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 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천원)

		전년(19)	당년(19)	2년차(19)	3년차(19)
매 출 액 (A)					
제조원가 및 비용계	원료구입비 노무비 (취업) 노무비 (임가공) 경비 (제조원가계) 판매관리비 일급이자(원금제외) 지세공과금 기타비용				
	원가 및 비용계 (B)				
손익(A-B)					
소득분석	참여형태별 가구수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가구당소득액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형태의 참여가구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여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 개황”의 “참여가구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익을 당해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별지 제3호 서식]

종합심사서

1. 명칭 및 사업장 구분 : (명칭) (사업장구분)
2. 사업장소재지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
5. 참여형태 :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19 . . .

○○시장·군수 (직인)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p>※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p>

[별지 제4호 서식]

자체 가26-47

○○년도 농촌특산단지별 지정계획 보고

(단위 : 천개,천점,톤,백만원)

업종별	우선순위번호	품목	사업명	사업형태	소재지	대표자		참여가구			제품생산	
						성명	전화	계	농가	기타	생산계획	
											수량	생산액
	합계											

및 판매계획			추정생산비			추정소득		사업비 조달계획		
판매계획			계	원료구입비	기타비용	총소득	가구당소득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내수 (금액)	수출 (금액)								

※ 작성요령

1. 업종별 : 작성순위(①민속공예품, ②농수산물, ③섬유직물, ④석재)대로 작성 기재
2. 품 목 : 목공예, 석공예등 주된 생산품목을 기재
3. 우선순위번호 : 업종별 구분없이 지원대상자 순위번호 기재
4. 사업명 : 세부적인 사업명(시설비 : ○○공장, ○○기계, ○○개발비(금형,디자인 등), ○○포장비등, 원료비 : ○○원료구입비등)으로 기재
5. 사업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중 하나를 기입하되 혼합형 형태는 추가되는 것을 기입하고 말미에 (혼)을 기입함.
6. 소 재 지 : 사업장소의 주소
7. 참여가구 : 농가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가
8.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연간 총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을 기입하되, 판매계획은 내수·수출 구분 작성
9. 추정생산비중 기타비용 : 제잡비용, 세금 등을 포함하되, 참여농가의 임금은 제외
10. 추정소득(정수로산출)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가구당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11. 추정소득 총소득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소수점이하 생략)
가구당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특산단지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명 칭 :

사업장구분 :

사업장소재지 :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생산품목)

사업자(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

참여형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산단지를 지정합니다.

19 . . .

○ ○ 시장·군수(직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주 소					
	영농(어) 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과) 졸업·중퇴		
	조직형태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참여농(어)가 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규모 (량)		
	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사 업 비 (천 원)	계	응 자		자 부 담	
<p>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p>						

[별지 제7호 서식]

특산단지관리대장

1. 개 황

- 명 칭 : _____
- 지 정 번 호 : _____
- 사업장소재지 : _____ 도 _____ 시·군 _____ 동·읍·면 _____ 리 _____ 번지
- 지정연월일 : 19 _____ . _____ . _____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_____ (생산제품) _____
- 사 업 자 :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 참여형태 : _____
- 사업장 구분 : _____
- 관리직원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2. 참여가구수 변동상황

(단위 : 가구)

점 검 기준일	참 여 가 구 수					점 검 년월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가공		

3. 참여가구 및 참여자 변동상황

점 검 기준일	가구 번호	가구주 성명	주 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점 검 년월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 월일	가구주 와관계	참여 형태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 검 기 준 일	재원별	용 도	조 년 달 월 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점 년 월 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 (주) 1. 재원은 농특융자를 적음.
 2. 용도는 시설자금, 개발비, 운영자금중 하나를 적음.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사항

재원	재산명	조 년 달 월 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처 분 년 월 일	처분사유	처분사항	점 년 월 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6. 생산 및 판매상황

(단위 : 천원)

점 검 기 준 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 년 월 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 소득효과

점 검 기 준 일	매출 액	제조 원가 및 비용	손익	소 득										점 검 자 직·성명·날인	
				총 소 득 액	가 구 별 소 득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가공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총 26-1

농촌특산단지사업추진실적보고

(○○도, ○○시·군)

○연도말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지정년도	대표자	참여형태	참여호수		총종사자수	생산실적	판매실적		비용	특과가구당소득		가동율	사업비					
						계	농가			내수	추수		총소득	농용		특자			자부담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합계																					

- ※1. 작성요령은 지정계획보고서 작성방법에 준할 것
- 2. 업종별, 단지별로 작성하되 업종이 변경시는 소재 작성가입

○연도말 운영단지현황

(단위 : 천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단지명	대표자	참여형태	참여호수	지정년도	년도별 지원자금											
								'95까지			'96			'97			합계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연도말 단지별 지정취소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	지정년도	취소년월일	융자금상환여부			취소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융자액	상환액	미상환액	

[별지 제9호 서식]

심사제외

농촌특산품판매장 추진실적

1. 사업추진실적

가. 사업계획

○ 규 모 :

○ 사업비 : (국고 , 지방비)

나. 추진실적

○ 위 치 :

○ 규 모 :

○ 사업비 :

○ 추진상황

- 부지매입

- 공사추진

- 사업비집행등

○ 향후추진계획

다. 홍보실적

2. 판매실적

(단위 : 천원)

업종별	판매량	판매액	사업비용(관리비)	순손익
계				
민속공예품				
농수산물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기타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제외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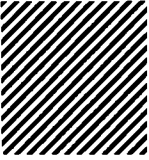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성명	사업비지원대정산										비고 (준공일자, 검정일자, 수량등요점을 기입)					
				합계			시설자금			개발자금			운영자금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합계																			

※상단·하단 구분하여 상단 : 정산액, 하단 : 예산액을 지원

여 백

Ⅱ. 기술 개발 및 정보화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기술과입니다

1. 목적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어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 이미 다른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어업분야에 접목시켜 농림수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타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어업 분야에 접합시켜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가공·유통 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과제별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및 제10조의 2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실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계 획					
	'94	'95	'96	'97	'98	'99이후
계	150	613	550	510	455	2,317
첨 단 기 술 개발사업	-	313	300	260	268	1,867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150	300	250	250	187	450

※ '98년은 수산분야를 제외한 기술개발 예산임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배경

-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림수산업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하여 '94~2004 기간중 농특세를 재원으로 4,650억원을 투자(첨단기술개발사업 3,000억원,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1,650억원)

나. 사업의 종류

○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 7대 핵심기술분야 기술개발(첨단농업적합형 품종개발 및 종자처리 기술, 기계화·자동화 시스템 개발, 첨단 가공·저장·유통기술, 생명공학기술, 기능성소재 및 고기능성제품 개발, 환경조화형 기술,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달성 및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을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품목별 일관기술개발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과제 : 영농현장중심의 기술개발로 영농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 농업인개발과제 : 지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용 기계·자재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등

다. 지원대상

- 첨단기술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민(단체)등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 농업인개발과제
 - 농업인(시·군 농촌지도소와 협동연구팀 구성)

라.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전액 국고보조
- 기업참여시 사업비 지원기준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80% 지원

마. 사업별 지원규모

사 업 별	연 구 비	연 구 기 관
○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과제	10억 이내	5년 이내
- 기획연구과제	20억 이내	7년 이내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과제	3억 이내	3년 이내
- 농업인개발과제	2천만원 이내	2년 이내

바. 과제신청방법

- 첨단기술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내에 농림수산
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농업인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내에 읍·면 농업
협동조합에 제출

사. '98년도 사업비 : 455억원

- 첨단기술개발사업 : 268억원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187억원

<추진체제>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기술과(02-503-7281~3)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관리 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5-6번지 옥토빌딩 3층
 - 전화 : 02-575-6900 (FAX 02-575-6905)

다. 과제공모

- 첨단기술개발과제
 - 기술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 개발보급시 농림수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애로기술(과제지정방식에 의하여 공모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연구팀 선정)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기술개발 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 영농·영립·영어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농어업인들이 개발을 원하는 기술
-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시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기술

○ 농업인개발과제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기할수 있는 실용기술
 - 농업용 기계·자재 개발
 -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실시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 기술개발성과 보급 및 활용 :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전문기관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나. 기타사항

-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97.1.31. 농림부훈령 제887호)에 의거 추진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첨단기술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과제 :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 농업인개발과제 : 읍·면 농업협동조합 및 농촌지도소 상담소

나. 신청자격

- 첨단기술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민(단체)등으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 2에 의한 연구 및 지도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 농업인개발과제

- 연구에 참여코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촌지도소와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함
- 협동연구팀에 참여하는 농촌지도소장은 해당과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됨

다. 신청절차

- 과제공모시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접수기간내에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 제출
다만, 농업인개발과제는 읍·면 농업협동조합 및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제출
- 과제공모·관보, 일간지 및 농·축·수산전문지에 게재

라. 구비서류

-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 8부 및 과제신청서 디스켓 1매
- 기업참여시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농민(단체)의참여시 농림수산기술개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마.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등이 우수한 과제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산업체, 농민(단체), 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 선정·평가지 우대배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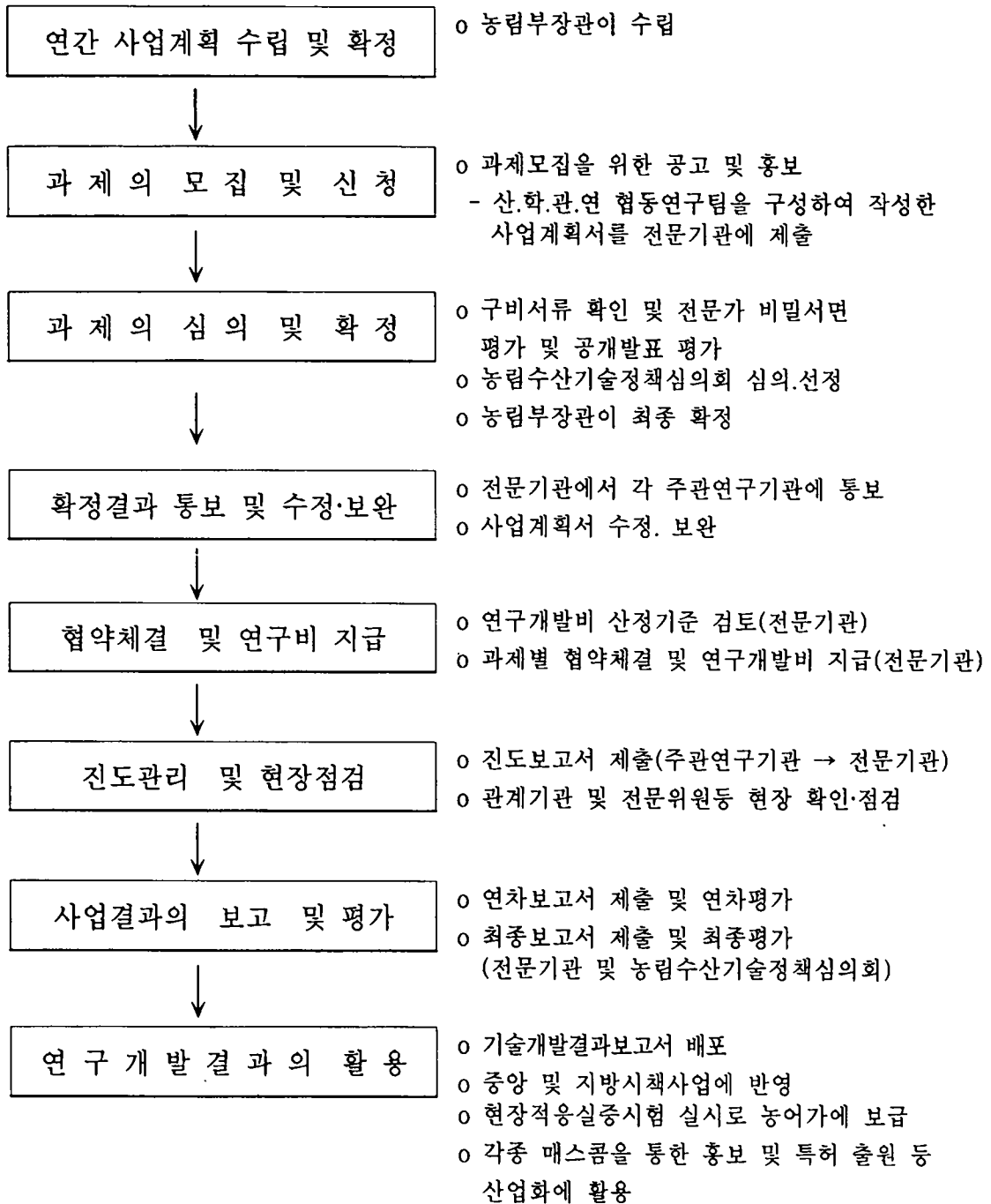
(3) 과제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 1단계 : 사전검토
- 2단계 : 비밀서면평가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4) 과제의 심의 및 확정

-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농림부장관 최종확정

(5) 사업추진체계



I.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 증진과 생산성 제고
-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등 우선지원
- 건강관리시설 설치 및 건강기구 비치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
- 농업인 건강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건강교육 실시
-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복지향상에 기여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운영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사 업 량		개소 -	80	82	162		
사 업 비	계	백만원 -	2,800	2,870	8,100		
	보 조	-	1,400	1,435	4,050		
	지방비	-	1,400	1,435	4,050		

※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농촌지도소당 4개소 설치(2~3개 읍면당 1개소 기준)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영농유형의 변화와 장시간의 농작업으로 농업인들의 농부중 심화
 - 농부중 19.8%('94 농진청)
 - 호소율이 가장 높은 증상 : 요통, 어깨결림
 - 농촌부녀자들이 남자보다 더 높은 편임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한 마을단위 건강관리시설 필요
- 농업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2) 사업기간 : '98. 1 ~ 12월

(3) 지원대상 : 생활개선 시범지역, 오지마을, 일반마을 중

- 사업수용 의지가 강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 학습단체 활동이 활발하고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연중 농작업이 과중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4)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5) 지원시설

- 건강관리시설 : 기존건물 개·보수 또는 신축
 - 기본시설 : 체력단련실, 휴식실, 샤워실, 사우나실 또는 찜질방 등
 - 권장시설 : 식품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생활체육시설 또는 쉼터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 기구
 - 근력, 지구력, 조정력 등의 행동체력과 방위체력 향상 기구
 - 건강자전거,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매트 등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62	백만원 8,100	4,050	4,050		4,050	
서울	1	50	50	25	-	25	-
부산	1	50	25	25	-	25	-
대구	1	50	25	25	-	25	-
인천	2	100	50	50	-	50	-
광주	1	50	25	25	-	25	-
대전	1	50	25	25	-	25	-
울산	1	50	25	25	-	25	-
경기	20	1,000	500	500	-	500	-
강원	18	900	450	450	-	450	-
충북	11	550	275	275	-	275	-
충남	17	850	425	425	-	425	-
전북	15	750	375	375	-	375	-
전남	26	1,300	650	650	-	650	-
경북	22	1,100	550	550	-	550	-
경남	22	1,100	550	550	-	550	-
제주	3	150	75	75	-	75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0331 - 292 - 4256)
- 시 · 도 : 각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생활개선과
각 특별·광역시 생활개선계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도 농촌진흥원장 및 특별·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을 시군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의해 지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사업지역 변경시에는 시군농촌지도소장이 변경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고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촌지도소장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거 마을대표에게 지원

라. 기타사항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본 사업용도로 지원된 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건강관리실 활용 대장 비치
- 지속적인 보완 및 자체평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강관리시설 및 50만원이상 기구	준공일로 부터 5년간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농촌지도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나. 보고·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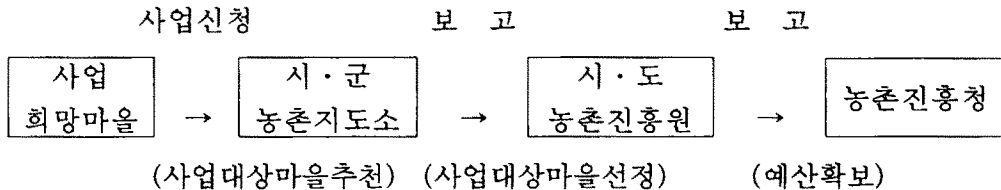
- 건강관리실 설치계획 보고 : 3. 25한 (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관리실 설치결과 보고 : 2/4 ~ 4/4분기 말(별지 제2호 서식)
-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카드 제출 :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 * A3형 용지 앞, 뒤면 1장으로 작성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생활개선 시범마을, 생활여건이 불편한 오지마을, 연중농작업이 과중한 일반마을 중 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설치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활개선시범마을, 오지마을, 일반마을 중
 - 사업수용의지가 강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 학습단체 활동이 활발하고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연중 농작업이 과중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마을
- 우선순위
 - 1순위 : 생활개선시범마을, 오지마을
 - 2순위 : 일반마을
- 선정절차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 희망마을의 사업신청서(별지3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4호서식)를 참고하여 현지심사를 거쳐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심의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심사의견서(별지5호서식) 첨부하여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 농촌진흥원장은 사업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 48-9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계획

(금액단위 : 천원)

마을명	가구수		인구		설치 장소	사업 내용	규모	사업비			사업 시기
	농가	비농가	남	여				계	지원	자부담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 48-10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결과

(금액단위 : 천원)

마을명	설치 장소	규모	주요시설	사업비				비고
				계	지원	자부담	기타	

* 관련사진 2매이상 제출(4×6)

<별지 제2-1호서식>

연번	도별	번호

1998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1. 마을명

--

2. 마을위치도

군소재지에서	마을까지거리
km	

3. 일반사항

가구수 호	: 인구 명	
- 농가 :	- 남자 :	*활용가능인원
- 비농가 :	- 여자 :	
경지면적 ha	: 천	연간평균농가소득 : 만원
- 논 :	- 농업소득 :	- 농외소득 :
- 밭 :		
- 기타 :		
주재배작목 :		

공 공 시 설(유, 무)						
마을회관	진료소	약국	구판장	노인정		

4. 건강관리실 설치현황

크기 (평)	시설설치방법		완공일	사 업 비(천원)				
	신축	개보수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5. 건강관리실 시설 및 기구내역

시 설		기 구	
구 분	규모(평)	품 명	수 량

※ 시설은 체력단련실, 휴식실, 사우나실, 조리실, 점질방 등 관련시설 모두 기재

6. 건강관리실 관리

관 리 자				관 리 방 법
소속 및 직책	성 명	연령	전화번호	

7. 건강관리실 평면도

8. 건강관리실 사진

<사업전>

<사업후>

<별지 제3호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사업 신청서

마을명	가구수		인 구		주재배 작 목	설치장소		대표자	
	농가	비농가	남	여		장 소	규 모	성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199 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농 촌 지 도 소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서

< 사업개요 >

가. 마을 명 :

나. 규 모 :

다. 사업시기 :

라.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계	지 원	자 부 담	기 타

마. 설치내용

설 치 방 법				설 치 시 설					
신축	증축	개보수	기타	기 본 시 설		권 장 시 설		체력단련 기 구 (10종이상)	기 타 (컴터등)
				체력 단련실	사우나실 또는 찜질방	목욕실	조리실		
				휴식실	사위실	탈의실	식 품 가공실	노인실	

※ 해당하는 곳에 ○, ×로 표시

<별지 제5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마 을 명 :

대 표 자 :

(의견)

-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지역여건상 적합여부 및 사업의지
- 사업장 입지 : 주변환경
- 사업계획 : 시설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여부
- 관리 및 활용전망 : 활용가능 인구 및 운영능력 등
- 유관기관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199

농 촌 지 도 소 장 직인

II. 지역특화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입니다.

1. 목 적

- 지역특성에 알맞는 새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용화 촉진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
- 협업경영,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개발 보급 및 수출농업 육성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개소 1,197	302	376	362		
사 업 비	계	백만원 78,500	27,840	35,459	38,158	
	보 조	13,800	5,568	7,092	7,632	
	유 자	35,200	11,136	14,183	15,263	
	지방비	13,800	5,568	7,092	7,632	
	자부담	15,700	5,568	7,092	7,631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89년부터 UR대응책으로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자 : 해당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시범사업명	개 소 당		지 원 내 용
	규 모	사업비	
○ 하우스 환경개선	20a	백만원 25	자동개폐장치, 관비시설, 지중난방 시설 등
○ 인공배지 양액재배	20a	120	자동화하우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 지중난방시설
○ 경질온실자동화	40a	320	경질온실, 양액재배 시설
○ 트랙터부착작업기이용과수재배	2ha	40	소형트랙터, 트레일러, 분무기, 예초기 등
○ 고품질 꽃 생력재배	60a	300	자동화하우스, 지중가온시설, 양액 재배시설 등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5~10농가 모든 300두	500	공동사육시설, 종돈구입, 정액채취 및 조제실 등
○ 한우고급육 생산	5~10농가 300두	400	공동사육시설, 공동작업장비, 인공 수정기구 등
○ 젖소 생산성 향상	5~10농가 호당 20두내외	150	섬유질사료생산시설, 공동작업장비, 공동우사 등
○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	5농가이상 7만수 이상	300	육계사, 사육시설 등
○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재배사균상 495m'내외	128	원형회전식 균상시설, 온습도자동화 시설 등
○ 고품질 발작물 연중생산	30a	67	하우스내 온습도 자동조절시설, 저온저장고 등
○ 한약제규격화 가공출하	가공시설 165m' 내외	80	절단기, 박피기, 엑기스 추출시설 등
○ 양란고랭지이용축성재배	30a	100	하우스 이동식 벤치 등
○ 그린원예생산성향상	20a	35	자동화하우스, 그린음악시스템 등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362	백만원 38,158	22,895	7,631.6	15,263.4	7,632	7,631	
○ 하우스 환경개선	124	3,100	1,860	620	1,240	620	620	
○ 인공배지 양액재배	36	4,320	2,592	864	1,728	864	864	
○ 경질은실자동화	13	4,160	2,496	832	1,664	832	832	
○ 트랙터부착작업기이용과수재배	80	3,200	1,920	640	1,280	640	640	
○ 고품질 꽃 생력재배	10	3,000	1,800	600	1,200	600	600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16	8,000	4,800	1,600	3,200	1,600	1,600	
○ 한우고급육 생산	8	3,200	1,920	640	1,280	640	640	
○ 젖소 생산성 향상	8	1,200	720	240	480	240	240	
○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	8	2,400	1,440	480	960	480	480	
○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24	3,072	1,843.2	614.4	1,228.8	614.4	614.4	
○ 고품질 발작물 연중생산	9	603	361.8	120.6	241.2	120.6	120.6	
○ 한약제규격화 가공출하	9	720	432	144	288	144	144	
○ 양란고랭지이용촉성재배	9	900	540	180	360	180	180	
○ 그린원예생산성향상	8	283	170	56.6	113.4	57	5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원예축산과(0331-292-4296)
- 시 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소득지도과
- 시군자치구 : 시군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다.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 기술 낙후지역으로 기술과급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농업인
 -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농업인은 제외
- 선정절차
 -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영농규모, 영농경력, 신기술 수용능력, 사업과급효과 등을 고려한 각종사항을 점수화하여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촌진흥원장이 확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입식작목의 품목,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가공, 판매, 이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실천계획 수립
- 지역실정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 자율적 운영과 협약서 작성 및 활용계획 수립
- 사업포기 등 대상농가 변경시에는 농촌진흥원장(특·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의 승인후 사업추진

○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을 검토

- 품목별 생산자조직 및 정기적 협의회개최, 시범사업 평가
- 중앙 및 지방단위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예산의 활용상황 확인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 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는 시군농촌지도소장이 사후 기술경영지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 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농촌진흥원장은 시·군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결과를 평가 분석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진첩을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규 정	비 고
		부 터	까 지		
○ 하우스 환경 개선	○ 관수시설	사업추진년도	사업시작후 3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금지	
	○ 지중가온시설	"	3년		
○ 인공배지양액 재배	○ 자동화비닐하우스	"	10년		
	○ 양액재배기본시설	"	10년		
	- 양액재배베드시설	"	5년		
	- 지중난방,점적관수	"	3년		
○ 경질온실 자동화	○ 경질온실 시설	"	10년		
	○ 양액재배기본시설	"	10년		
	- 양액재배베드시설	"	5년		
	- 지중난방,점적관수	"	3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규 정	비고
		부 터	까 지		
0 트랙터부착 작업 기이용 과수재배	0 트랙터 등 농기계	사업추진년도	사업시작후 5년	사후관리기간내 처분금지	
0 고품질 꽃 생력 재배	0 자동화비닐하우스 기본시설 0 양액재배 기본시설	"	10년		
0 고품질돼지고기 생산	0 돈사 0 화물차	"	10년 5년		
0 한우고급육 생산	0 우사 0 트랙터 0 초파 0 곤포기	"	10년 5년 5년 5년		
0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0 우사 0 트랙터 0 초파 0 곤포기 0 사료배합기	"	10년 5년 5년 5년 5년		
0 수출용대형육계 생산	0 계사 0 로우더	"	10년 5년		
0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	0 버섯재배사 0 원형균상시설 0 환경자동화기자재 등	"	7년 7년 3년		
0 고품질 발작물 연중 생산	0 버섯재배사 0 원형균상시설 0 환경자동화 기자재 등	"	5년 10년 5년		
0 한약제 규격화 가공 출하	0 가공실(작업장) 0 세척기 등 가공 기자재 0 건조기 등	"	10년 5년 5년		
0 양란고령지 이용 축성재배	0 시설하우스 0 이동식벤치	"	5년 5년		
0 그린원예생산성 향상	0 자동화하우스 0 그린음악시스템	"	5년 3년		

※ 시설 및 중요장비 중 상기에 명시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내에 처분을 금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단,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중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재산은 3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나. 보 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보고: 2월말까지

○ 사업추진결과보고 : 11월말까지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동일작목 3년이상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

다. 신청절차

○ 농촌지도소에 안내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농촌지도소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기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사업참여 의지와 시범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

마. 기타사항

○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새기술 보급 확산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의 자체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도기관과 사업 참여 농업인이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I.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및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생활개선과, 식량작물과, 원예축산과, 작물보호과)입니다.

1. 목 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재배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 및 확산
- 농촌여성의 능력과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지원으로 농외소득원화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농업환경보전,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 등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재배기술·품종·기계 등을 실증시범을 통하여 신속히 확대보급 함으로써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도모
- 협업경영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및 출하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 >

- 농촌여성들을 농가소득증대사업의 경영주체로 육성
- 농촌여성들의 능력에 맞는 일감의 발굴·지원 육성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수산물의 가공·상품화
- 마을 인근공장과 연계한 임가공활동 추진
- 기존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판로 및 전문기술 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액)	'99	2000~ 2004
사 업 량		개소 6,048	888	1,129	1,435		
사 업 비	계	백만원 10,302	5,430	6,386	9,024		
	보 조	5,151	2,715	3,193	4,512		
	지방비	5,151	2,715	3,193	4,512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식량작물시범

○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 사업량 : 155개소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0.4ha 내외, 새로 개발육성된 우량품종 및 설치 기자재 등을 지원 전시시범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관찰 교육장으로 활용
- 지원단가 및 조건 : 55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다수성 신육성 벼품종 시범

- 사업량 : 18개소 (도당 2~3개소, 제주 제외)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ha 내외, 새로 개발 육성된 다수성 품종과 상토·완효성복비·제초제 등을 지원, 신품종 전시 및 증식으로 농업인 자율교환 기반조성
- 지원단가 및 조건 : 3,3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 사업량 : 110개소 (직파 주재배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5ha 내외, 줄뿌림파종기와 까락제거기 등 기계 및 제초제·도복경감제 등 지원, 직파재배의 새 피해 방지대책 등 입모을 향상 및 잡초방제, 도복대책 등의 실증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4,16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벼 무경운 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 사업량 : 36개소 (도당 4~5개소, 제주 제외)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0.3ha 내외, 완효성복비·종자·직파파종장치 지원, 수령논·휴경논 등에 무경운기계이앙 또는 무경운직파 실증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3,000천원 전액보조(국비50%, 지방비 50)

○ 정밀균평 벼 재배 시범

- 사업량 : 18개소 (도당 2~3개소, 제주 제외)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20ha 내외, 20~30농가로 단지를 조성하여 레이저균평기 지원, 정밀정지작업체계 실증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22,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 실증시험

- 사업량 : 15개소 (남부 보리 주재배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0ha내외, 2모작 지역을 중심 10농가 내외로 단지를 조성하여 벼 수확과 동시 보리파종 작업기 지원 및 벼 수확과 동시에 보리파종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12,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2) 소득작목 시범

○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 사업량 : 26개소 (시설채소 주재배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20a내외, 무인 콘트롤 및 자동개폐장치, 궤도 작업차 시설, 포그시스템, 무인방제시설, 자동점적관수이용 채소 안정생산 실증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22,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 사업량 : 30개소 (과수 주산지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ha 내외, 새로 개발된 토양수분 감응형 관수시설로 관수 노력절감 및 상품과율 향상으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7,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국화 연 3기작 재배시범

- 사업량 : 18개소(국화 주산지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20a 내외, 지중가온시설·점적관수시설·우량종묘 등 지원 주년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10,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

- 사업량 : 54개소(과수 주산지 도별 6개소 내외)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성과원 1ha 이상 1~2농가, 보온덮개 지원, 수관하부 보온덮개 피복 제조로 노동력 절감 및 수량증대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5,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 시범

- 사업량 : 18개소(젖소 다두사육 지역 도별 2개소)
- 개소당 규모 시범내용
 - 젖소 40두 내외 사육농가, 톱밥운동장·급수시설·분무장치 가축분처리 등 시설과 셀레늄·비타민 등 사료첨가제, 유방염진단기 등을 지원, 유방염 예방과 위생적인 관리로 우유 품질 향상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15,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농가 육성

- 사업량 : 16개소 (한우 및 젖소 다두사육지역 도별 2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사료작물 2ha이상 재배농가, 옥수수 신품종 종자·파종기계·수확기계
 - 벧짚자동결속기 등 지원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20,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축사 환경개선시범

- 사업량 : 81개소 (소·돼지·닭 집단사육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축종별 축사환경 불량농가 50호내외 선정, 유해가스·분진량 측정기 등 지원, 축사내 유해가스 분진량 정기검진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시범
- 지원단가 및 조건 : 8,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참깨 기계화 재배단지

- 사업량 : 4개소 (참깨 주산지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3ha내외, 비닐피복 동시파종기, 예취결속기, 배토기, 정선기 등 지원, 기계화 일관작업에 의한 참깨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14,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3)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

○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

- 사업량 : 25개소 (도당 3~4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산란계 20천수 또는 돼지 500두 내외의 농가, 가축분과 톱밥혼합기·발효장치 등 지원으로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 및 이용 등 가축분의 자원화와 환경오염 방지 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20,0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저투입 환경농업시범

- 사업량 : 9개소 (도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5ha 내외, 비료 및 퇴구비 시용, 배수개선, 미립자방제기, 비료살포기 등 지원, 완효성 비료 시용 등 비료·농약 저투입 농업 실천, 유기재배, 병해충 종합관리, 토양검정에 의한 화학비료 적량투입 등 환경농업 기술 종합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14,687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

- 사업량 : 146개소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전국 논토양 1,217천ha 6,701천필지, 필지별 토양특성 자료의 전산화 입력시 전산장비(1대), 전산입력, 운영비 등 지원으로 토양자료를 전산화하여 진단, 처방 등 들녘별 토양종합개량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4,5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시범

- 사업량 : 54개소 (소, 돼지 사육지역 시군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신고 및 간이대상 양축농가 정량펌프, 스크린장치, 브로아 등 지원, 기존 정화시설 개선으로 방류수의 정화효율 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 시범
- 지원단가 및 기준 : 1,200천원 전액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 사업량 : 200개소(벼 150, 소득작물 50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시군 농촌지도소에 20a 규모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설치
 - 유아동, 포자채집기 등을 설치하여 당면 병해충 발생의 예찰
- 지원규모 및 기준 : 602,176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 사업량 : 25개소(도당 2~4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시군당 20평 규모의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하고 각종 방제처리 장비 설치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유해 병해충을 신속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방제처리장비를 구비하여 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적용농약 등 현장에서 방제법 처방
- 지원단가 및 기준 : 7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 사업량 : 59개소(도별 2~6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일선 시군단위에 병해충종합관리 시범단지 조성(벼 20ha, 과수 20, 노지채소 10, 시설채소 5)
 - 농업인 훈련실시 : 개소당 25명
 -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에 대한 농업인 기술훈련의 지속적 인 실시와 시범사업 추진으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기반 구축

○ 토양정밀검정

- 사업량 : 162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토양종합검정실이 설치된 146개 시군농촌지도소 정밀검정 연간 800점(총 116.8천점), 토양종합검정실이 설치되지 않은 16개 일반시군농촌지도소 간이검정 연간 800점(총 12.8천점)을 정밀 검정하여 토양개량 및 적정시비량 지도
- 지원단가 및 기준 : 4,76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토양환경개선시범

- 사업량 : 146개소(종합검정실당 1개소)
- 개소당 규모 및 시범내용
 - 1.0ha내외,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자연 유기물 등을 이용한 토양개량 및 환경보전시비법 실천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경감
- 지원단가 및 기준 : 1,7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4) 농촌여성 일감맞기 시범

○ 배 경

- 농촌인구의 여성화·노령화와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 동기 : 생활비 및 자녀학비 조달, 농가소득 증대
 - 농외소득활동 중사여성의 사업지속희망률 : 90.3%(농촌진흥청)
- 도시근로자 가계에 비해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낮음
 -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70.8%('95), 도시 133.5%
- 외국에 비해 농외소득률 저조
 - 한국 32.1%('96), 일본 79.1%('95), 대만 64.8%('90)

○ 지원대상자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

-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을 가공·생산 하고자 하는 마을
- 전통식품으로서 수요가 증대되어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생산 하고자 하는 마을
- 마을 인근 농공단지 내 산업체와 연계한 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

○ 지원단가 : 개소당 2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 구입, 포장지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개소 1,435	백만원 9,024	4,512	4,512	-	4,512	-
○ 식량작물 시범	352	1,285	643	643	-	643	-
-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	155	86	43	43		43	
- 다수성 신육성벼 품종 시범	18	60	30	30		30	
- 벼 직파재배 농업인실증시범	110	456	228	228		228	
- 벼 무경운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36	108	54	54		54	
- 정밀균평 벼 재배 시범	18	396	198	198		198	
-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	15	180	90	90		90	
○ 소득작목 시범	247	2,526	1,263	1,263	-	1,263	-
- 시설하우스무인자동화시범	26	572	286	286		286	
-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시범	30	210	105	105		105	
-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	18	180	90	90		90	
- 과원 보온덮개피복 토양관리시범	54	270	135	135		135	
- 톱밥발효 시설이용 우유생산	18	270	135	135		135	
-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16	320	160	160		160	
- 축사 환경개선시범	81	648	324	324		324	
- 참깨 기계화 재배단지	4	56	28	28		28	
○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826	4,972	2,486	2,468	-	2,468	-
-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	25	500	250	250		250	
- 저투입 환경농업시범	9	132	66	66		66	
-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146	658	329	329		329	
-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54	64	32	32		32	
- 농작물 병해충 예찰	150	490	245	245		245	
-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	50	112	56	56		56	
- 토양정밀검정	162	758	379	379		379	
-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25	1,750	875	875		875	
- 토양환경개선시범	146	248	124	124		124	
-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59	260	130	130		130	
○ 농촌여성 일감갹기 사업	10	240	120	120	-	12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농촌진흥원	시군농촌지도소
식량작물 시범	식량작물과 (0331-292-4291)	작물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시범	원예축산과 (0331-292-4295)	소득지도과	기술보급과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작물보호과 (0331-292-4297)	작물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농촌여성일감갓기사업	생활개선과 (0331-292-4256)	생활개선과	사회지도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촌진흥원장(특·광역시농촌지도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기계장비 구입, 생산물판매, 예산집행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계획의 일부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을 변경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원장이 변경승인
- ※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라. 기타사항

- 당해 사업년도말까지 사업이 완료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 행정사항 >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가. 사후관리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3년간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성과의 파악 및 미흡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규 정	비고
		부 터	까 지		
(1) 식량작물시험 ○ 다수성신육성벼품종 시범		사업추진 년 도	사업완료 후 2년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금지	
○ 벼 직파재배농업인 실증	○ 줄뿌림파종기	"	"	"	
○ 벼 무경운재배 농업인 실증시험	○ 까락체거기	"	"	"	
○ 정밀균평벼재배시험	○ 직파파종장치	"	"	"	
○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 실증시험	○ 레이저균평기	"	"	"	
	○ 보리파종작업기	"	"	"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규 정	비고
		부 터	까 지		
(2) 소득작목시범					
○ 시설하우스무인자동화 시범	○ 무인자동콘트롤시설	사업추진 년 도	사업완료후 2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금지	
○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시범	○ 관수시설	"	"	"	
○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	○ 구근수확기계	"	"	"	
	○ 점적관수시설	"	"	"	
○ 과원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시범	○ 보온덮개	"	"	"	
○ 톱밥시설이용 젓소사육시범	○ 톱밥시설	"	"	"	
○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	○ 수확기	"	"	"	
○ 농가 육성	○ 결속기	"	"	"	
○ 축사환경개선 시범	○ 다기능환경측정기	"	"	"	
	○ 가스분진량측정기	"	"	"	
○ 참깨 무피복 기계화 재배단지	○ 줄뿌림과종기	"	"	"	
	○ 예취결속기	"	"	"	
(3)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	○ 스키드로다	"	"	"	
	○ 혼합기	"	"	"	
○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	○ 미립자방제기	"	"	"	
○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	○ 컴퓨터	"	"	"	
○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시범	○ 정량펌프	"	"	"	
	○ 스크린장치	"	"	"	
○ 농작물 병해충 종합검정실	○ 세균및해충감별 장비등7종	"	5년		
(4)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	○ 농산물가공장비등	"	2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중 위에 표기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상황 보고 : 4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98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계획보고 : 3. 20까지(별지1호서식)
- '98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추진실적 보고 : 12. 20까지(별지2호서식)
-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 (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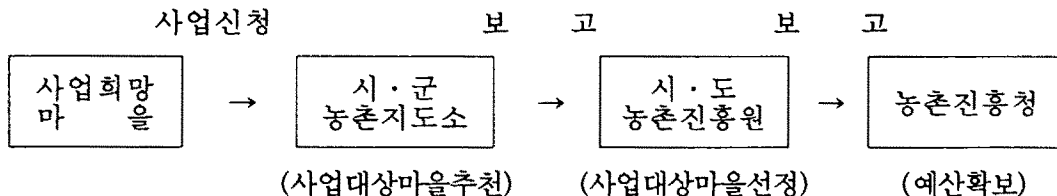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사 선정안내

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우선순위
 -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객관적으로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체
- 선정절차
 - 농촌지도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촌지도소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 농촌지도소에 비치

나.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 신청자격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로서 사업장이 농촌에 입지해야하며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직접 가공하거나 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 농촌여성의 능력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종목을 선택한 사업지역
- 국내산 농수산물로 원료조달이 용이한 사업지역
- 시장성 및 수익성이 있어 판로확보가 용이한 사업지역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가공장려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지역
- 마을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한 사업지역
- 당해 사업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능한 사업지역을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희망마을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현지심사 등을 거쳐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 및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특·광역시 농촌지도소장 및 농촌진흥원장에게 추천·보고
- 특·광역시 농촌지도소장 및 각도 농촌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타당성을 조사한 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48-11

'98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계획

1. 사업명 및 생산제품

2. 사업지역

3. 사업배경

4. 사업추진개요

- 참여인원
- 대표자 성명 : (나이)
- 사업규모

사업장 규모	소요예산					제품생산 가능시기	예상소득 (1인당)
	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 자부담분 조달방법
- 공동작업장 확보방법
- 참여농가의 평균 소득 : 농업소득 천원, 농외소득 천원

5.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6.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48-12

'98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추진결과

1. 사업 추진 결과

- 사업명 및 생산제품
- 사업지역
- 추진개요 (대표자 성명 및 나이)

사업비 내역				참여인원 (명)	작업장 규모	자부담분 조달방법
사용내역	계	지원액	자부담			

2. 소득분석

농촌여성 일감맞기 관련 소득						참여농가소득		
참여인원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	1인당 순소득	제품생산 시기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 *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은 사업장의 전체의 것을 기록하고, 1인당 순소득은 앞의 전체순소득을 참여인원으로 나눈 것임
- * 참여농가소득 부분은 일감사업 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별지 제3호서식>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신청서

사업지역	마을현황					대표자		사업내용	
	가구수		인구		주재배작목	성명	전화번호	생산제품	사업규모
	농가	비농가	남	여					

위와같이 199 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지도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사업지역 :

(의 견)

-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지역특성상 적합여부 및 사업의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사업완료 가능성
- 사업장 입지 : 인·허가요건, 기존사업장과의 경합성, 주변환경
- 사업계획 : 시설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여부
- 사업전망 : 제품의 상품성, 판매전망, 농어가 소득 기여도 등

. 199

농 촌 지 도 소 장 직인

II.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경영개선담당관실 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규격 출하의 조기 정착
- 규격포장, 포장재질 및 외부표시사항의 개선
- 지역특산품의 상표화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의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과 지역을 우선 지원 → 시범지역 육성
-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지역 및 작목 집중지원
- 기술지도를 병행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 있는 지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4
사업량		개소 192	48	48	48		
사업비	계	백만원 212	130	130	141.0		
	보조	106	65	65	70.5		
	지방비	106	65	65	70.5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물의 포장방법과 포장단위가 지역별로 달라 유통의 효율성 저하
- 동일한 등급의 농산물일지라도 포장단위 뿐만 아니라 외부표시사항, 포장단위, 포장 재질 등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여 농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농산물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으로서 지역에서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을 희망하고 사업효과와 과급효과가 기대되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
-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시범농가와 협의하여 포장재 제작 지원
-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 있는 지도사업·전개로 농산물규격출하의 조기정착과 농가수취가격제고
- 시범요인 : 규격포장, 포장재질개선, 외부표시사항개선, 소포장개발,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 등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계	48개소	백만원 141.0	141.0	70.5	-	70.5	-
서울	1	3.0	3.0	1.5	-	1.5	-
부산	1	3.0	3.0	1.5	-	1.5	-
대구	1	3.0	3.0	1.5	-	1.5	-
인천	1	3.0	3.0	1.5	-	1.5	-
광주	1	3.0	3.0	1.5	-	1.5	-
대전	1	3.0	3.0	1.5	-	1.5	-
울산	1	3.0	3.0	1.5	-	1.5	-
경기	6	17.6	17.6	8.8	-	8.8	-
강원	5	14.0	14.0	7.0	-	7.0	-
충북	5	14.0	14.0	7.0	-	7.0	-
충남	5	14.0	14.0	7.0	-	7.0	-
전북	5	14.0	14.0	7.0	-	7.0	-
전남	5	14.0	14.0	7.0	-	7.0	-
경북	4	11.8	11.8	5.9	-	5.9	-
경남	6	17.6	17.6	8.8	-	8.8	-

※시범지역개소당 2,940천원 보조(국비 1,470, 지방비 1,470)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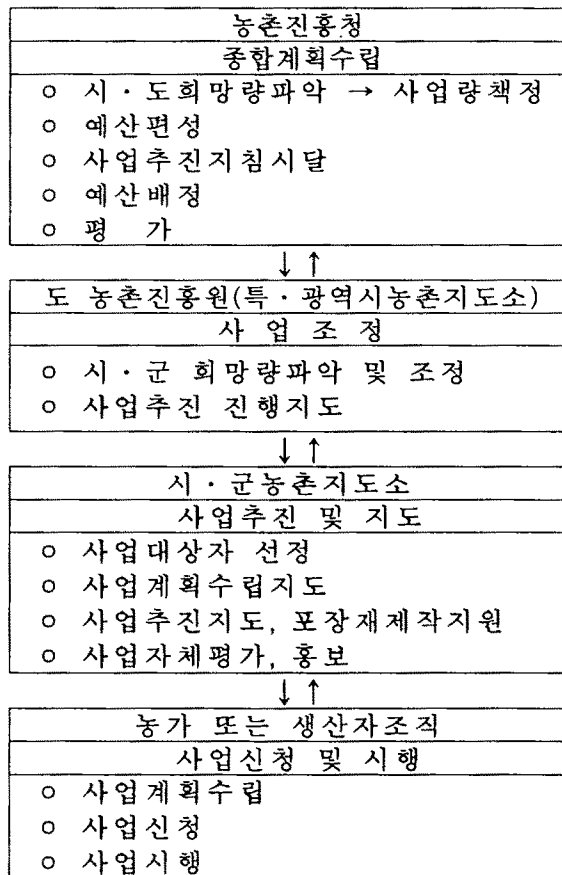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업경영관실 경영개선담당관실(0331-296-2326)
- 시 도 : 농촌진흥원 시험국 경영과
- 시군자치구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사업비 지원방법 : 시·군농촌지도소장이 포장재 제작지원

※ 행정지원대상자 또는 기수혜자는 제외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나. 보 고

- 선정결과보고 : 사업시행 전년도 4월말(별지 제2호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 : 사업시행완료후 1개월내,
최종보고는 12월 중순까지(별지 제3호서식)

다. 점검·평가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농가 시행여부 확인
- 시범사업 전·후 비교평가 후 우수사례는 인근 농가에 홍보
- 시범포장재는 시범농가 및 인근지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동일작목재배농가 5호이상 또는 생산자조직
- 선정기준 우선순위
 - ① 동일작목을 생산하는 농가(5호이상)나 생산자조직으로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② 사업추진 후 자체효과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③ 출하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선행 생산자조직과 농가
 - ④ 집단재배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농가나 생산자조직
 - ⑤ 예상소득증대효과가 높은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⑥ 가급적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조직과 농가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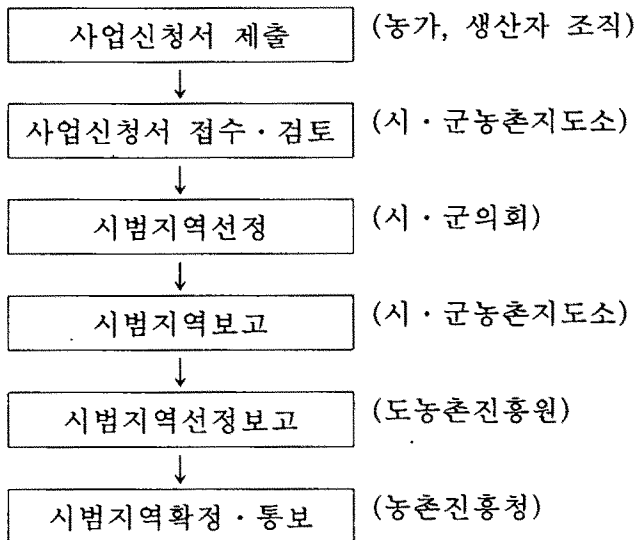
- 포장개선기술 시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시·군농촌지도소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동일작목을 생산하는 농가(5호이상)나 생산자조직으로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사업추진 후 자체효과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출하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선행 생산자 조직과 농가
- 집단재배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농가나 생산자조직
- 가급적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조직과 농가

(2) 선정절차



<별지 제1호서식>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대표농가명 :

○ 대표농가주소 : Tel()

2. 시범사업 현황

지역명	작목명	참여농가수 (호)	면적 (ha)	예상 출하량 (톤)	포장방법		사업시기 ○월○일 ~○월○일
					포장단위	포장재료	
시(군) 읍(면) 리(동)							

3. 시범요인 :

4. 주출하처 :

5. 소요예상 비용 : 천원(보조 : 천원, 자부담 : 천원)

6. 예상소득효과

손 실 항 목	이 익 항 목
1. 감소될 수입 ○ ○ ○ 소계	1. 증가될 수입 ○ ○ ○ 소계
2. 증가될 비용 ○ ○ ○ 소계	2. 감소될 비용 ○ ○ ○ 소계
3. 예상손실 계(A)	3. 예상이익 계(B)
포장개선예상사업효과(B-A)	금액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48-6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선정보고서

지역 (도, 시군, 읍면)	품목명	참여농 가수 (호)	면적 (ha)	예상 생산량 (톤)	지원포장 개수(개)	예상소요예산			
						계	보조		자부담
							국비	지방비	

주출하처	포장단위	포장재료	주출하 시기 (월 ~ 월)	시범요인	예상사업효과		
					효과(B-A)	손실(A)	수익(B)

<별지 제3호서식>

자체 가 48-7

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결과보고

1. 농가현황

○ 대표농가명 :

○ 대표농가주소 : Tel()

2. 시범사업 현황

지역명	작목명	참여농가수	면적	출하량	포장방법		사업시기
					포장단위	포장재료	
시(군) 읍(면) 리(동)		(호)	(ha)	(톤)			○월○일 ~○월○일

3. 시범요인 :

4. 주출하처 :

5. 소요비용 : 천원(보조 : 천원, 자부담 : 천원)

6. 소득효과

손 실 항 목	이 익 항 목
1. 감소된 수입 ○ ○ ○ 소계	1. 증가된 수입 ○ ○ ○ 소계
2. 증가된 비용 ○ ○ ○ 소계	2. 감소된 비용 ○ ○ ○ 소계
3. 손실 계(A) 포장개선사업효과(B-A)	3. 이익 계(B) 금액 : 천원

※ 사업전·후의 포장상자 정면, 측면, 윗면사진 각 3매 첨부

Ⅲ. 품목별 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경쟁력 함양
-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의욕 배양
- 농촌생활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실천자로서 능력배양
- 농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기계조작 및 점검정비 능력배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경영교육 및 참여식 실증교육 강화
-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 농업인력양성 교육
- 지도력 배양과 지역사회 활동강화 및 생활개선 실천의지 함양
- 최신형 기종 중심으로 취급조작 및 정비교육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2004
사 업 량		천명 1,964	491	491	492	
사 업 비	계	백만원 6,384	3,931	3,910	7,019	
	국비(중앙)	2,762	1,955	2,094	2,109	
	보 조	1,811	988	908	2,455	
	지 방 비	1,811	988	908	2,455	

※ 지방자체사업비 제외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촌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

(2) 추진계획(지방자체사업량 포함)

○ 중앙 : 정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7.8천명)

- 시책관련 교육(2.1천명) : 전업농가, 선도개척농, 농업회사법인

- 실수요품목별교육(0.7천명)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희망농가

- 유관기관, 단체위탁 및 협력교육(5.4천명) : 영농공개강좌, 농기계정비
기능사 보수교육

○ 도 : 지역특화작목 전문교육 및 신기종 농기계교육(19.7천명)

- 시책관련교육(2.2천명) : 기계화영농사, 산업기능요원

- 실수요품목별교육(15천명) : 지역특화작목 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2.5천명) : 선도지도자, 농촌여성지도자교육

○ 시군 : 현장애로기술 및 취약기술 실천과제 교육(1,058.2천명)

- 시책관련교육(117.7천명) : 전업농가, 농기계 실수요자, 농기계 부녀자 교육,

농기계 안전보수교육, 신규후계자교육

- 실수요품목별교육(674.4천명) :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266.1천명) : 4-H회원 과제교육, 4-H회원 진로지도
교육, 농촌여성 과제교육, 생활개선교육

(3)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별표 1]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국비지원사업)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계	국 비	보 조	
계	명 491,514	백만원 7,019	4,564	2,109	2,455	2,455
< 기술지도 >	7,838	360	360	360	-	-
○ 품목별전문교육(중앙)	7,838	360	360	360	-	-
< 기술지도사업보조 >	440,531	4,150	2,075	-	2,075	2,075
○ 청소년교육	13,800	326	163	-	163	163
○ 품목별 상설교육	74,400	554	277	-	277	277
○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00	3,000	1,500	-	1,500	1,500
○ 생활개선회교육	52,331	270	135	-	135	135
< 농촌활력화시범사업 >	21,302	760	380	-	380	380
○ 농업기계교육훈련	21,302	760	380	-	380	380
< 농어민후계자 육성 >	21,843	1,749	1,749	1,749	-	-
○ 후계자,전업농교육등	21,843	1,749	1,749	1,74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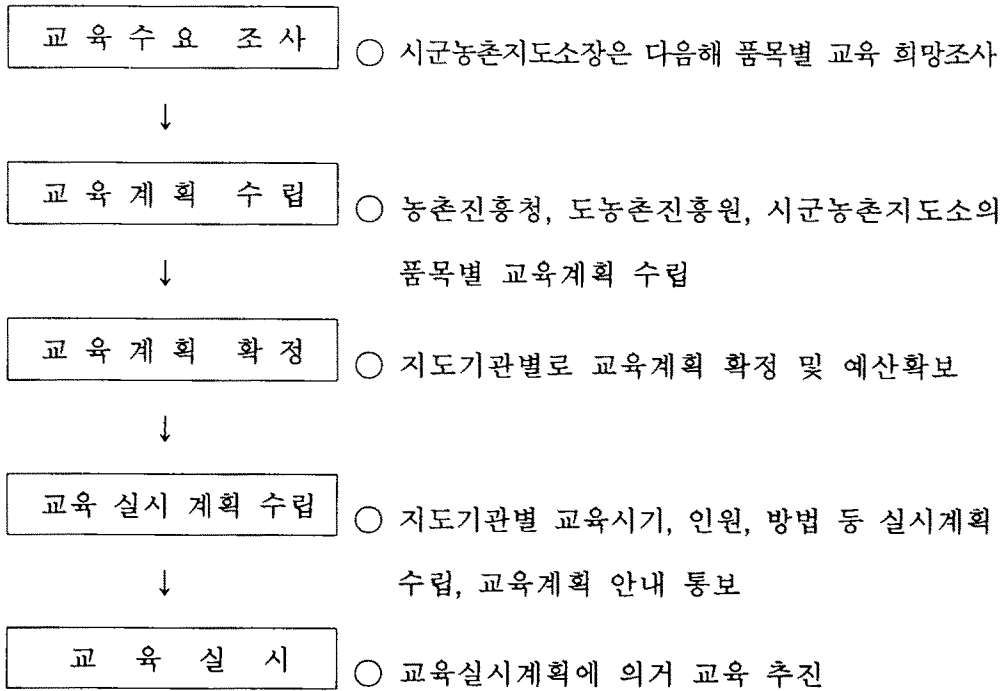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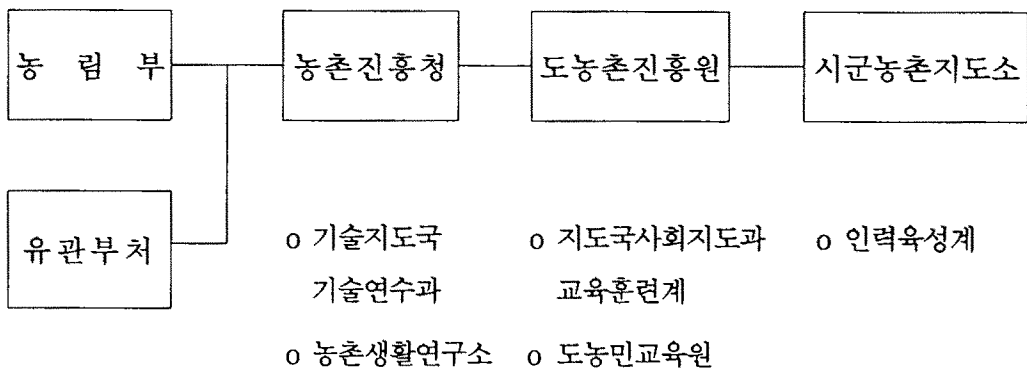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기술연수과 (전화 : 0331-292-4258)
- 시 도 : 도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
- 시 군 : 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촌진흥원장 및 시군농촌지도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별표 1]

'98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

(지방자체사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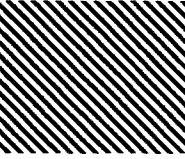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내용)	방법
농촌진흥청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2~3월 (5일)	명 700	○교육작목에 대한 영농경험이 있고 보다 새로운기술을 필요로 하는자 ○시군농촌지도소에서 교육 수요 조사에 희망한자	○매년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과정 설정(배,포도,양돈,느타리버섯 등)	전일합숙교육 -주간:강의,실습 -야간:영농정보교환,시청각,기타
"	전업농전문기술교육	4~9월 (3일)	1,697	○전업농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중 채소, 밭작물, 과수, 화훼, 특작 분야에 선정된자	○전업농 선발 분야별 전문과정	"
"	선도개척농교육	6~11월 (4주)	30	○'97년도 선도개척농으로 선정된 자	○선발분야별 전문교육(경종, 축산, 원예)	합숙교육 정신교육,전산교육,유통교육,위탁교육 등
"	선도농어가교육	4일	80	○선도농어가로 선정된 자	○분야별 전문교육	전일합숙교육
"	농업회사법인교육	3월 (3일)	281	○농업회사법인대표 ○도단위 지도 담당 공무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회사재무, 회계관리 ○농정시책 및 컴퓨터교육등	전일합숙교육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내용)	방법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정비기능사보수교육	7월(3일)	50	○'91년 이전 농기계 정비기능사 1급 자격취득자 및 갱신자로서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91 이후 신개발 농기계 위주 교육	비합숙 (경비자부담)
농촌진흥청 (도별희망주산지역)	영농공개강좌	3, 9월(1일)	5,000	○전문기술교육 참여희망농업인	○개방화 대응 지역주산 성장작목	이론강의 병행 질의응답식교육
도농촌진흥원 또는 주산단지	지역특화소득작목전문교육	3~12월(1~2일)	도 자율 획정 15,000	○작목별 주산단지 요원 및 교육 희망 농업인	○지역특화 작목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방법 선택 운영 (핵심기술, 경영설계 등)
도농촌진흥원	개방화대응선도지도자교육	4~11월(1일)	1,500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등 각급학습단체핵심교육	○품목별농업 인조적육성 및 지도력배양 등	강의및사례발표
도농촌진흥원 또는 시군농촌지도소	산업기능요원교육	3~11월(3일)	1,156	○'97산업안전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농촌지역예비 후계자로서 지도력배양 ○정신교육, 선진지견학 등	비합숙 (강의, 실습 및 견학)
도농민교육원	기계화영농교육	연중(4주)	1,000	○기계화영농사 요원	○종합반 편성 운영	이론및실기실습
도농민교육원	농촌여성지도자교육	3~11월(2~3일간)	960	○생활개선회임원	○농가경영 합리 ○농산물가공 ○생활개선회 활동	강의, 실습

교 육 기 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 원	교 육 대 상	세부교육과정 (내 용)	방 법
시군농촌 지도소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12월 (연간 4회 이상)	74,400	○품목별 조직 농업인대상 중심	○품목별 생산 및유통단계 별핵심기술 지도	강의, 토의, 사례 발표, 실기실습, 견학 등
시군농촌 지도소	전업농가 교육	3~10월 (2일)	10,000	○신규쌀전업농 가	○고품질저비 용경영기법 등	강의, 사례발표, 시청각교육
시군농촌 지도소 (지역별 주산지의 공공시설)	새해영농 설계교육	1~2월 (1일)	600,000	○품목별조직농 업인 ○주산단지 등 참여희망농업 인	○공통교과: 농어촌발전 대책, 지역 농정시책, 벼농사 ○전문교과: 과정별전문 기술교육, '98개선과제 핵심기술	새 품종, 새 기술 등 핵심기술 중점교육 (강의, 토의, 사례발표 등)
시군농촌 지도소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한기 (2일)	15,000	○농업기계 공동 이용조직 기간 요원, 신규농기 계구입 실수요 농가 ○육묘상자 구입 확인을 받은 전농가	○신규농업기 계 기종	교육기종대상자 운전조작, 점검 기술 실기실습
시군농촌 지도소 또는 부락단위	농업기계 부녀자 교육	농한기 (2일)	5,000	○농업기계 보유 농가부녀자 및 교육희망 부녀 자	○점검요령, 기초운전작 업 기술 및 교통 안전	실기실습 중심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내용)	방법
시군농촌지도소 또는 부락단위	농업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	3~11월 (1일)	79,485	○주행성기종 보유농가(트랙터, 경운기 등)	○도로교통법 규및농기계 안전사용법	각종농기계교육 훈련시병행 실시
시군농촌지도소	신규후계자교육	4~10월 (2일)	8,227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정신교육 ○영농설계 및 진단요령	강의, 사례 발표, 시청각교육 등
"	4-H회원진로지도교육	연 중 (1주간)	3,750	○농업희망 4-H회원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관 확립	현장체험식교육 (유관기관·단체)
"	4-H회원과제교육	연 중 (1일)	10,050	○핵심 4-H회원 및 영농후계세대회원	○과제분야별 교육	강의, 토의, 사례 발표, 실습
"	농촌여성과제교육	연 중 (2~3일)	200,000	○시군생활개선 회원	○의식주, 생활 개선, 가정경영 등	강의, 실기 실습
"	생활개선회	연 중	52,331	○각도 시군 생활개선회원	○여성지도력 배양 ○지역사회 활동 참여	강의 및 수련회

Ⅲ. 인 력 육 성



여 백

69	농업인후계자 육성(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1. 목 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규 농업계학교 출신자 및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종 소지자의 조기 영농 정착유도 및 영농기반조성
- 품목별 균형있는 농업 후계인력 육성
- 농업인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미혼여성의 농촌 정착유도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81~'96까지	'97	'98(예산액)
사 업 량		105,669	88,643	8,526	8,500
사 업 비	계	1,616,630	1,134,558	227,072	255,000
	음 자	1,616,630	1,134,558	227,072	255,000

* 어업인후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육성 지원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고령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영농후계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업인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수도작 : 30~50백만원, 축산분야 : 20~30백만원, 기타 : 20~50백만원

4) 지원조건

가)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금리 및 융자기간 : 국고융자 100%,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 농업인후계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후계자 자격이 상실됨
-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자와 사업자금 지원은 신청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자는 의무 종사기간(36개월, 28개월)이 끝난 후 농업인후계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인 후계자가 분할 납부 또는 자금회전시기에 이자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조정 가능

나) 융자 취급기관

○ 경종 농업분야 : 농협중앙회, 축산분야 : 축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의 중앙회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읍·면 단위에 위치한 계통기관(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시설의 종류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 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 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지원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료, 농약, 유류구입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외 타 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경북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8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나. '98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명 8,500	백만원 255,000	255,000	-	255,000	-	-
농업인 후계자육성	8,500	255,000	255,000	-	255,000	-	-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시·군, 읍·면 : 대상자 심의·선발 및 지원액 결정, 사후관리
- 농촌지도소 : 대상자 심의·추천 및 선정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 의 단위기관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TEL 02-503-7216~7)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과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촌지도소

다.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가 400점이상 된자중에서 선발 및 지원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정착의욕 (150점)	○ 읍·면지도협의회에서 평가(150점)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 읍·면지도협의회에서 현지 확인후 평가(필요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평가)
○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50점)	○ 학력(100점) - 농업계 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영농 정착의욕이 강한자에 대하여는 재학중인 자도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 인정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50점) - 6개월이상 : 50점 - 3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등 인정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82조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관이 인정한 독농가농장 및 연수기관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 농업전문교육원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 영농경력 (100점)</p> <p>○ 영농기반 (150점)</p> <p>○ 영농사업 계획 (150점)</p>	<p>*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 일수에 반영</p> <p>○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10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미만은 50점으로하되, 6년이상 1년단위로 10점씩가산, 4-H경력은 1년단위로 5점씩 가산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는 재학기간을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미만 0점 . 1년이상 6년미만 50점 . 6년이상 7년미만 60점 . 7년이상 8년미만 70점 . 8년이상 9년미만 80점 . 9년이상 10년미만 90점 . 10년이상 100점 - 군근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5점씩 가산(1년미만은 5점) <p>○ 영농 기반(15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ha이상 : 150점 - 1.5ha~2.0ha미만 : 125점 - 1.0ha~1.5ha미만 : 100점 - 0.5ha~1.0ha미만 : 75점 <p>*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영농기반으로 인정</p> <p>*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p> <p>○ 영농 사업계획(15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학교부설 영농 훈련기관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졸업자 및 재학중인자는 재학기간을 영농 경력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농 종사경력도 인정 ○ 농업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 경력으로 인정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 대상자 포함 <p>○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2)</p> <p>○ 영농기반이 농업진흥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배점(1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기반 전부 있는 경우 : 30점 -영농기반의 50%이상 있는 경우 : 15점 <p>*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p> <p>○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p> <p>*사업계획의 타당성·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평가</p>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가점사항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농업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중 영농 사업 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에 대하여는 총점(7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50점 가산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교육(경영과정포함)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점수(5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1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1/2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단,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가점

2) 우선순위

- 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농업계 학교출신자 우선선발등)를 제외하고는 평가 점수가 높은자 순
 -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 학교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여성 순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과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한 우선 선정(특수전문대 출신 우선 선발 원칙)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일반적인 경우 >

①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추천

- 읍·면장은 읍·면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한후 적격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농촌 지도소장에게 통보

< 읍·면지도 협의회 >

- 읍·면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 농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읍·면담당 농촌지도소 공무원
- 농·축협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선도농가 3인등 총 6인내외(읍·면 농업인 후계자 대표 1인 이상포함)

② 농촌지도소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농촌지도소장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장이 통보한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400점이상된자)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이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후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400점이상 된자)만 지원금액을 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
- 시지역의 농촌지도소장은 읍·면지도협의회 심의사항을 시의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토록 함.

<농촌지도소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

- 시·군 농촌지도소 전문지도사
- 농업계 학교 교사 또는 교수
- 품목별 선도농가 4인등 총 6인 내외
(관할구역내의 농업인 후계자 대표 2인 이상 포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에 위임된 경우 >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지역내 농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 권한을 부여
 - 이 경우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지역내 농업인들이 알수 있도록 공지·홍보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업인후계자 지원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 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품목별 전문심사위원회(6인이내)를 구성하고 농업인후계자 자금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합계가 400점이상된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농촌지도소장에게도 통보(별지 제2호서식)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자는 추천한 생산자단체와 동일 품목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한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심사위원회>

- 농촌지도소장이 지정하는 전문지도사
- 농·축협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지정하는 농업인 4인등 총 6인이내(이 경우 가능한한 농업인후계자 2인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자 순위 결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업인후계자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 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 있게 후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 부여등 객관적 근거 마련)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촌지도소장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농공(중)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출신 우선 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농고(9개교)
- 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촌지도소장은 시·군, 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내에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농촌인력육성사업(후계자, 선도개척농, 전업농, 선도농 등)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와 다른 품목일 경우에도 가족단위로 육성하는 전업농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농업인 후계자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 관련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 종사자로 봄)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전업농(선도농 포함)등 농촌인력육성사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선정된 자 포함)에 대하여는 농업인후계자 추천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 구별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과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 인자는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군, 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산업기능요원 지원대상포함)의 20%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400점이상된 자만 선정 또는 자금지원
 - 부부가 모두 농업인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 (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자금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자순으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즉시 대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농촌지도소에 통보 및 계통보고
- 시·도지사는 농업인후계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도 선발 및 지원 인원에 포함 집계)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농촌지도소에 제출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촌지도소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즉시 통보하여야 함.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 『농림사업평가규정』(농림부훈령 제881호, '96.12.26)에 의한 사업평가결과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시·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비 예산액의 1%씩을 각각 증액 배정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배정
- 농업인후계자육성자금 위탁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축협중앙회장에게 대여
- 농·축협중앙회장은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기관에 배정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 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실시등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 의함

- 사업자금의 용자는 농업인후계자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용자 할 수 있음.
 - 용자취급기관장은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영농기술교육 이수자와 영농기술교육 면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 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지도소장의 사업 추진계획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출토록 함. (단, 공통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자도 용자 가능)
 - 농촌지도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가축입식, 농지구입등)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마.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1) 교육훈련

- 농촌지도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후계자로 선발된 자에게 농업인후계자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 교육	2~5일간	농촌지도기관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농업인후계자
영농기술교육	1주이상	선도농가, 농업계학교, 농촌지도기관등	"

※ 영농기술교육기관은 현지여건, 농업인후계자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농촌 지도소장이 결정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농업인후계자는 영농기술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와 관련된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등) 졸업자
 - 최근 2년이상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림부, 농진청 계통기관이 인정하는 전문영농교육기관에서 4주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1개월이상 독농가(선도농, 시범농장등)입주훈련 이수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사업 계획상의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통교육은 후계자로 선정된 자 전원이 이수토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촌지도기관에 예비후계자와 농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 하여야 함
 - 농촌지도소장은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영농기술교육 면제자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2) 해외연수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후계자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농업인후계자 육성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해외연수 기회부여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3) 교육훈련 계획 제출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국내교육훈련 및 해외연수계획(예산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사업대상자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날 또는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여야 하며, 읍·면·동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읍·면·동 회수할 것을 통보
-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용도로 전·유용된 사실이 있거나, 사업장이탈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읍·면·동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읍·면·동 회수할 것을 통보
- 농촌지도소장은 예비후계자와 농업인 후계자의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농업인후계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 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

나. 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1) 사업취소사유

- 농촌지도소장과 읍·면장은 농업인후계자가 지원자금을 읍·면·동에서 받은 후 다음사항의 읍·면·동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읍·면·동에서 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자(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예 : 수도작 후계자가 정육점운영 등)중 농업인후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구청장과 농촌지도소장이 농업인후계자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 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 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 말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장소의 이전

- 농업인후계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업지도는 주소지 관할 농촌지도소에서 담당
-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한 후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 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관조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융자취급 기관에서 담당)

라. 농업인후계자의 교체 및 승계

1) 농업인후계자 교체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농촌지도소와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2) 농업인후계자 승계

- 사업자금 융자후 농업인후계자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승계여부 결정(이 경우 승계일 기준 40세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에 한함)
 - 농촌지도소장은 승계자에게 반드시 농업인후계자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액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 기관(농촌지도소, 융자취급기관등)에 통보
- 미혼인 여성후계자가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농업인후계자 승계절차에 준함)

마.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

1)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촌발전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

2)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

-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농민단체 육성 도모

3) 농산물의 판매지원

- 농·축협중앙회장은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
 - 농산물 협동출하반에 적극 참여 유도
 - 규격포장, 운송, 판매등 알선 지원
 - 판매매장을 이용한 주말시장개설등 전시판매 지원
 -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간행물 배부, 운송자금의 지원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과 축협중앙회장은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농업인 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를 알선

4) 농촌인력육성업무 추진에 관련된 세부사항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후계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예비후계자를 육성·관리
- 동사업실시요령 이외의 농촌인력육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바. 보고 (보고기관 → 농림부)

보고기관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농업인후계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축협중앙회장	읍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축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 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시·도지사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매년 1.30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표 1]

예비후계자육성

가. 신청대상

-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현재 30세이하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중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예비후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군 농촌지도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신청받은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비후계자 신청서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다. 교육·훈련

- 농촌지도소장은 등록된 예비후계자에 대하여 영농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전담지도사의 지도아래 영농 4-H활동 혹은 독농가,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예비후계자의 자질과 부모의 영농기반 등을 감안하여 작목선택에 대한 상담 실시
 -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예비후계자는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에 입학 추천

라. 예비후계자 정리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농촌지도소장이 예비후계자 등록을 취소함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전업, 도시이주등으로 영농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중 40세이상 되는자

마. 예비후계자 신청현황 보고

- 농촌지도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 등록 현황을 익년도 1.20까지 시·군을 통해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익년도 1.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
 - 단, 시지역(읍·면지역제외)과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중
 -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단,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인 자로서 수도작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30세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신청 가능
 -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사업시행 년도 1.1현재 40세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증 전역희망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인 자
 - 산업기능요원(농업인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시행 년도 1.1현재 복무일수가 2년이상 경과된 자
 -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시·군 또는 읍·면 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이고 영농 교육 훈련등을 마친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 ※ 단,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전업농(선도농 포함)등 농촌인력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 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 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예비후계자 등록확인서, 한농연 추천서(별지 14호서식),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 구청장과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 등은 '98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지침을 준용하여 결정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노지채소	0.24	0.24~0.48	0.48~0.73	0.73~0.97	0.97
시설채소	0.08	0.08~0.17	0.17~0.25	0.25~0.33	0.33
사과	0.19	0.19~0.39	0.39~0.58	0.58~0.77	0.77
배	0.11	0.11~0.22	0.22~0.33	0.33~0.43	0.43
포도	0.11	0.11~0.22	0.22~0.32	0.32~0.43	0.43
감	0.15	0.15~0.30	0.30~0.44	0.44~0.59	0.59
	두 미만	두 미만	두 미만	두 미만	두 이상
한우(번식)	5	5~10	10~15	15~20	20
낙농(비육)	6	6~12	12~17	17~23	23
낙농	2	2~4	4~6	6~8	8
양돈(비육)	34	34~67	67~101	101~135	135
양돈(번식)	7	7~13	13~20	20~26	26
	수 미만	수 미만	수 미만	수 미만	수 이상
양계(산란)	791	791~1,583	1,583~2,374	2,374~3,165	3,165
양계(육계)	2,138	2,138~4,275	4,275~6,412	6,412~8,550	8,550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담배	0.38	0.38~0.76	0.76~1.14	1.14~1.52	1.52
인삼	0.27	0.27~0.54	0.54~0.81	0.81~1.08	1.08
양잠	0.63	0.63~1.25	1.25~1.88	1.88~2.51	2.51
	평미만	평미만	평미만	평미만	평이상
벼 (느타리)	28	28~56	56~84	84~112	112

※ '96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 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만 50%인정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농 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 보유 현황 (두,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계								
농지 구입								
농기계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
한우 입식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향후 영농 계획 등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후계자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가기준 (점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자체가 26-2

농업인후계자선정결과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 계	결혼여부		연 령				
		기혼	미혼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한국 농전	여주 농전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함.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별지 제5호서식]

예비후계자 · 후계자 관리카드

사 진 (반명 합판)	① 성명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고유 번호		
	④ 현주소 우편번호 :	⑤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③ 연락처 전화번호 :		
			⑥ 주사업(희망)작목 : ⑦ 자금지원(희망)내역		
	⑧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 결혼여부: ㉗미혼 ㉘기혼		⑩ 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 병역 및 예비후계자 · 후계자 등의 경력

⑫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 ·	· ·		· ·	· ·		
병 역	· ·	· ·		· ·	· ·		
예비후계자	· ·	· ·		· ·	· ·		
후 계 자	· ·	· ·		· ·	· ·		
전업농가	· ·	· ·		· ·	· ·		

⑬ 포상경력 · 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월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 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 별 규모(평, m ² ,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저온냉장고, 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천원)	농 업 조 수 의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읍면상담소장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농업인후계자 1년차, 2년차,등을 구분기입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중,하,문제있음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서식]

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의뢰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체가 26-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증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군농촌지도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체가 26-6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 별	사업 취소 연도 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 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 년도	지원액 (용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시울시 · · · 세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 회수 불가능 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예비후계자 신청서				접수 번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재학중)		졸업년월일		
지원사업	분 야	경종농업·축산	작목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백만원 ()년도	
영농기반	경지면적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평				
	시설규모	우사·돈사·계사: 평, 두·수, 비닐하우스: 기타: 평				
	장 비	트랙터: 이앙기: 트럭·승용차: 컴퓨터: 기타:				
가족사항 (본인 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증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 련	기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농촌지도소장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자체가 26-7

예비후계자 등록현황

1. 성별·직업별·연령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성 별			직 업 별			연 령 별					
	계	남	여	농업종사	학생	기타	20세이하	21~25	26~30	31~35	35세이상	
서울												
·												
·												
제주												
계												

2.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서울													
·													
·													
제주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예비후계자중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되 매년 12월말 기준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입니다.

I. 전업농육성

1. 목 적

- 우리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
-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21세기 우리 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
-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기술·정보·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
- 농가의 발전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원

3. 법령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농업인 등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6	'97	'98	'99	'00~'04
사업량(호)			29,414	11,644	11,500		
사 업 비	계		1,366,874	610,570	754,444		
	○ 쌀전업농		1,092,350	505,170	604,444		
	-국고보조		105,750	41,125	16,450		
	-지방보조		105,750	41,125	16,450		
	-국고융자		100,450	26,320	46,060		
	-기타융자		126,900	39,480	69,090		
	-자부담		47,000	16,450	16,450		
	-농자립자금		606,500	340,670	439,944		
	○ 기타전업농		241,950	105,400	150,000		

※ ○ 축산 및 수산분야 제외

- 쌀전업농 사업량은 '92~'96의 경우 선정인원이며, '97부터는 조기선정 6만호 중 농기계 지원농가수를 포함하여 농지매매·임대차 지원계획 농가수인 10,000호를 기준으로 한것임(농지매매·임대차 자금은 동일농가에 중복지원이 가능함)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WTO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등을 위해 '92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

-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3) 호당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쌀전업농 (호당평균)
 - 농기계구입 : 23.5백만원 (국고보조 10%, 지방비보조 10%, 국고융자 28%, 농협융자 42%, 자부담 10%: 연리3%, 1년 거치 4-7년상환)
 - 농지규모화 : 44백만원 (농지구입자금 연리 3%·20년균분 상환, 임차료 선급금 무이자·5년 균분상환)
- 기타 품목 전업농 : 50~100백만원(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 품목과 농가수준에 맞게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

(4) 지원내역

- 영농규모확대 및 시설·장비현대화 지원
- 소득증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영농기술 및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 지원
- 지원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비료·농약·유류 구입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내역

분 야	지 원 대 상 사 업 내 용
쌀	농지구입·임차, 농기계구입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저장시설, 관수시설, 컴퓨터, 대형농기계, 기타 농업기반시설

나. '98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보조	농협융자· 자부담	농지관리 기금
			계	보조	융자			
계	호	백만원						
	8,500	754,444	212,510	16,450	196,060	16,450	85,540	439,944
쌀전업농	7,000	604,444	62,510	16,450	46,060	16,450	85,540	439,944
기 타 전업농	1,500	150,000	150,000	-	150,000	-	-	-

※ 쌀 전업농 육성사업량 7,000호는 농기계공급 농가수이며,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농기계공급농가 7,000호를 포함하여 10,000호까지 지원함

※ 융자조건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 연리 3%, 1년거치 4~7년 상환
- 과수·화훼등 기타전업농 :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구입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요령, 농지매매·임차자금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요령 참고

※ 시·도별 지원계획 : <표 1, 2>

< 추진체계 >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가. 사업추진기관

-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는 구청장)

나. 대상자 선정

(1) 시·군별 선정인원

- 대체인원 : 기선정된 시·군별 인원중 사업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별도의 승인없이 선정절차에 따라 해당 인원수만큼 대체 선정

- 추가인원 : 여건변경 등 불가피하게 시·군별 인원을 초과하여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별 인원을 조정하여 승인하며, 시·도별 인원을 초과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추가선정에 대한 승인요청시 시·군 비재배면적, 작부체계, 농업인력현황 및 전망, 경영체별 생산구조 전망, 농지유동화 전망, 전업농 육성목표 달성가능성 등 추가선정이 불가피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1현재 55세이하인 농업인
 - 경영주 연령이 56세 이상인 농가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후계농업인이 신청함

< 후계농업인 >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동거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 ※ 군복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후계농업인으로 봄

(3) 선정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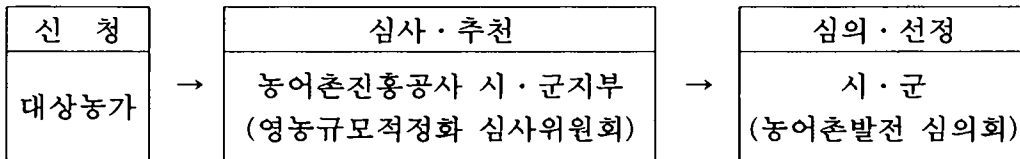
- 비재배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자
 - 경영규모가 큰 자
 - 경영규모가 같은 경우 연령이 적은자
- 경영규모가 3ha미만인 경우
 - 당해연도에 규모화촉진직접지불 대상농가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 하는 방법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
 - 확대후의 경영규모가 큰 자

- 벼 재배경영규모가 큰 자
 - 경영규모가 같은 경우 연령이 적은 자

(4) 선정시기

- 대체인원 : 사업취소자가 발생된 경우 예비대상자중 시·군자체계획에 따라 수시선정 가능
- 추가인원 : 불가피하게 시·군별 인원을 초과하여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합적인 추가선정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0일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별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12월 31일)

(5) 선정절차



1) 신청

- 연중수시 신청 가능

2) 신청서 접수기관

- 거주지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농협

※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로 송부

3) 구비서류

- 신청서(실시규정 제3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7호 서식)

4) 대상자 심사·추천

-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장은 탈락된 인원과 추가신청인원에 대해 예비대상자로 관리하고 대체 및 추가선정 사유 발생시 예비 대상자에 대해 심사하여 우선순위(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추천
 - 농진공 시·군지부장은 경영규모 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영농권)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농지원부 등을 활용, 기초적 점검을 실시
 - 예비대상자 전원에 대해 신청포기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사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지역(시·군)을 달리할 경우 거주지 농진공 시·군지부장은 사업장 소재 농촌지도소나 농진공 시·군지부에 문의하여 심사
 - 영농규모적정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8호서식)
 - 개인별 규모확대계획이 그 들녘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연령분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농지유동화 전망과 조화가 되는지, 같은 들녘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자간 경합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추천
- ※ 영농규모적정화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농진공 시·군지부장), 쌀선도 농가(독농가) 2인, 수도작 후계자 2인, 쌀전업농육성대상자 2인, 시·군·농촌지도소·농진공 군지부·농협관계자 및 농지관리위원 각 1인씩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5)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심의하고,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상의 전업농육성목표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6)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완료 즉시 선정결과를 계통보고하고, 농진공·농촌지도소·농협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

※ 보고양식 : 별지 제9호 서식

다. 사업시행

- 영농규모적정화 자금지원(농어촌진흥공사)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영농규모적정화사업 지침 참조)
- 농기계구입자금지원(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함(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지침 참조)

□ 기타 전업농육성대상자

[발작물 · 채소 · 과수 · 화훼 · 특작]

가. 사업추진기관

-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는 구청장)

나.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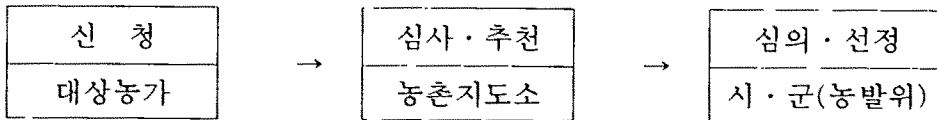
(1) 선정기준

- 영농경력, 농과계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계획 및 시설수준이 우수한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3)

(2) 우선순위

-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
- 동점일 경우 신청분야 농업인 후계자, 농과계학교 졸업자 순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가능성 등을 조사·확인한 후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사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지역(시·군)을 달리할 경우 거주지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장 소재 농촌지도소에 문의하여 심사

<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 농촌지도소 전문지도사,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관계자
- 농과계학교 교수 또는 교사
- 농업인후계자 출신 1인 이상을 포함한 그 분야의 선도농가 2인
- 농·축협 임원, 농민단체 대표 등 총 7인 이내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10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제2호 서식)

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 하고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상의 전업농육성 목표를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계획 작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포기자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 한농가가 들이상 품목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쌀 포함)

다)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20까지 사업대상자와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하는 즉시 신청자·융자취급기관·농촌지도소·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 ※ 보고내용 : 연령별, 학력별, 성별, 출신(농어민후계자 출신여부)별, 지원 계획시기(분기)별 지원대상자수 등(보고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시행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자금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전업농육성사업 지원 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 시·도 및 시·군 계통기관에 배정
- 융자방법 등
 - 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업무 지침 등에 따름
-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지원하여야 하며, 융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전액 또는 분할하여 인출토록 함
- 시설설치 등 상당한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자금의 10%까지 착수금을 인출할 수 있음

[선도개척]

가. 사업추진기관 : 농촌진흥청

나. 선발인원

- 30명(경종 10, 원예 10, 축산 10)
 - 분야별 기본사업량의 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다.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기타 전업농 예산에서 지원

- 1인당 100백만원 융자(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신청자격

- 35세 미만으로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본인소유 또는 승계대상영농기반이 있고 그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제외대상 : 농업인후계자, 전업농육성대상자, 선도농업경영체로 이미 선정된자

마. 선발방법

- 시·군 농촌지도소 신청서 교부·접수 → 도 농촌진흥원(특별시·광역시 농촌지도소) 1차 심사 → 농촌진흥청 2차(최종)심사
- 도 농촌진흥원에서 총 10인 이내의 인원을 농촌진흥청에 추천하되,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천
 - ※ 특별시·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는 분야별로 각 1인씩 총 3인 추천
 - 추천자 결정을 위한 심사항목
 - 영농기반(40점), 학력(30점), 교육훈련 이수실적(5점), 영농관련 단체 활동경력(5점), 영농경력(20점),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을 경우 총점의 5%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 농촌진흥청에서 세부심사기준 마련
- 농촌진흥청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논문심사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선발
 -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 농업여건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이해도, 해당분야 전문지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업발전 선도자로 발전가능성 및 의욕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평가

바. 기타

- 모집공고, 신청, 교육·훈련, 사후관리등 세부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수립·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농지구입·임차자금 : 영농규모적정화사업지침에 따름
- 농기계구입자금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농기계구입자금지원지침에 따름

(2)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읍·면장
 - 농협 지역조합장(읍자취급기관장)

(3) 사업추진상황 등의 점검

- 농촌지도소장 또는 농진공 시·군지부장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은자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외의 타용도로 전·유용하거나 농업을 이탈한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 또는 농진공 시·군지부장이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농어촌진흥공사는 매년 9월말까지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관리상황을 조사하여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6개월후 확인하여 계속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촉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재촉구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규모확대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등 전업농육성사업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전업농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함

(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 사유

<공통사항>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후계농업인이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사망, 신병, 파산, 금치산 선고 등으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무자 등은 제외)
- 기타 시장·군수가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쌀전업농은 농진공 시·군지부장, 기타 전업농은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가 5ha미만인 자로서 선정된 후 3년간 경영규모 확대실적이 없는 경우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농지면적이 임차기간 만료로 감소하였을 때 2기작이상 계속하여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선정된 이후 소유 논을 증여·매도·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소장, 읍·면장, 농협지역조합장·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 등 사후관리 보조자는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용자금상환에 대하여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토록 통보
- 지원자금의 회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취소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반기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고(별지 제5호 서식)

(5) 자격 승계

- 시장·군수는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거나 56세이상으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승계자가 55세 이하로 동일가구내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간다는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할 수 있음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받고자 하는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농진공 시·군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시·군지부장은 승계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계를 승인하고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계통 보고

(6)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자금취급기관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조치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쌀전업농 농기계공급요령에 따름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지도소장 또는 농진공시·군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선정분야를 달리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장소의 변경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업지도는 사업장 관할 농촌지도소에서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전

시장·군수는 융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촌지도소, 융자취급 기관)에 보고 및 통보

- 시·도간 이전

- 시장·군수는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전후의 시·도지사와 지도기관,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관조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용자취급기관)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다. 용자취급 및 지원계획, 용자실적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자지원 및 자금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계통기관에 시달하고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용자취급기관은 분기별 용자실적을 매분기 익월 20까지 유관 기관과 계통기관에 통보 및 보고
- ※ 쌀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임차자금 지원의 경우는 제외

라. 영농규모적정화사업요령의 적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영농규모적정화(농지매입·임차)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요령에 따름

마. 기 타

- 농촌지도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의 지침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경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발전단계에 맞는 영농기술과 경영지도 실시
 - 쌀전업농 : 농어촌진흥공사
 - 기타전업농 : 농촌지도소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촌지도기관의 전업농 교육훈련, 경영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전업농 육성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6. '99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98년도 사업시행요령에 따라 수시 신청 및 선정

□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어촌 진흥공사 시·군지부, 농협
 -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심사기관인 농촌지도소에 송부
 -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나. 신청자격

-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
 - *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
-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
 - 경영주가 56세 이상인 농가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후계농업인이 신청함

< 후계 농업인 >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동거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 (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 군복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후계 농업인으로 봄

- 가족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있는 농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농업인후계자 출신은 선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신청품목 경영규모가 아래 최소규모~전업농규모사이에 있는 농가

품목(전업농규모)	최 소 경 영 규 모
밭 작 물 (식량류 10ha)	○ 자기소유의 밭 1.0ha이상 경영
채 소 - 노지채소(2ha) - 시설채소(1200평)	○ 채소포장 경영규모 1.0ha이상 경영 ○ 600평 이상 (일반시설 기준) 경영
과 수 (2.5ha)	○ 자기소유 과수원 0.5ha이상 경영
화 훼 - 절화류(시설1200평) - 분화류(시설900평)	○ 시설 500평 이상 경영 ○ 시설 400평 이상 경영
특 용 작. 물 - 벚섯(500평) - 약용작물(3ha) - 인 삼(3ha)	○ 자기소유 벚섯재배시설 150평 이상(일반시설 기준)경영 ○ 자기소유 약용작물 포장 1.0ha이상 경영 ○ 1.0ha이상 경영

다.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사업시행전년도 1. 31까지
- 접수기관 :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농협

라. 구비서류

- 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신청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필요시)

바. 기타사항

- 기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음
- 한농가가 두 개이상 품목의 전업농 육성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II. 선도농업경영체육성

1. 목 적

-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 일반농가·법인경영체의 발전 모델로 활용
- 일반농가와 농과계 학생에 대해 현장감 있는 기술·경영교육 실시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개방화 속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경영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온 경영체를 선발
- 「선도농업경영체」사업장을 발전모델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 일반농가에 대한 견학실시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모델을 효과적으로 전파
- 농과계 학생에 대한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기회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5	'96	'97	'98 (예산액)	'99~2004
사업량(호)		210	65	70	55	20	-
사업비	계	백만원 17,250	3,250	7,000	5,500	1,500	-
	음자	14,125	2,925	5,600	4,400	1,200	-
	자담	3,125	325	1,400	1,100	300	-

주) 어업분야 제외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발굴, 그 사업장을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발전 모델 및 견학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5년부터 추진

(2) 지원대상

- 가족경영체 또는 법인경영체 중 생산기술·경영기법·시설장비·소득 등에서 앞서가는 경영체로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도 지사가 선정한 자

(3) 경영체당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 사업규모 : 75백만원(경영체당)
- 재 원 : 국고융자 80%(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내역

- 농업경영체의 발전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장비 지원
-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 시설·장비 지원

(5)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98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20	백만원 1,500	1,200	-	1,200	-	300
선도농업 경영체지원	20	1,500	1,200	-	1,200	-	300

* 시·도별 사업량 : 강원3, 충북1, 충남1, 전북5, 전남3, 경북5, 경남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지도소

다. 신청자격

- 가족경영체

- 당해분야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고, 경영규모·소득·시설장비·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에 있어 전업농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어 일반농가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 경영주가 60세 이하로서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 농가에 전파 하려는 의욕과 실질적인 교육수행능력을 갖춘 경영체
- 농업소득 : 연간 50백만원 이상
- 농업소득중 전문품목 소득의 비중 : 80%이상
- 품목별 경영규모, 기계·시설·장비, 재배기술

분 야	품 목	전문품목경영규모	시설장비 및 재배기술
곡 물	쌀	10ha이상	일관기계화작업을 위한 대형농기계 보유, 조작가능
축 산	한 우 젖 소 돼 지 닭	100두이상 50두이상 1,000두이상 40,000수이상	축사시설자동화 착유·사료급여자동화 사료급여·분뇨처리자동화 사료급여·급수·환경제어·집란·계분처리 자동화
과 수		2ha 이상	관배수시설 완비, 모노레일운반기, 저온창고
채 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2ha 이상 1,800평이상	퇴비 사용, 기계화작업 자동화온실
화 훼	절 화 류	1,200평이상	자동화온실, 선별·포장·결속기, 저온저장고(또는 저온처리실)
특 작	분 화 류 시설버섯 약용작물	900평이상 300평이상 2ha이상	자동화온실, 운반차량 자동화온실 저장·조제시설

- ※ 자동화온실 : 온·습도, 환기, 관수 등 환경자동제어 기능(비닐, 경질판, 유리온실)
- ※ 상기 신청자격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으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도농업경영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농업 소득 50백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장비를 파악, 자체기준을 작성 사업 추진

○ 법인경영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설립 일로부터 3년 이상경과(신청서 제출기한 현재)
- 경영(순이익)규모가 사원(조합원)수× 품목별신청자격기준이상인 경영체
-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학생·농민·다른 농업법인관련인에게 전파할 의욕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도능력을 보유한 사원 또는 직원이 있는 경영체

라. 신청절차

- 접수기관 : 대상자 추천기관(시·군농촌지도소)
- 신청방법 : 시·군 농촌지도소의 안내와 지원을 받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농민·학생교육계획)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전전년도 8.31까지 추천기관에 제출

마.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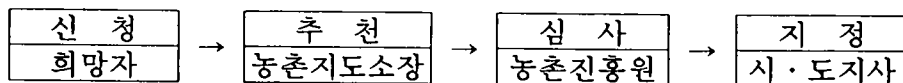
- 신청서(실시규정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농업관련 기술 및 지도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국가기술 자격증 사본등)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경영규모·시설·장비·지도능력에 대한 종합평점결과가 높은자로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

(2) 선정절차



- * 농과계학생 대상 실습수행계획이 있는 신청자는 농과계학교장의 추천서 및 실습수행 약정서를 첨부하여 농촌지도소에 신청함

(가)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장이 사업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전전년도 10.30까지 심사 기관장(농촌진흥원장)에게 제출

(나) 대상자 심사

- 심사기관장은 품목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지도국장
- 위 원 : 품목관련 과장, 소속 공무원중 품목 연구사·지도사, 농과계 학교 관련 교수·교사, 생산자단체장, 선도농가 등 7~10인
- ※ 필요시 품목관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품목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항목 및 평점방법 : <별표 4>
- 심사기관장은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를 사업시행 전전년도 12.31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선정완료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와 선도농업경영체에 의한 위탁교육계획을 사업시행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보고양식 : 별지제 12호서식

(라) 대상자 확정

- 시·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보고

사. 사업시행

- 사업자금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통보한 “당해년도 선도농업경영체 지원 사업 계획”에 의거 시·도별,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 시·도 및 시·군 계통기관에 배정
- 융자방법 등
 - 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업무 지침 등에 따름
-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키로 결정된 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지원하여야 하며, 융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농촌 지도소장의 사업 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전액 또는 분할하여 인출토록 함
 - 시설설치 등 상당한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자금의 10%까지 착수금을 인출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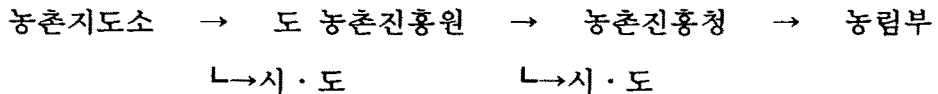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교육관리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 점 검
 - 점 검 자 : 시·군 농촌지도소 소속 전담지도사
 - 점검시기 : 매월 1회 이상
 - 점검내용 : 교육수행상황, 시설관리상태
 - 결과반영 : 농촌지도소장은 교육기피 및 시설을 교육목적외로 전용등 취소 사유 발생시 시장·군수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현장확인 및 시정 권유후 거부시에는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된 후 최소 5년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교육기피시 현장확인하여 시정권유후 계속 거부시에는 지정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8이전 선정자도 포함)

나. 보고사항

- 교육수행상황(별지 13-1호) 및 사업대상자별 투자내역 보고(별지 제13-2호 서식)
 - 농촌지도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및 도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 도농촌진흥원장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반기 익월 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보고체계



- ※ 연도말기준 교육수행상황보고시에는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별 투자계획과 실적을 대비하여 보고(별지 제13-2호 서식)

6. '99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99년도 이후에는 동사업을 폐지

< 별표 1 >

'98쌀전업농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농 기 계 구 입 비					농지매매 임차자금
		계	국고보조	지방비	음 자	자부담	
계	7,000	604,444,000	16,450,000	16,450,000	46,060,000	85,540,000	439,944,000
서울	-	-	-	-	-	-	-
부산	1	190,500	2,350	2,350	6,580	12,220	167,000
대구	6	498,000	14,100	14,100	39,480	73,320	357,000
인천	103	10,883,500	242,050	242,050	677,740	1,258,660	8,463,000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20	888,000	47,000	47,000	131,600	244,400	418,000
경기	1,402	85,804,000	3,294,000	3,294,000	9,225,160	17,132,440	52,857,000
강원	312	33,153,000	733,200	733,200	2,052,960	3,812,640	25,821,000
충북	331	37,741,500	777,850	777,850	2,177,980	4,044,820	29,963,000
충남	977	92,115,500	2,295,950	2,295,950	6,428,660	11,938,940	68,156,000
전북	843	87,542,500	1,981,050	1,981,050	5,546,940	10,301,460	67,732,000
전남	1,050	99,928,000	2,467,500	2,467,500	6,909,000	12,831,000	75,253,000
경북	995	85,079,500	2,338,250	2,338,250	6,547,100	12,158,900	61,697,000
경남	956	69,783,000	2,246,600	2,246,600	6,290,480	11,682,320	47,317,000
제주	4	1,837,000	9,400	9,400	26,320	48,880	1,743,000

※ 농지매입·임차자금지원 대상농가(10,000호)는 농기계공급사업량×10/7까지로 함

※ 시·도별 농지매입·임차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별표 2 >

기타전업농(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단위 : 호, 백만원)

	계		밭작물 (식량작물)		채 소		과 수		화 훼		특 작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사업 량	사업비
계	1,500	150,000	88	8,800	561	56,100	426	42,600	143	14,300	252	25,200
서울	-	-	-	-	-	-	-	-	-	-	-	-
부산	13	1,300	-	-	6	600	1	100	4	400	2	200
대구	4	400	-	-	1	100	-	-	-	-	3	300
인천	14	1,400	-	-	4	400	1	100	4	400	5	500
광주	11	1,100	-	-	5	500	1	100	4	400	1	100
대전	22	2,200	-	-	6	600	11	1,100	3	300	2	200
울산	9	900	-	-	2	200	4	400	2	200	1	100
경기	81	8,100	-	-	27	2,700	12	1,200	31	3,100	11	1,100
강원	148	14,800	26	2,600	68	6,800	8	800	4	400	42	4,200
충북	136	13,600	6	600	34	3,400	42	4,200	6	600	48	4,800
충남	164	16,400	-	-	42	4,200	68	6,800	13	1,300	41	4,100
전북	153	15,300	5	500	78	7,800	28	2,800	18	1,800	24	2,400
전남	209	20,900	25	2,500	98	9,800	61	6,100	11	1,100	14	1,400
경북	304	30,400	4	400	124	12,400	116	11,600	10	1,000	50	5,000
경남	123	12,300	3	300	47	4,700	46	4,600	19	1,900	8	800
제주	79	7,900	19	1,900	19	1,900	27	2,700	14	1,400	-	-
미통지	30	3,000	-	-	-	-	-	-	-	-	-	-

※ 농가당 지원기준 : 50~100백만원(국고융자)

< 별표 3 >

‘98선도농업경영체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98지원대역			비고
		읍자금	자담	계	
계	20	1,200	300	1,500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경기	-	-	-	-	
강원	3	180	45	225	
충북	1	60	15	75	
충남	1	60	15	75	
전북	5	300	75	375	
전남	3	180	45	225	
경북	5	300	75	375	
경남	2	120	30	150	
제주	-	-	-	-	

< 별표 4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전업농)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100점	○ (신청품목경영경력-2)×10점(12년이상 : 100점)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100점 - 전문대학 졸업자·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수자:90점 -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 중 자영농과)졸업자:80점 - 고등학교 졸업자:70점 ○ 농과계 이외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자:80점 - 전문대학졸업자:70점 - 기 타:40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 50점 - 3개월 이상 : 40점 - 1개월 이상 : 30점 - 15일 이상 : 20점 - 7일 이상 : 10점 <p>※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p> <p>※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각 도,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과계학교 부설 영농 훈련기관 - 신청분야 선도농업 경영체 농장
○ 경영규모 (전업농 신청품목 경영 규모)	100점	○ (경영규모 / 전업농 규모)×100점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 업 계 획 기계화 및 시설 수준	150점 100점 100점	○ 재배기술수준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 ○ 대형농기계·시설의 조작, 정비능력 : 보통 10, 우수 20, 매우우수 30 ○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경영여부 : 보통 10, 적합 20, 최적 30 ○ 신청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없음 0, 기능사 20, 기사 40, 기술사 60 < 가산점 > ○ 농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 및 경영성과 분석 실행 : 30점 (최근1년이상 장부기입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경영·정보화 교육 이수:20점 ○ 지난 1년이상 기간동안 경영성과 우수:20점 (장부기입결과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보통 40, 우수 70, 매우 우수 100점 ○ 완전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 ○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 ○ 기계 및 시설이 전혀 미비 : 0점 ※ 위 기준에 따라 적절히 평점
가 산 점		○ 신청분야 후계자출신 50
합 계	700점	

< 별표 5 >

선도농업경영체 지원대상자 평가항목 및 평점방법

항 목	배 점	평 점 방 법	특점
영 농 경 력	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단위로 5점씩 가산 - 20년 이상은 100점 ※ 당해 전문분야의 경력에 한함, 법인은 설립일 기준 경력산정 	
경 영 규 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신청자격기준규모)/신청 자격기준 규모 × 70점 ※ 당해 전문분야의 경영규모에 한함 	
기계화 및 시설수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 ○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 ※ 위 범위에서 적절히 평점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 10점 ○ 대형농기계 및 시설의 조작과 일상적인 정비 가능 : 10점 ○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 10점 ○ 비용절약적인 생산기술 도입 : 10점 ○ 최근 3년간의 경영장부 기록실적 : 30점 ○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 : 30점 (경영장부에 의해 증명가능한 실적에 한함) 	

항 목	배 점	평 점 방 법	특점		
교육 능력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력:고졸 70, 전문대졸·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수 90, 대졸 100점 ○ 기타학력 : 고졸이하 30, 전문대졸 50, 대졸 60 ○ 농장견학자 및 인근농가 교육훈련 실적 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민 교육의 강사경험 등 최근 3년간 1회 시마다 5점(50점 만점) ○ 신청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사 20점, 기사 30점, 기술사 50점 			
사업 및 교육계획	100	항 목	배 점		
			상	중	하
		1. 지역여건·사업간 연계	20	15	10
		2. 자부담 비율	20	15	10
		3.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20	10
4. 5개년 교육계획의 정밀성	30	20	10		
가 점		○ 신청품목 전업농 출신 50			
계	700				

< 별지 제 1호 서식 >

전업농 사업계획서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분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업농 신청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평
자금지원신청액	일반전업농자금: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 기반(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도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앞으로 5년간의 경영계획(전업농 규모로의 발전계획)

4.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 농업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 별지 제2호 서식 >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분야)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자금지원(안)

- 첨부 : 1. 추천순위결정근거
 2. 자금지원신청액 조정사유
 3. 추천 제외자 및 사유

1. 추천순위 결정근거

< (품목명) 전업농 >

추천 순위	성 명	심 사 항 목 별 평 점						비 고	
		영농 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재배기술 경영능력	경영규 모	사업계 획	기계화및 시설수준		평점 합계

※ 비고란에는 대상자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해당사항,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기재

2. 자금지원 신청액 조정사유

< (품목명) 전업농 >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신 청 액	조 정(안)	조 정 사유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추천제외사유

※ 전업농 신청자중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요건 미달(구체적 결격사유), 신청서 허위기재등 추천제외사유를 명시

< 별지 제3호 서식 >

전업농 육성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19 년도 지원대상자)

1. 연령별

(단위 : 명)

전문품목	합 계	29세 이하	30~ 34	35~ 39	40~ 44	45~ 49	50~ 55	56세 이상
전 체								
○ 발작물 -보리류 -콩 류 -감자류 -잡곡류								
○ 채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과수 -사과 - 배 -기타								
○ 화훼								
○ 특작 -비 섯 -약용작물 -인 삼 -기 타								

2. 성별 및 출신(농어민후계자 여부)별

전문품목	합 계			남 자			여 자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전 체									
○ 밭작물 -보리류 -콩 류 -감자류 -잡곡류 ○ 채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과수 -사과 - 배 -기타 ○ 화훼 ○ 특작 -버 섯 -약용작물 -인 삼 -기 타									

3. 학 력 별

전문품목	합 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		대졸	
					농과계		농과계		농과계
전 체									
○ 발작물 -보리류 -콩 류 -감자류 -잡곡류 ○ 채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과수 -사과 - 배 -기타 ○ 화훼 ○ 특작 -버 섯 -약용작물 -인 삼 -기 타									

4. 분기별 지원대상인원

전문품목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 체					
○ 밭작물 -보리류 -콩 류 -감자류 -잡곡류 ○ 채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과수 -사과 - 배 -기타 ○ 화훼 ○ 특작 -버 섯 -약용작물 -인 삼 -기 타					

5. 시·군별 전업농 육성대상자 확정결과

(단위 : 농가)

시·군별	계	기 타					
		소계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

< 별지 제4호 서식 >

전업농 육성대상자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청금액 :
5.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확인

세부 사업	계 획				사업 추진 일정	추진현황		
	사업 규모	투 자 액				사업 규모	투자 액	진 도 (%)
		정부 지원	자부담	계				
예) 농지 구입	평 1,000	천원 20,000			'98. 4월 중순			
하우스 신축	1,000	30,000	20,000	50,000	'98. 4월 하순~ 7월초순			
계		50,000	20,000	70,000				

상기와 같이 계획대로(진도 %수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전업농 육성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농촌지도소장 < 직 인 >

음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전문품목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 원 자 금 회 수 현 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 ※ 1) 전업농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내에 명기
-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전출, 사업포기등으로 기재하고, 취소사유를 ()내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후계자	출신여부	수도작() 복합() 일반농가()	현재경영규모	평
자금지원 신청액	농지매매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임차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교환·분합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기계구입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평)			시 설		농 기 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평				
농 지 임 차	평				
농지교환·분합	평				

3)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농업 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4) 2004년까지의 경영계획(쌀전업농 규모로의 발전 및 경영개선계획)

* 향후 이 계획대로 경영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지 여부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적이 계획에 미달할 경우 사업취소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니,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약

연도별	경영규모(평)	벼재배면적(평)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나. 경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작성요령)

정부는 2004년까지 5~20ha(15,000~60,000평)규모를 경영하면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여 나갈 쌀생산 전문농가를 확보하기 위해 쌀전업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보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앞으로 2004년까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먼저,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논 주위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중 앞으로 2004년까지는 논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논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논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 2) 다음으로 그 논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등),방법을 제시하십시오.
- 3) 아울러,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쌀은 정부수매를 통해 팔 것인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팔 것인지, 다른 경로로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기 위한 방법과 그러면서도 수확량을 늘려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별지 제8호 서식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추천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논경영규모

1) 추천순위 결정 근거

추천 순위	성 명	근 거

2)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 유

< 별지 제9호 서식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연령별 · 경영규모별

(단위 : 명)

구 분	29세 이하	30 ~ 34	34 ~ 39	40 ~ 44	45 ~ 49	50 ~ 55	계
1.0ha미만							
1.0 ~ 2.0							
2.0 ~ 3.0							
3.0 ~ 4.0							
4.0 ~ 5.0							
5.0 ~ 10.0							
10.0이상							
계							

2. 성별 및 출신(농어민후계자 여부)별

합 계			남 자			여 자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3. 학력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		대졸	농과계	
				농과계	농과계		농과계	농과계

4.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명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논경영규모	전화번호	기타특기 사항

< 별지 제10호 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분야 및 품목			현재의 경영규모	평
자금지원신청액		천원	지원요구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기반(논, 밭, 농기계 및 시설의 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2.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용도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3. 앞으로 5년간의 교육수행계획
 ※ 사업장을 농과계학생 실습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신청자는 추천학교와의 약정서 첨부
4. 지원자금을 의한 사업계획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5.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농업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 별지 제11호 서식 >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대상자 사업추진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법인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청금액 :
5.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확인

세부 사업	계 획				사업 추진 일정	추진현황		
	사업 규모	투 자 액				사 업 규 모	투 자 액	진 도 (%)
		정부 지원	자부담	계				

상기와 같이 계획대로(진도 %수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농촌지도소장 < 직 인 >

읍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및 위탁교육수행계획 보고(○○도)

1.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결과 및 위탁교육 실시 계획(총괄)

분야 / 품목	지 정 수		위탁교육수행 실적·계획(연인원)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총 계				
분 야 별				
- 곡 물				
쌀				
기타				
- 축 산				
한우				
젖소				
돼지				
닭				
- 과 수				
사과				
배				
감귤				
기타				
- 채 소				
노지채소				
시설채소				
- 화 껍				
- 특 작				
- 어 업				

2. 선도농업경영체별 현황 및 위탁교육 수행 계획

분야 / 품목	지 정 자	위탁교육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법인명) : ○ 전문품목 경영규모 : ○ 주소 : ○ 전화번호 : ○ 기술·경영기법 등의 특징 (상세히 기록) 	

[별지 제13-1호 서식]

선도농업경영체 교육수행상황보고(현재)

○○도

사업대상자	위탁교육수행 상황		비 고 (교육 미실시, 시설의 타목적 사용 등으로 취소여부 등)
	계 획	실 적	
성명 :			
품목 :			
주소 :			

[별지 제13-2호 서식]

선도농업경영체 투자실적

○○도

사업대상자	투자계획		실 적	
	사업내용	투자액	사업내용	투자액
성명 :				
품목 :				
주소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정기획과 입니다.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중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부모가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 부모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기 지원대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국가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제외

3. 근거법령

- '89. 4. 28,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90~'92	'93~'95	'96	'97	'98	'99 이후
사업량(천명)	596	315	86	117	103	미정
사업비(백만원)	148,096	129,671	44,828	69,422	66,332	미정
- 국고	148,096	43,216	14,943	20,827	19,900	"
- 지방비	-	86,455	29,885	48,595	46,432	"

* '90~'92 전액 국고지원, '93~'96 국고 1/3, 지방비 2/3,
'97이후 국고 30%, 지방비 7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 부모(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일 경우 포함)가 읍·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임가·어가의 자녀로써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 임차농가의 경우 소유규모 1.0ha미만이면 임차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 부모(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일 경우 포함)가 시지역중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임가·어가의 자녀로써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 임차농가의 경우 소유규모 1.0ha미만이면 임차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3) 실업계고등학교의 종류와 범위

실업계고등학교라 함은 농업·임업·공업·상업·수산·해양·실업·종합 고등학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농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임업고등학교 : 임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농업, 임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정계중 2개이상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교 또는 가정계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종합고등학교 : 실업계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된 학교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실업계학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 종합고교의 경우 실업계학생만 지원

4)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표 : 별표 참조

5)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대상자 및 면제자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면제)받고 있는 자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면제)받고 있는 경우

나. '98 사업비 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비 고
103천명	백만원 66,332	19,900	46,432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고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구비 35%)

- 시·도, 시·군·구간 지방비 부담비율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정기획과[(02) 503 - 7261~3]
- 시·도 : 농업정책과(농정과)
- 시·군·구 : 농업정책과(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표」 참조(별표)
- 선정절차
 - 농(어)가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연말(12월말)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1월15일까지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통장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여부 필히 확인
 -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후 지원대상여부를 학부모에게 통지
 -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 재학확인 통보기한(신입생·재학생) : 년초에는 1월 20일까지 기타는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송부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내에 소요액 신청
 - 1·2분기(1월25일), 3분기(6월10일), 4분기(9월10일)
- 시장·군수·구청장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1월27일(1·2분기), 6월15일(3분기), 9월15일(4분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 : 시·군·구 보고자료 취합후 1월31일(1·2분기), 6월20일(3분기), 9월20일(4분기)까지 농림부에 학생수 및 소요예산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교육감 : 각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총사업비중 국고부담금을 시·도에 배정, 시·도에서는 시·도부담금을 합하여 시·군·구에 배정, 시·군·구는 시·군·구 부담금을 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정
- 읍·면·동장은 지원 농(어)가의 거주 확인, 「지원대상농(어)가기준표」에 의한 대상여부 또는 제외대상여부 확인과 학교장이 확인한 학적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학기개시전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 년초에 학자금 지원신청을 실기(失期)하여 누락된 후 년도중에 추가신청할 경우 재학사실을 확인하여 소급지원 가능(단,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소급지원 가능)

○ 학자금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철저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에 학자금지원 설명 등)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4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익년도 3월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 :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산결과(국고) 잔액 반납
 - 일반회계 농림부 각 시·도별 세입정수관구좌로 반납
 - 12 - 59 - 591(○○년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정산반납금)

<행정사항>

○ 업무별 · 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학부모	————— (이장경유)	→12.30			
○ 학적확인	읍·면·동장	→1.1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	→1.20			
- 1/4,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1/4학적확인 근거작성	└—————┘	→1.25	→1.27	→1.30
○ 학자금지원대상 통지	읍·면·동장 → 학부모					
○ 1/4재학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	→6.5			
- 3/4분기 국고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2/4재학확인 근거작성	└—————┘	→6.10	→6.15	→6.20
○ 2/4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	→9.5			
- 4/4분기 국고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3/4재학확인 근거작성	└—————┘	→9.10	→9.15	→9.20
○ 3/4재학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	→12.5			
○ 4/4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	→2월말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재학확인 집계결과	—————	→3.2		
○ 학자금정산 보고	시장·군수 ·구청장			—————	→3.10	
○ 확정 정산	시·도지사				—————	→3.31
○ 보조금예산 통지	장 관				10.15←	—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장 관				12.10←	—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 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 2)
 학자금 납입고지일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별표]

<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표 >

농 가	양 축 가	임 가	어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농가 및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젖소,사슴 : 30마리미만 ○ 돼지,개 : 200마리미만 ○ 산양,면양 : 300마리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 5,000마리미만 ○ 가금 : 10,000마리미만 ○ 양봉 : 150군미만 ○ 기타위에 준하는 양축가 및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소유규모 26.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임가 및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어가 ○ 무동력선 사용 어가 ○ 15M/T이하 동력선 사용 어가 ○ 소규모 양식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가 및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소유규모가 1.0ha미만이면 임차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 양축가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0.7ha, 소 25마리, 돼지 150마리일 경우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 >

- 보건사회부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을 지원(면제)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면제)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면제)받고 있는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급 대상학생 재학조회									
학교명 :									
학생명	학부모 성명	학과	학년반	학교재학 확인(학적변동 및 학과를 기재)					
				학년초	1/4	2/4	3/4	4/4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주 소 : 읍·면·동장 (인)									
학교기재사항	급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명					
				구좌번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 학교 재학확인란(학교에서 확인 기재) 기재요령 ○ 작성일 기준 : 매 분기말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 학과, 날자 기재 - 전입시 : 이전 학교명, 학과, 날자 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 3호 서식]

분기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국비(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 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개발제한 구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계한 금액임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 4호 서식]

(총 공통 - 9)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재배정액 (A)		시도집행액 (B)		집행잔액 (C)		정산액 (D)		정산잔액 (E=B-D)		총잔액 (C+E)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면지역	국 비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지방비												
	소 계												
읍지역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지역 (GB)	국 비												
	지방비												
	소 계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집행잔액은 시·도의 잔액(시·군 미배정액)을 말함
 3. 정산잔액은 시·군에서 집행후 남은 금액임
 4. 총잔액중 국비는 우리부에 반납할 금액임
 5. 정산잔액 및 총잔액 발생사유를 각각 분석하여 별지로 제출(서식별도)
 6.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을 경우 사유 기재(서식별도)

(보고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I.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자영농수교육성, 축산교육시설지원, 첨단기술경영지원 센터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입니다.

1. 목 적

-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업의 개발과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업계학교등을 지원, 전문농업인 양성
- 첨단시설 및 기자재, 기숙사, 장비 등의 지원으로 실험·실습위주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 지역농과대학(특성화대학 중심), 도단위 농업관련연구소,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은 지역 농림업 발전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14개 특성화대학에 특성화분야의 연구,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등 집중 지원
- 자영농수교육성은 농고는 도별로 1개교씩 9개교, 수고는 해역별로 1개교씩 3개교를 자영자 양성 농수고로 지정하여 시설·기자재등 지원
- 축산교육시설 등 지원은 관련 농고 3개교에 첨단자동화·현대화된 농업 교육시설 등 지원
-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은 2개도에 센터조성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 학교 및 자영농림 수산고 등
 -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 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교, 억원)

사업명	구 분	계	'95	'96	'97	'98
농업계 특성화 대학지원	사 업 량	14	-	9	8	14
	국고보조	23,640	-	6,000	8,000	9,640
자연농수교육성	사 업 량	12	12	12	12	12
	국고보조	52,300	18,400	13,800	13,800	6,300
축산교육시설 지원	사 업 량	5	-	-	2	3
	국고보조	6,340	-	-	4,000	2,340
첨단기술경영 지원센터조성	사 업 량	2개도	-	-	-	2
	계	3,940	-	-	-	3,940
	국고보조	1,970	-	-	-	1,970
	지 방 비	1,970	-	-	-	1,970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업계특성화대학 : 서울대농생대, 안성산업대, 강원대 농대, 충북대 농대, 충남대 농대, 전북대 농대, 전남대 농대, 순천대 농대, 경북대 농대, 안동대 자연과학대, 경상대 농대, 진주산업대, 제주대 농대, 강원대 임대
- 자연농수고 : 여주자연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연고, 서귀농고, 대천수고, 완도수고, 포항수고
- 축산등 관련 교육시설 : 원주농고, 홍산농공고, 정읍농공고
-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조성 : 강원도, 경북도

(2) 지원조건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자영농수교육성, 축산등 관련 교육시설지원 : 전액국고보조
-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3) 지원시설의 종류

-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및 장비
- 자동화·현대화된 실습시설 및 기자재, 기숙사시설, 첨단측사시설
-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 산 액(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31	22,220	20,250	20,250	-	1,970	-
○ 농업계 특성화 대학 지원	14	9,640	9,640	9,640	-	-	-
○ 자영농수고 지원	12	6,300	6,300	6,300	-	-	-
○ 축산등 관련 교육시설 지원	3	2,340	2,340	2,340	-	-	-
○ 첨단기술경영 지원센터조성	2	3,940	1,970	1,970	-	1,970	-

*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 예산액 재원은 농특회계 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자영농수교육성, 축산등 관련 교육시설지원
 -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 시·도 : 사업계획 승인
 - 도교육청, 학교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조성
 -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 시·도 : 사업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02-503-7216)
- 시·도 농정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승인

- 각시·도지사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해당 학교로부터 '98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98사업계획을 승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2) 사업추진

- 각시·도지사는 다음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함
 - 사후봉사 및 운영조작에 따른 문제예방을 위해 가능한한 시설물의 공사계약을 일괄 발주
 - 사업의 기성고(공사 감독자의 확인등)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리온실등 첨단시설물의 공사계약시에는 자동화시설의 조작기술지도, 사후봉사 기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서에 명문화 하도록 함
 -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는 고가장비를 구입후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구입에 철저
 - 각종 장비 및 기자재는 학과 또는 연구과제별로 중복 구입치 말고 공통장비·기자재를 우선 구입
 - 과학기술센터시설은 대농민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위주로 하고 회의실, 교육연구실, 행정실 등은 최소규모로 조정 시행
 -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과 실험실습위주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우선 구입
 - 자금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행정사항 >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결과는 승인후 10일이내, 사업진도 및 자금 집행 상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될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종료후 1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 각종 보고서식 : 별지 1, 2, 3, 4호

< 별지 1 >

자체 가 26-12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사업)				
학 교 명	시 설 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 업 비	비 고

주) 이 서식은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자영농수고 지원사업』, 『축산 교육시설등 지원사업』 공통사용 서식임으로 상기()에 해당 사업명을 기록한 후 사용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2 >

자체 가 26-13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사업)							
학교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규모)	사업비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규모)	사업비	
		평, 개	천원		평, 개	천원	
주) 1. 이 서식은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자영농수고 지원사업」, 「축산교육시설등 지원사업」 공통사용 서식임으로 상기()에 해당 사업명을 기록한 후 사용 2.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변경승인 요청의 경우는 도지사의 검토 의견 첨부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3 >

심 사 제 외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4분기)

(○○사업)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사업비	집행액	사업추진 상황	사업진도	완료 예정일
		평, 개	천원	천원			

주) 이 서식은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자영농수고 지원사업』, 『축산 교육시설등 지원사업』,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사업』 공통사용 서식임 으로 상기()에 해당 사업명을 기록한 후 사용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4 >

총 공통 9

사업정산결과 보고						
(○○사업)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 고
		평, 개				잔액 발생 사유 등

주)1. 이 서식은 『농림계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자영농수고 지원사업』, 『축산
교육시설등 지원사업』,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사업』 공통사용 서식임
으로 상기()에 해당 사업명을 기록한 후 사용
2. “비고”란에는 잔액발생 사유 등을 기록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II.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입니다

1. 목 적

-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기술, 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순수 정예 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선진국형 전문대학 설립운영
- 전문실기 중심의 교육과 선진농장 현장실습과 직결
- 기존시설의 적극 활용과 첨단 영농기술 배양
- 졸업후 영농종사를 의무화하고 농업인후계자 및 병역특례자로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

3. 근거법령 : 한국농업전문학교설치령(대통령령 14742호)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2004
사 업 량		-	-	-	-	
사 업 비	계	백만원 12,720	9,937	2,342	2,733	
	국고	12,720	9,937	2,342	2,733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설치학과 및 정원

- 학 과 : 6개과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
- 정 원 : 720명 (40명×6개과×3년)
- 위 치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1-1

(2) '98학년도 입학생 선발

- 선발시기 : '97. 12 ~ '98. 1월
- 선발대상
 - 고졸이상의 자로서 출신학교장, 농촌지도소장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방법
 - 서류심사, 기초소양검사 및 면접 등 종합실시

(3) 학사관리 및 졸업생 특전

- 학사관리
 - 입학금, 수업료 면제 및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 자가 및 지정된 농장에서 현장 실기실습, 해외선진농장 체험연수 등
- 졸업생 특전 및 의무사항
 -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
 -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의거 병역미필자는 보충역 편입
 - 졸업생전원에게 영농정착금 지원
 - 졸업후 수업년한의 2배 동안 영농종사 의무제 실시 등

(4) 교육시설

- 부 지 : 23,000평
- 시설규모 : 7개동 5,729평
 - 본관 및 교육관 2,179, 기숙사 2,296, 후생관 등 1,254평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읍자		
계	1개교	백만원 2,733	2,733	2,733	-	-	-
○시 설 비		437	437	437			
○장 비 비		280	280	280	-	-	-
○교육운영비		2,016	2,016	2,016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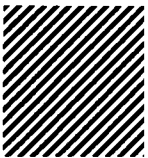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전문학교 (전화 : 0331-229-5202)
- 시 도 : 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여 백

IV. 소 득 원 개 발



여 백

73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 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 개발
-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관광농원은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이 되도록 하며 모든 시설물은 자연지형 및 경제적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
- 관광농원은 다수농업인 참여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등 생산자단체, 5인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의 공동출자개발 권장 및 우선지원
- 휴양단지 는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수립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등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등 농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민박마을은 숙박위주의 조성보다 지역명소 중심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자원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예산안	'99	'99~2004
사업량	303	103	91	75		
사업비	계	87,658	34,350	36,500	31,150	
	국고용자	63,908	24,190	26,000	21,800	
	자부담	23,750	10,160	10,500	9,350	

※ 추진목표

- 관광농원('84~2004) : 읍·면당 1개소씩 1,435개소 조성(지원 700개소)
- 휴양단지('89~2004) : 군당 1개소씩 136개소 조성 (지원 68개소)
- 민박마을('91~2004) : 군당 3개마을을 기준하여 408개마을 조성지원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나)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3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함.
 -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법인설립후 1년이상 경과하고, 출자규모가 3억원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작목반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농·축·임협)도 농업인과 공동참여 가능
- 〈참여방법〉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농원 조성·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기준
 - 신규지구 : 농림부의 '98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지구지정을 한 신규관광농원
 - 기지정지구 : 기지정된 관광농원중 각도별 관광농원사업 예산지원액 범위내에서 농업을 위한 농장이 규정된 면적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단, 관광농원개발계획기간(2·3차년도)에 해당되는 관광농원에 우선 지원
- 재원 : 농특회계
- 용자지원한도액 : 농원당 450백만원 이내(단, 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호이상 농가가 공동참여하고 농업박물관, 농촌생활자료전시관, 자연학습관찰장 등 규모있는 농업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신규지구 : 농원당 200백만원이내(1차년도)
 - 기지정지구 : 농원당 250백만원이내(1차년도이후)

- 지원대상사업 : 지정된 관광농원내에의 과수, 가축 등 다년생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설치 및 기반조성사업
- 용자대상 :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 공동참여자
- 용자조건 : 년8%, 5년거치 5년균분상환(용자비율 : 총사업비 70%이내)
 - '97년도 지원자금부터 년 8% 적용('96이전 용자분은 기존의 년 5% 계속적용)

(라) 구비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 관광농원의 관리·운영계획서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 명세서
-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 관광농원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 추천서 및 각서

(마) 관광농원의 유형

- 기능에 관한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초지,특수작물재배지등), 농특산물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효도농원의 사업대상자를 '98년부터 농업인까지 확대

- 시장·군수,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거나 농업인이 자기소유 농지를 개발하여 은퇴·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원내 시설들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일거리 제공
- 지역주민도 구매·판매등 운영에 공동참여토록 유도

○운영형태에 의한 유형

- 농산물채취형 :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함 (과일따기, 감자캐기, 밭줍기 등)
- 생산수단대여형 : 포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 등 포함), 농기구 등의 생산수단을 제공하여 농산물 생산의 보람을 느끼게 함.
- 장소제공형 : 농장, 과수원, 화원 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함.

(바) 세부사업내용

○개발내용

- 사업지구내에서는 농원으로써 특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을 조성
- 부대·편의시설은 농원규모, 예상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농업용부대시설을 우선설치한 후 농원운영 및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물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여관, 민박, 야영장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작목입식대상에서 제외
 2.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을 원칙으로 하고, 여관·여인숙은 숙박시설에서 제외
 3.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의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농원 및 시설규모

- 농원규모 : 50,000m²미만
- 시설규모
 - 농장면적(기본시설) : 작목입식면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조성 단, 최소 작목입식면적은 4,000m²이상 이어야 함
 - 시설물면적 : 농장을 제외한 시설(도로, 조경면적 포함)면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60%이내 조성
 - 농특산물판매시설면적(기본시설) : 30m²이상

※관광농원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등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6년이후 신규지정 관광농원의 숙박·식당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숙박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10%이내
 - 식당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5%이내
- (준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등 관계법령의 기준 적용)

(2)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국고음자	자 부 담
관광농원	40	23,650	16,550	7,100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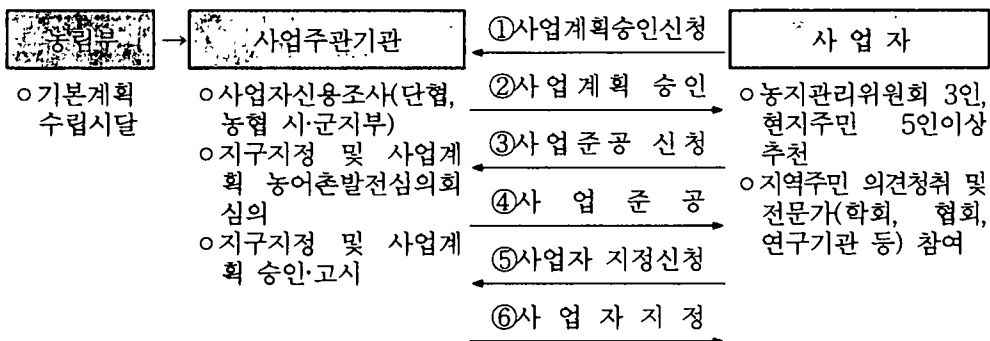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농림수산)국 농업정책(유통)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3)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생산자단체(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사업추진체계>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70조, 제94조

(4)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 사업추진은 원칙적으로 지구지정년도부터 익년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서면 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준공검사 신청(별지 제9-1호 서식)
- 사업준공이 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신청(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준공검사와 사업자 지정 동시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사업자 지정을 한 경우 사업자지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나) 사업계획변경

- 지구지정면적 변경은 50,000㎡(변경후 지구지정 총면적)까지 가능
 -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후 가능
- 변경후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농장조성여부 확인후 사업계획변경 타당성 검토(불합리한 투자억제를 위해 경영상태가 양호한지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농장면적 확대 및 내실화 위주로 유도하고, 숙박·요식·위락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 승인하고, 숙박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숙박·식당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여관·여인숙의 확대·신설 금지)

- 관광농원사업자는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설물 등을 설치 단, 작목입식변경중 작목종류 일부 변경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신고후 실시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단, 도지사는 사업 계획 변경내용중 지구지정면적 변경 및 사업자 변경사항, 주요시설면적 (작목입식, 숙박, 식당,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지정면적 변경등 중요변경사항을 고시

(다) 사업비 지원

①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② 자금의 운용관리

-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한 경우에 지원

③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④ 용자요령

- 용자금 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또는 담보대출 (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시설물이 수반되는 경우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라) 기타사항

① 사업효과

- 직접효과
 - 관광농원사업 참여농가의 농외소득증대
- 간접효과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용이
 - 관광농원에 현지 농업인들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 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② 평 가

- 평가방법
 - 도지사는 년1회 전지구에 대해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 추진실적 보고서 함께 보고
- 평가결과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

- 도지사는 도단위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해결방안을 건의

③ 관광농원자부담개발사업

- 참여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거주 농업인중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소유농지 등을 활용, 자체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 지원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을 준용

<행정사항>

(1) 사업자 준수사항

- 관광농원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관광농원사업장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관광농원 시설을 허위로 선전해서는 안됨.
-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나 신고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입장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5호 서식)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
 -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자가 노령화,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관광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양수일 현재 현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 관광농원사업의 타인경영

-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자가 질병·징집·복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관광농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광농원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 관광농원사업자는 지도·감독권자의 시설 및 운영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2) 사후관리

(가) 관리주체 : 시장·군수

(나)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관광농원내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을 계획대로 조성·운영하는지 여부 확인

(다) 점검결과 반영

○ 사업시행단계(조성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운영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융자금은 농협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관광농원사업을 목적으로 득한 공중 위생법규정에 의한 숙박업등 관련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취소여부 등을 검토하여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라) 기타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3) 보 고

- 시장·군수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5-1, 15-2, 15-4, 15-6, 15-7)를 다음해 1.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5-1, 15-2, 15-4, 15-6, 15-7)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관광농원사업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결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까지 보고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 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 체육·휴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케하여 농촌 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나)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업인단체(농·축·임협)
 - 해당지역 농업인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여 부지 또는 시설물을 직접경영하거나 현지주민에게 우선 분양(임대포함)하는 조건으로 개발에 참여
 - 현지주민은 농업시설, 부대·편의시설 설치·운영, 특산물판매, 토지를 이용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능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재원 : 농특회계
- 지원대상사업 : 휴양단지내의 기반조성시설, 편의시설, 농업생산과 부대 시설 설치 등
- 융자지원한도액 : 단지당 25억원이내
- 융자조건 : 년5%,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융자비율 : 총사업비 100%까지)
 - '97년도 지원자금부터 년 5% 적용('96이전 융자분은 기존의 년 3%적용)

(라) 구비서류

○ 농촌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첨부서류〉
- 휴양단지시설의 조성계획서
 -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 휴양단지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휴양단지 분양·운영계획
 - 농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마) 개발유형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방객의 건강증진, 휴양, 자연 학습 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자연학습형, 청소년 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
- 농촌의 쾌적한 농원공간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농업관련시설이 포함되도록 특색있게 설치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개발

(바) 개발내용

- 개발규모 : 30,000m²이상 100,000m²미만
- 기반조성시설 설치
 -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정리
 - 내방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용수개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
- 농업생산 및 부대시설
 - 지역특산품 생산시설과 생산물 수집·저장을 위한 집하장·저장고 등

○ 편의시설

- 지역농특산물판매를 위한 농특산물판매장등 판매시설
- 농원여관, 호텔등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편의시설
- 놀이시설,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등 체육·휴양시설
- 농업전시관, 농기구전시관, 농업과학관, 영농체험학습관, 교양시설 등

※ 기본시설 : 농립어업전시관(60m²이상), 학습관(60m²이상), 농특산물 판매시설(30m²이상)

(2)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국고용자	자 부 담
휴양단지	-	-	-	-

※ '98년도는 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지원이 없음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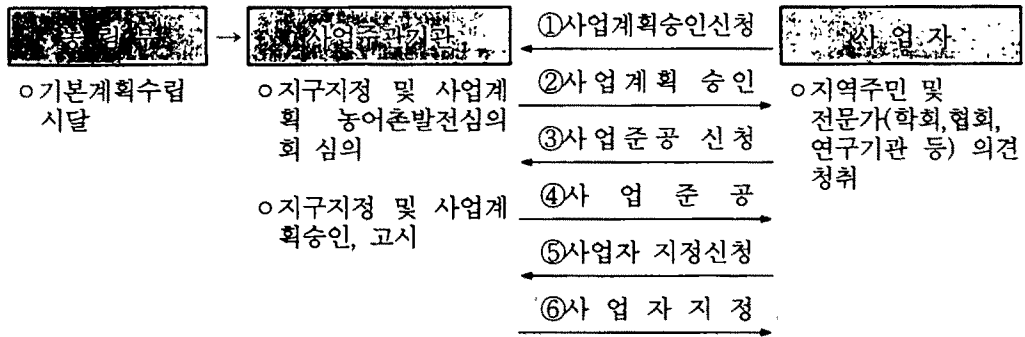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농림수산)국 농업정책(유통)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3)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업인단체(농·축·임협)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사업추진체계>



(4) 사업시행

(가)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를 우선하여 가능한 한 전액보상으로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나)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시행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감독비는 실비정산으로 함.

(다) 준공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공사완료후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준공보고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분 양

- 분양방법
 - 휴양단지내의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분양(임대포함)
- 분양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음.
 - 지방비등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보조금은 공제함.

(마) 사업효과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용이
- 휴양단지내 현지 농업인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

(바) 사업비 지원

- ①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 ② 자금의 운용관리
 - 휴양단지개발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③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년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 ④ 용자요령
 - 대출방법 : 신용대출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기반조성시설은 시장·군수가 책임관리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분양된 각종 시설물은 분양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휴양단지의 지정 및 지구지정취소 등은 농어촌정비법 관련조항을 참조

(2) 보 고

- 도지사는 '98휴양단지개발사업 예산지원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를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신규 휴양단지의 경우 기본계획서 포함 보고)
- 도지사는 12월말 현재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15-3호, 제15-4호 및 제15-6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휴양단지사업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결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까지 보고

다. 민박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 경

- 농촌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이나 관광지 등이 있어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나)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중 마을당 5호이상 농가로서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주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재원 : 농특회계
 - 용자지원한도액 : 마을당 3억원이내
 - 농가당 용자한도 : 15백만원이내
- 용자조건 : 년 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의 70%이내

(라) 구비서류

- 농가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 <첨부서류> · 민박마을조성계획서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2)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국고용자	자 부 담
민박마을	35	7,500	5,250	2,250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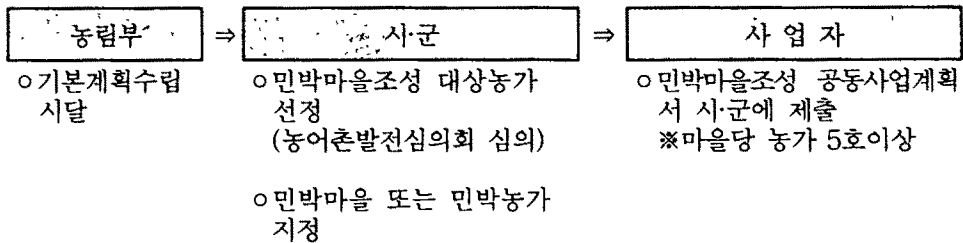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농림수산)국 농업정책(유통)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3)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 사업자 : 농업인(마을당 농가 5호이상, 객실수는 농가당 5실이하 원칙)
 - 농가민박사업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사업추진체계>



(4)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 사업추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

(나) 사업비 지원

①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② 자금의 운용관리

- 민박마을조성사업 승인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한 경우에 지원

③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 1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④ 용자요령

- 용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 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행정사항>

(1)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장표지부착, 숙박이용료신고, 양도·양수신고, 타인경영신고, 휴·폐업신고, 시설 및 운영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관광농원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용

(2)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 및 방법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1회 이상, 시·군 반기 1회이상

- 점검내용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여부 및 적법 운영
여부 확인

○ 점검결과 반영

- 관광농원사업의 점검결과 반영을 준용

(3) 보 고

○ 도지사는 '98민박마을조성사업 예산지원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민박
마을조성사업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

○ 도지사는 민박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12월말현재)을 별지 제15-5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민박마을조성사업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결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까지 보고

라. 주말농원개발사업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농업인

(2)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 농원규모 : 50,000m²미만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

(3)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이 정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시설은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기구보관창고, 관리사무실등 공공편의 및 사업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 본래취지에 적합할 것

6. '99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자로서 3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함.
 -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농·축·임업)도 농업인과 공동참여 가능

(3)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단,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4) 구비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6-1호서식)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 지구지정 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관광농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구지정예정지에 지구지정 예정면적의 40%이상에 농장(과수원,목장, 특수작목재배지등)이 기초성되어 있는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대표자 또는 참여농가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지구를 지정
- 기지청지구의 경우 경영성적이 우수하고 사업의욕이 있는 지구 우선 선정
- 동일지역내에 수개의 관광농원이 난립되지 않도록 함

(나) 우선순위

- 농협 등 생산자단체,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 공동출자하여 개발하는 지역 우선
- 농가참여호수 및 취업인수가 많은 지구 우선
- 작목입식면적비율이 높은 지구 우선
- 지역농특산물의 (예상)판매액이 많은 지구 우선

- (예상)내방객의 수가 많은 지구 우선
-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될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확정후 사업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관광농원과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는 가장 낮은 순위 부여

(다) 선정절차

-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과 사업계획내용 입지여건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용자취급 기관(단위농협 또는 농협군지부)에 송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전 신용조사 우선실시 가능
 - 용자취급기관은 신용조사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에 의거 반드시 인·허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검토시 전문가 및 관련단체(관광농업학회, 관광농원협회 등)를 참여토록 함.
 - 인·허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개별 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류를 사업대표자로 하여금 제출받아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함.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에 교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고시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생산자단체(농·축·임협)

(3)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4) 구비서류

○ 휴양단지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6-2호 서식)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지정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논의 타목적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우선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농촌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써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 기존마을의 자연경관, 문화환경, 특산품 등을 조화있게 연계하는 휴양단지 우선지원
- 지역특산품(회귀작물, 토산품, 민예품 등)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구로 시장·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기타 타법령(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 문제가 없는 지역 등

○ 단지당 지정규모

- 단지당 지정규모는 30,000㎡이상 100,000㎡미만
- 휴양단지 규모에는 기반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면적을 모두 포함

(나) 선정절차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

- 휴양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의 농림부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휴양단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는 휴양단지 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내용이 농촌소득증대, 자연경관의 보전등 농어촌휴양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 통보
- 시장·군수는 지구를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고시

다. 민박마을조성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중 민박을 목적으로 농가주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가로서 마을당 5호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3)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4) 구비서류

- 농가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민박마을조성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를 우선선정
-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신축자금은 제외

(나) 대상지역 및 시설규모

-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법등 관련개별법상 입지에 제한이 없는 농촌지역
- 객실수는 원칙적으로 농가당 5실이하로 하고, 면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기타 시설기준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상 여인숙업 시설기준 준용

(다) 선정절차

- 읍·면장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가로부터 민박사업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조성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다만, 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 조합장이 농가로부터 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조성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시·군	매년1.1~2.21	별지제1,10,12호서식 별지제2-1,2-2,11-1, 11-2,13,14호서식
3.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시·군→도 도→농림부	3.10 3.20	별지제2-1,2-2호서식 별지제11-1,11-2호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4. 자부담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보고	도→농림부	6.30	별지제2-1,11-1호 서식준용
5.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추진 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제15-1,15-2, 15-3,15-4,15-5, 15-6,15-7호서식

○ 관광농원개발추진시 사업자, 시·군 및 농협에서 참고할 서식

구 분	작 성 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3.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추천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4호 서식
5. 각 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5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단위농협 (농협군지부)	시·군	별지 제6호 서식
7.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농발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8.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8호 서식
9.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9-1호 서식
10.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제50호서식
11.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구(농원)명			
소 재 지			
조 성 면 적		m'(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기타)	
사 업 비		백만원(음자 지방비 자부담 기타)	
<p>농어촌정비법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대표자) (서명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p> <p>2.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p> <p>3.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p> <p>4.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p> <p>5.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p> <p>6. 농지관리위원 3인(위원장 포함) 및 현지주민 5인이상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p> <p>7. 각서 (별지 제5호 서식)</p> <p>※ 지원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p>			

[별지 제2-1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m²,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ha)	사업자 (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98계획				'98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00 관 광 농 원	00도 00군 00면 00리				합계																				
					작 목 입 식	합계																			
						유실수 가축(축사)	마리 .m'																		
						특용작물																			
					농 업 부 대 시 설	농업창고																			
						직판장																			
편 의 시 설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휴게소 주차장																								
기 반 시 설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기지정지구>

(단위 : m',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97까지실적				'98계획				'98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00 관 광 농 원	00 도 00 군 00 면 00 리	ha			합계																										
					작 목 입 식	합계																									
						유실수																									
						기축(축사) 특용작물	마리 'm'																								
					농 업 부 대 시 설	농업창고																									
						직판장																									
편 의 시 설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휴게소 주차장																														
기 반 시 설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1. 농원관리 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낙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낙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 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의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추천서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97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97관광농원개발사업 참여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가. 관광농원개발조성예정지 :

나. 규 모 : m²(ha)

※농업여건조성여부 : 1) 지구지정예정지 ○○작목 ○○평 기초성, ○○가축 ○○두 사육중

2) 지구지정예정지의 연접지역 ○○작목 ○○평 기초성, ○○가축 ○○두 사육중

다. 주요사업내용

라. 사업참여자(대표자)

○성 명 : (남·여)

○주민등록번호 :

○소유경지면적 :

○주 소(현지거주기간) : (년 개월)

○참 여 농 가 :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와관계	참여 형태	참여 내용	소유경지면적				
							전 평	답	과원	기타	계

※ 소유경지면적란중 지구내 경지면적이 있을시는 ()안에 별도면적을 표시

○첨부 : 대표자 및 참여농가 주민등록등본

추천인(농지관리위원장) (인)

(농지관리위원) (인)

" (인)

(현지주민5인이상)주소·성명 (인)

" (인)

" (인)

" (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각 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규 모 : m²(ha)
- 사업참여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 설치계획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촉진과 도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원받은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입식작목의 미경작등으로 인한 부실지구로 판명되어 지구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융자금 전액 일시상환은 물론, 관광농원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소, 전용농지 원상복구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99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사 업 참 여 자	주소	성명	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19

○○시장·군수

인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서

- 위 치 :
- 지 구 (농 원) 명 :
- 규 모 : m'(ha)
- 사 업 기 간 :
- 사 업 비 :
- 사업자(대표자)성명 :
- 주민 등록 번호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 지구지정후 용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 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시장·군수

인

[별지 제9-1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지정번호)		위 치		TEL	
대 표 자	한글		규 모	평(m ²)	
	한문				
사업기간	: .부터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지구내에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 준공검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고인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시장·군수 귀하</p>					

[별지 제9-2호 서식]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 과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축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10평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10평

[별지 제11-1호 서식]

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m², 백만원)

단지명	소재지	지구정적 (ha)	사업자 (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98계획				'98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00 휴양 단지	00도 00군 00면 00리				합계																				
					기 반 시 설	도 로																			
						하수정화 시설 전기·통신 시설																			
					편 의 시 설	농업전시관																			
						직판장 농산물 집하장																			
기 반 시 설	상수도 · · ·	식																							

※ 비고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자부담개발여부등)

[별지 제11-2호 서식]

<기지정지구>

(단위 : m²,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97까지실적				'98계획				'98분기별 음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사업내용명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4	2/4
00 관광농원	00 도 00 군 00 면 00 리	ha			합계																					
					작 목 입 식	합계																				
						유실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마리 .m'																			
					농 업 부 대 시 설	농업창고																				
						직판장																				
편 의 시 설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휴게소 주차장 . .																									
기 반 시 설	상수도	식																								
	.																									

※ 비고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농가민박사업신청서

가. 신청인 주소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가옥소재지

마.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민박가능방수	사업내용	소요자금			산출근거
		계	용자	자부담	
○실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보수				
	계				

바. 경지면적 및 소득효과

경지면적 (㎡)					소득효과추정(년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천원	천원	
						()	

※농외소득란의 ()는 민박으로 인한 소득액을 표시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_____ (인)

[별지 제13호 서식]

민박마을조성계획서

민박마을소재지				참여농가수		호		
참여농가 주소·성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사업규모	민박방수	실	수용인원	명	사업금액	천원	응자신청	천원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19

○○읍·면장 _____ (인)

붙임 :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1부.

시장(군수) _____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단위 : 천원)

마을명	소재지 주소 (전화 번호)	참여 농가 명	민박마을		수용 가능 인원	년 간 정 용 수	세 부 사 내 용	자금조달계획							인 관 자 원	
			실	평				사업비			분기별융자금소요					
								계	융 자	자 부 담	계	1/4	2/4	3/4		4/4
					명	명										
계	호															

- ※ 1. 민박규모는 농가별로 민박 제공가능한 방수와 총평수, 수용가능인원은 1회 수용
가능인원기재
- 2. 세부사업내용은 개보수(방수리, 화장실, 샤워장등), 증·개축으로 구분 기재
- 3. 융자신청액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실적

1. 관광농원개발사업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종사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연간 이용자수	명	기능에의한 유형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운영현황
			계획	실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양어장	주/평 두/평 평평			
농업부대시설	창고 집하장 저장판				
편의시설	숙박 - 농원여관 - 민방로당 - 식휴게소 낙산 운동시설 화장실	방수/평/동 평/동 평평			
용자금현황 (백만원)					
용자		상환		용자금상환잔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농원여관, 여인숙, 여관, 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건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해서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제15-2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실태

〈농원수〉

(단위 : 설치농원수)

시도	관광농원수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농산물판매장	교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농부시설	업대시설	정화시설(오수처리)
		숙박시설농원수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등	음점시설농원수	식점	일음점	반식점							
(예시) 00도	20	15	1	10	5	1	5	10	10	-	20	19	10	20	20	20	10	
				(1 ¹⁾)				(9 ²⁾)										

※ ¹⁾ : 건평이 100평이상인 여관을 설치한 농원수,

²⁾ :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설치한 농원수

〈농원시설규모〉

시·군	농원명	지구지정면적(A)	작목입식						숙박시설(건평)						음식점시설			농산물전시판매장(건평)	교양시설(개소)	운동시설(개소)	편의시설(개소)	농부대시설(개소)	정화시설(개소)			
			계(B)	B/A(%)	작물,임산물	양어장	사육장초지등	하우스분재원	...	계(C)	C/B(%)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등	계(D)							D/B(%)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예시) 00	00	10,000	5,000	50	4000	500	200	300	100	2	1동/100	10실					50	1	1동/50	(50인) ²⁾	30	2	3	3	2	1

※ ¹⁾ : 토속음식판매여부(○, ×), ²⁾ : 수용가능인원

[별지 제15-2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실태는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보고

[별지 제15-3호 서식]

3. 휴양단지개발사업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단 지 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재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사업내용						운영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추진실적		분양실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기반시설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상비및 용역비						
용자금현황						
지방비보조		용 자		상 환		용자금 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
 2. 작성자는 시·군담당자
 3.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단위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동일
 5. 「추진현황」은 기반조성진도(%), 분양율(%), 준공·일부준공여부, 사업중단여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운영현황」은 분양후 운영여부, 운영자(업체)수 등을 기재
 7.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별지 제15-4호 서식]

4.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소득효과(관광농원, 휴양단지)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단지명(농원명)	지구지정면적	지정년도	사업시행자(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 (B)	순소득 (A-B)
									계	음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00도																			
계																			

※ I. 관광농원개발사업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준공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II. 휴양단지개발사업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개장포함)된 휴양단지와 미개장된 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5-5호 서식]

5. 민박마을조성사업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마을명	지정연도	대표자	참여호수	방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 (B)	순소득 (A-B)
								계	용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민박	기타		
00 도																		
계																		

[별지 제15-6호 서식]

6. 지정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단지명 (농원명)	지정년도	사업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 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 고
						계	응 자	자 부 담	기 타			
00도												
계												

※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15-7호 서식]

7. 관광농원개발사업 지도·점검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농 원 명	지정 년도	지적 일자	지 적 사 항	조치결과(시정내역)		비 고
						완 료	미 완 료	
00도								

※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원별로 작성보고, 미완료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추진일정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천원)

시·군	지구명	구분	총사업비			'96 까 지			'97예산액			'97검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응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기 부 담 타		

※ 구분란에는 계속, 신규기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입주업체 및 신규지정 활성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각종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2004년까지 400개소(23백만평) 조성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95	'96	'97	'98 (예산안)
사업량(개소)		33	8	5	4
사 업 비	계	301,198	43,007	33,916	34,715
	국 비 보조	66,694	12,990	7,557	7,000
	국 비 용자	77,502	7,050	3,853	3,000
	지방비보조	10,990	1,514	1,507	977
	지방비용자	146,012	21,453	20,999	23,738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 (2) 지원대상 : 공영개발 농공단지
- (3)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 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6)	-
충 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8)	태안군, 청양군(2)
전 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 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여천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 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울산시, 함안군, 양산시(7)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	북제주군(1)	남제주군(1)
합 계	25 (18시, 7군)	48 (22시, 26군)	48 (2시, 46군)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2000년까지는 일반농어촌중 충주시(중원군),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옥구군), 익산시(익산군), 광양시(광양군), 포항시(영일군), 구미시(선산군), 창원·마산시(창원군)은 추가지원농어촌으로, 추가지원농어촌중 춘천시(춘천군), 삼척시, 보령시, 남원시, 김제시, 안동시(안동군), 상주시, 영주시, 진주시(진양군)은 우선지원농어촌으로 봄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4)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광역시와 인접된 읍·면
-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실수요자 부담으로 조성하는 경우 330천㎡이내에서 추가지정 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65~330천㎡이내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제한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10%초과인 경우
- 단, 통합지침 제5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지정 가능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98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지방비 용 자
			소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계	9	34,715	10,000	7,000	3,000	977	23,738
계 속	5	27,502	6,176	4,610	1,566	485	20,841
신 규	4	7,213	3,824	2,390	1,434	492	2,89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 통상산업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입주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립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참고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립 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0-2664, 5)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02-500-2450~2)
- 건설교통부 토 지 국 입지계획과(02-500-4105~6)
- 환 경 부 자연보전국 평가제도과(02-500-42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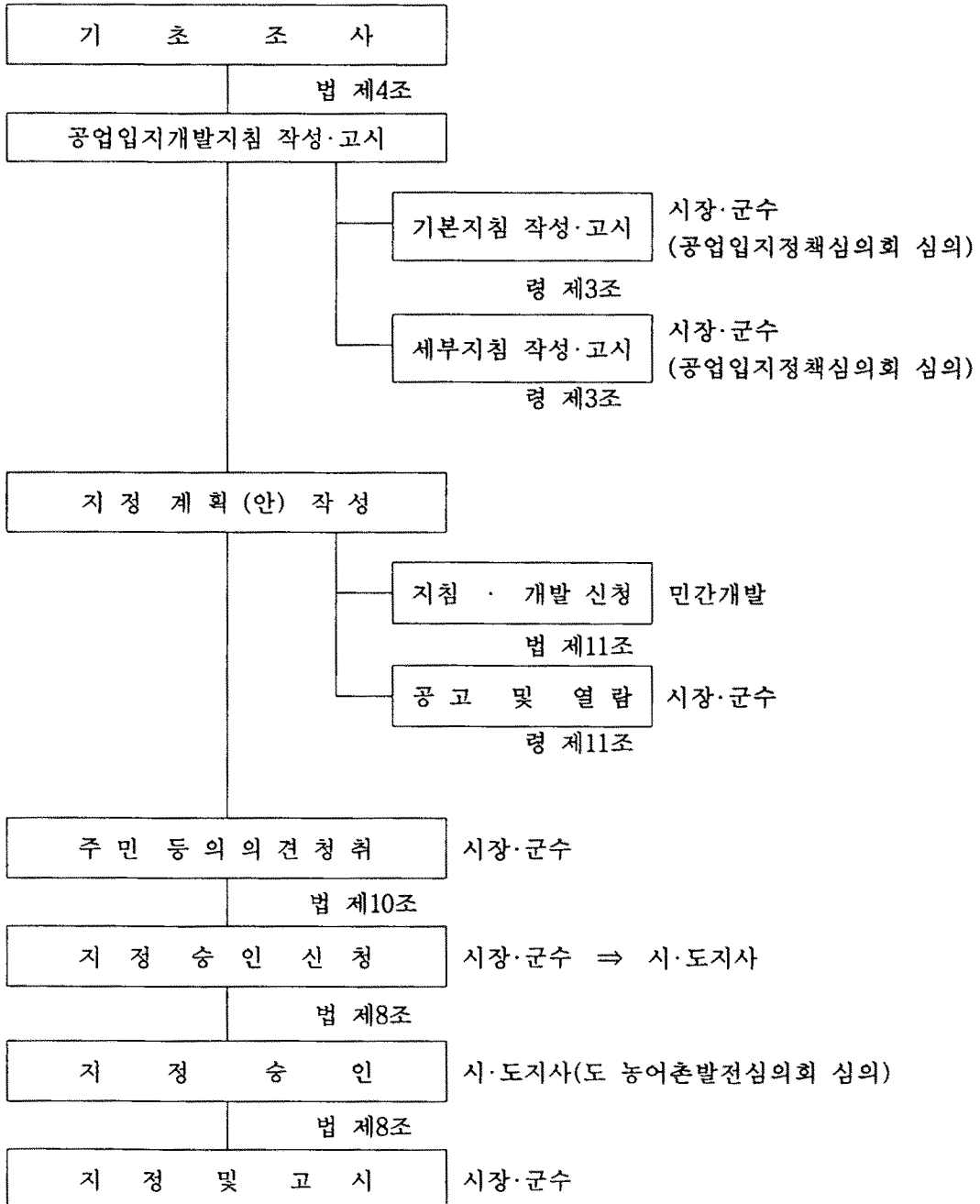
○ 시 · 도 : 지역경제국 공업(상공, 중소기업지원)과

○ 시 · 군 : 지역경제(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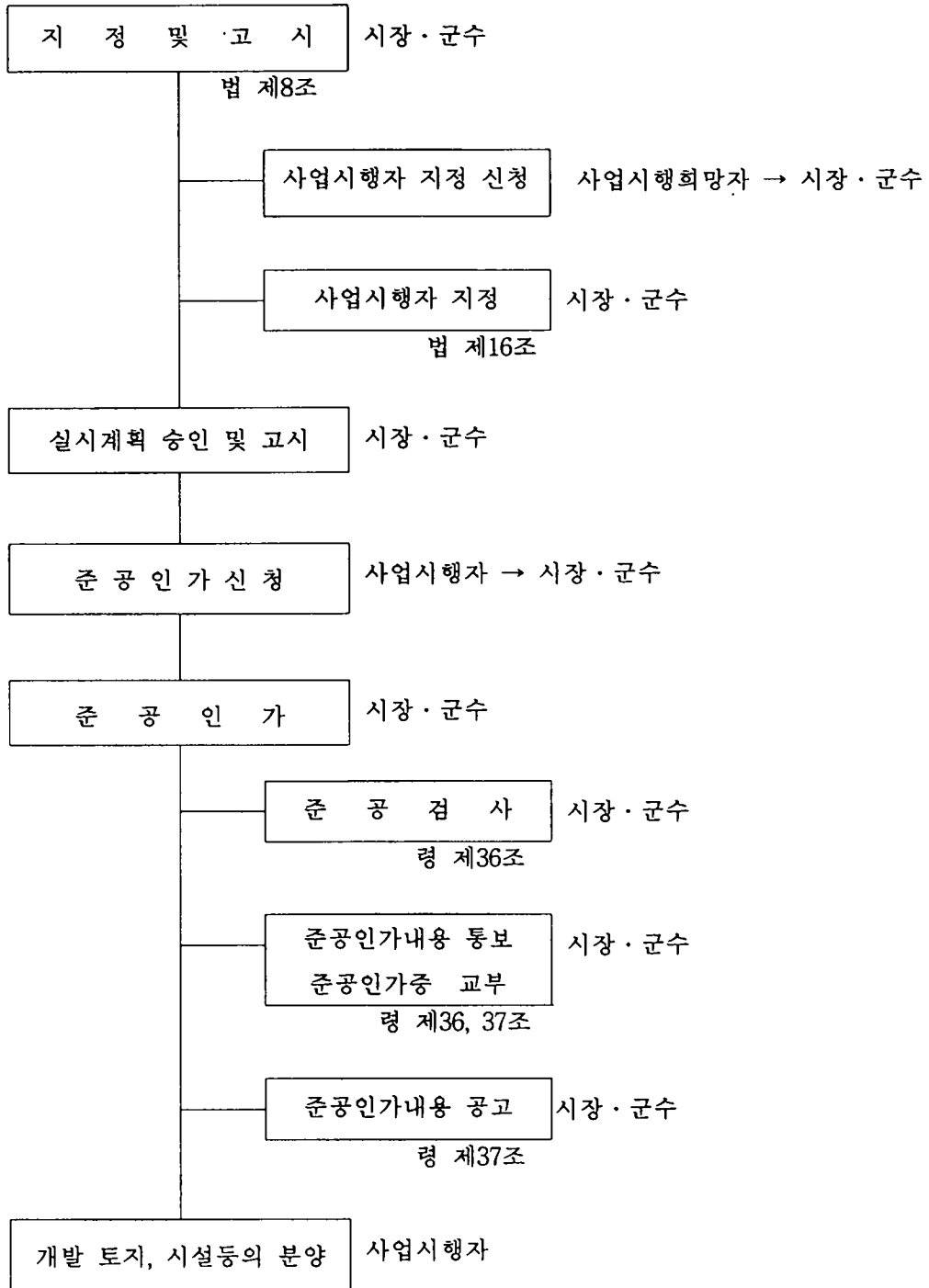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



<개발절차>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광역시와 인접한 읍·면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단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8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공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공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이 경우 동일생활권은 다른 공업단지와의 거리(도로기준10km이내), 관할행정구역,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2)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어촌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통합지침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시행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이를 담당. 다만, 조성비 일체를 입주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 공동이용건축물의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건축직공무원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일반농공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국 비 보 조	15(-)	30(15)	45(15)
국 비 용 자	10(-)	20(10)	20(10)
지방비 보조	5(-)	5(5)	5(5)
합 계	30(-)	55(30)	70(30)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체)로 충당
- 2) 대기업은 ()와 같이 지원
- 3) 예산지원 : 지원금(보조,용자)은 사업규모와 진도에 따라 2~3년간 분할지원
- 4) 용자조건 : 년리 5%,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광산촌농공단지 및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합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방비보조
85	50	30	5

- ※1) 광산촌농공단지 국비보조는 통상산업부에서 지원
- 2)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는 부존자원 사용업체가 2/3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
- 3) 잔사업비 및 국비용자금 상환조건은 일반농공단지와 같음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지원(통상산업부)>

구 분	금 융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7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까지)	년 6.5%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3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6.5%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계	10억원이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환경부)>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 가 지 원 농 어 촌			우 선 지 원 농 어 촌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100	30	70	100	50	50	100	70	30

- ※ 1)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2) 용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등으로 충당
- 3) 용자조건은 연 5.5%로써 3년거치 7년균분상환임.('97. 1)

(2) 자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근거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4개부처공동고시)
 - 농공단지 지정승일로부터 10일 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기말10일전까지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별지3호서식)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오.폐수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별지4호서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농어촌진흥공사는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99년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자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 가능인력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의 고용 및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서류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 공 단지명	지 정 승인일	실 시 계 획 승인일	부 지 조 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 공 예정액	보 조	용 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 정 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별지 2호서식]

총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합계				실집행액						
농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이월액					잔액 (불용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심사제외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기간	착수년도	완공년도	'98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보조	자담
					소계	보조	음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고창○○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순창○○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부안○○ (시규)	관계기관협의(100%) 농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계	보조	음자	합계	보조	음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 구분	지정면 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맞기한	비 고
	착공일	준공일					

75	한계농지정비(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1. 목 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여건과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정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
- 개발혜택이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98(예산안)
사 업 량	12	-	3	4	5
사업비(용자)	24,625		939	11,686	12,00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96부터 시행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및 그중앙회
- 지원단가 : 지구당 40억원 수준 읍자(농지관리기금)
- 읍자조건 : 연리 3.0%, 2년거치 2년균분상환
- 정비유형
 - 농림수산업적 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

나. '98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고	읍자		
계	계속5지구 신규5지구	12,000	12,000	-	12,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4-9404, 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산업경제국 농지개발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및 중앙회

라. 사업추진절차

정비지구 지정고시		
○ 기본 방침 수립 :	농림부장관 -----	법 제76조
○ 예정지 조사 :	국가, 지자체, 농진공 -----	법 제78조
○ 지구지정승인요청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 지구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법 제79조 제3항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사업계획수립		
○ 정비 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 -----	법 제77조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승인권자 ----- -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법 제82조



사업시행 및 분양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준공검사 :	승인권자 -----	법 제94조
○ 토지 및 시설분양 :	농림어업인 및 관련단체, 실수요자에게 분양 -----	법 제83조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계농지의 기준>

- 농지개량조합구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이하로 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지나친 소규모 지정은 억제
 -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 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제곱미터로 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개 시·군당 연면적을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함

<지구지정시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
- 지역주민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지매수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 발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개발계획과의 연계성
-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등은 제외하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 지구지정후 사업착수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역주민 개발의욕 저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구지정후 차년도까지 개발착수가 가능한 지구들 우선 지정

나. 한계농지정비 지구지정 및 고시

(1) 도지사 직권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2)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가)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자가 농어촌진흥공사사장 또는 농·축·임협 및 그 중앙회인 경우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경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견서를 첨부
-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25,000)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예정지조사 보고서
 - 정비사업의 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부담(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 조서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또는 대상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 관련법상 제약요건 검토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다목적이용종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첨부. 이 경우 예정지조사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라. 지구지정에 필요한 조사 등의 위탁

- 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외의 한계농지 정비사업 시행자는 한계농지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정비사업 시행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및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추진

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및 그 중앙회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비사업 참여허용

※ 토지소유자의 참여방법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등 다목적이용, 농어촌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함. 다만,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라.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바.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내역서,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전후 면적조서, 사업중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 수요자의 모집 및 분양

- 사업의 홍보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된 토지의 분양, 임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토지분양, 임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요자 모집 : 사업시행자는 정비된 토지 등의 수요자를 사전 확보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승인을 득한후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음

○분양·임대절차등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주택·기타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65조 및 제73조를 준용

○분양가격의 결정 : 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분양시의 특례

- 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 정비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민이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취득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함.

아.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농지개발조합,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이관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조성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시장·군수가 관리
- 사업시행자는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에 의한 오염방지그라우팅, 폐쇄공공관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승인(계획변경, 준공)결과 보고 : 시행계획 승인(계획변경, 준공)시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6. '99년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지사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임협 및 그중앙회

다. 신청절차

- 예정지조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진공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시장·군수 → 도지사
- 지구지정 지정승인 : 도지사 → 농림부장관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위치도(축척 : 1/25,000)
- 예정지 조사보고서
- 정비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의 ⅔이상의 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복상에 관한특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199

승 락 자 주 소 : _____
 성 명(한자)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①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97까지			'98 계 획							'99이후		
							계 획			실 적			B/A (%)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A)	용자	자담	계 (B)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1.순공사비																
○																
○																
○																
2.용지매수 보상																
3.관리비 기타																
○조사설계																
○공사감리																
○잡 지 출																
○																
○																
○																

I. 농업경영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금융과입니다.

1. 목 적

-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에 대한 지원
- 쌀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진흥지역에 간접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898호)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6	'97	'98	'99	2000
총 지원규모		231,700	126,700	33,000	38,000		
사업비 (예산규모)	계	21,290	9,200	3,310	4,700		
	재특회계	21,290	9,200	3,310	4,70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업경영자금 >

- 일반농업경영자(벼농사) 및 전문농업경영자(채소, 과수 등 특수작목)
-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재해대상 농가

< 농기업경영자금 >

- 법인 :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개인 : 대상자선정후 3년이상 영농종사후계자, 전업농, 전업농 규모이상의 농업인, 작목반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 연리 5%, 1년내 상환(일반농업경영자금은 12월말)

< 농기업경영자금 >

- 연리 5%, 시설자금 2~4년, 운전자금 1년내 상환(1년간 연기 조치 가능)

○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이내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개별농가 및 법인·단체당 1,300만원이내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만원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이내

③ 농기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상자선정후 3년이상 영농종사후계자, 전업농, 전업농 규모이상의 농업인, 작목반

※ 단,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기업에 한함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시설보수 및 대체자금, 사업규모확장을 위한 설비 구입자금, 시설현대화자금등
- 운전자금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농업관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내용중 제외되는 부문 : 농기계구입자금, 토지구입비, 기조성된 건물 및 축산업·수산업·임업분야

< 미곡종합처리장 >

- 지원대상 : 농림부계획에 의거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
- 자금용도 : 원료곡 구매비
- 지원금액 : 농림부의 『미곡종합처리장 자금지원계획』에 의함
 - 개별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구매비로 용자받을 경우 다른 용도의 경영자금은 용자 불가

④ 재해대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금액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시설자금은 80%, 운전자금은 100%이내

※ 소요금액에 따라 심사기관을 달리하고 실제용자업무는 농협시
· 군지부에서 취급

< 금액별 심사기관 >

구 분		시·군지부	시·도지역본부	중앙본부
개별경영체	시설자금	1억원	3억원	3억원이상
	운전자금	0.5	1.5	1.5
법인경영체	시설자금	3	10	10
	운전자금	1	3	3

* 대출심사역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지부(지점)은 50% 중액운용

나. '98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내 용 별	사 업 비					
	계	예산액(재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계	억원 38,000	38,000	38,000			
○ 일반농업경영 (진흥지역 특별자금)	23,000 (5,000)	23,000 (5,000)	23,000 (5,000)			
○ 전문농업경영	8,800	8,800	8,800			
○ 재 해 대 책	1,200	1,200	1,200			
○ 농기업경영 (RPC 운영자금)	5,000 (400)	5,000 (400)	5,000 (400)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업경영자금 : 농림부 농업금융과(02 - 503 - 7218)
- 농기업경영자금 : 농림부 농촌인력과(02 - 503 - 7216)

다. 대상자 선정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조합유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농기업경영자금 : 실수요자가 농협시·군지부에 신청하여 시·군 지부에서 지원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융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조합까지 시달(농기업경영자금은 시·군지부까지)
 - 지역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농협(농기업경영자금은 시·군지부)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업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업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분기별)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업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업경영자금 용자실적 보고(분기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배정	대출실적	대출비율	자금배정	대출실적	대출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농업금융과(농업경영자금, 02-503-7218)
농촌인력과(농기업경영자금, 02-503-7216)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86)
- 농협지역본부 저축금융과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

II. 축산경영자금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일정규모 미만의 양축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및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축산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경영상태가 우수한 일정규모 이상의 양축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등 축산경영체에게 가축사양비, 시설 개보수 등의 운전자금을 저리지원하여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재해를 입은 양축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자금부족을 해소하여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자금의 효율성 제고
- 축종별·사육규모별 지원규모의 차등화를 통하여 적정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자금의 생산성을 유도

3.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사업추진 경위
 - '82 : 축산진흥기금에서 157억원 지원 시작
 - '86 : 금융자금중 40%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한국은행의 “농수축산 어음담보대출 취득규정 및 관련 세칙”
 - '8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 시작(차입금액 200억원)
 - '97 : 종전 “양축자금”을 “축산경영자금”으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제도를 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97	'98(예산안)	'99	2000-20004
지원규모	4,000	4,000	4,200	5,200	6,200		
재 원 별	재정자금	1,208	1,416	1,724	2,382	3,090	
	(신규)	(448)	(248)	(368)	(738)	(833)	
	한은자금	832	624	416	208	-	
축협자금	1,960	1,960	2,060	2,610	3,110		

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격

< 일반경영자금 >

- 아래와 같은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양축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 닭 : 1만수미만
 - 기타가축
- 전업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준 전업규모의 양축농가

< 전업경영자금 >

- 아래와 같은 규모의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는 준전업 및 전업규모의 개별양축농가
 - 한(육)우 : 30~300두이내
 - ※ 단, 10두 이상의 번식우 사육농가를 포함
 - 돼지 : 500~2,000두 이내
 - ※ 돼지고기수출 참여농가의 경우 5,000두 이내
 - 닭 : 1~5만수 이내
-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종돈업체
 - ※ 단, 하이브리드(Hybrid) 종돈을 사육하는 업체는 제외

- 한(육)우 돼지, 닭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
 - ※ 단,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의 경우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
 - ※ 지원요건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의 경우 출자시 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 특수목적 양축자금 >

-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연재배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해』
 - 중앙지원(국고+읍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당
- 시장·군수가 본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사고”
 - 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축사의 붕괴, 가축의도난·폐사등

○ 지원금액

< 일반경영자금 >

-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호(호)당 500만원이내와 1,000만원 이내로 구분 지원

< 전업경영자금 >

- 개별양축농가 : 축종별 사육두수에 따라 경영비를 고려하여 최고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신청액, 사업내용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
 - 한(육)우, 젖소 : 2,000만원 이내
 - 돼지, 닭 : 4,000만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 경영체당 한도액과 두수당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사업계획서, 경영평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
 - 경영체당 지원한도 : 한(육)우 2억원 돼지·닭 3억원 이내
 - ※ 법인명의(축산단지 포함)로 대출을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불가

< 특수목적 양축자금 >

- 호당 지원한도액 : 300만원 ~ 1억원 이내
 - ※ 지원액의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지원가능
- 호당지원액
 - 자연재해 : 피해액과 정부지원액(보조+읍자)의 차액 범위내
 - 기타사고 : 피해액의 50%범위내

- 지원조건
 - 융자기간 : 1년이내(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금리 : 연리 5%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기존 불량시설의 개·보수비등 가축 사양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신규시설투자, 가축입식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 단, 특수목적 양축자금의 경우는 가축입식 가능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억 원)

구 분	사 업 비(융자)		
	회 전 지 원	신 규 지 원	계
계	5,200	1,000	6,200
일반경영자금	3,100	500	3,600
전업경영자금	2,000	500	2,500
특수목적양축자금	100	-	1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정책과(02-504-9431~2)
- 시도 : 축협중앙회도지회
- 시군 : 시군 축산계, 관할축협(지역 및 업종조합)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 축협조합장 책임하에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수시 확인, 필요시 회수

나. 보 고

- 축협중앙회장은 융자실행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자금지원 신청

- 신청조합 : 대출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협
- 축협 신청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배 부 처 (발부기관)	비 고
개별농가	①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축 협	개별농가용
법 인 (단지,조합 포함)	①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② 규격돈 출하계약서 사본(소정양식) 1부 ③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1부 ④ 정관 사본(법인) 1부 ⑤ 결산재무제표(법인) 1부 ⑥ 사료공동구입관련서류(단지,법인) 1부 ⑦ 최근 2-3년간 경영장부 1부	축 협 축 협 관할등기소	법인,단지용

나. 대상자 선정

(1) 선정우선순위

- 일반경영자금
 - 정부의 축산시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로서 최근 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우선 지원
- 전업경영자금
 - 정부의 축산시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로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에 우선 지원
 - 축협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참여 농가에 우선지원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의 경우 공동종축·사료구입, 공동사양관리, 공동 판매하는 경영체에 우선지원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폭염에 의한 피해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일정시점에서 피해액의 50%범위내에서 우선지원가능
 - 지원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피해율이 큰(50%이상)농가,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순임

(2) 선정절차

< 일반경영자금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이하같음), 양축농가대표 4인(후계자1, 일반3),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축협 1(전무 또는 상무)
- 대상자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자금배정액, 지원기준, 선정절차 및 방법, 자금 지원계획 등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홍보
 - 양축인은 신청서를 작성, 관내 축산계장에게 신청
 - 축산계장은 “읍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 한 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 축협조합은 추천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 및 게시판에 공고
- 사업비 지원
 - 축협은 공제불가, 본인에게 직접지급, 통장지급원칙 준수
 -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읍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 통보

< 전업경영자금 >

- 자금 가배정
 - 개별농가
 - 축협중앙회는 축종별 배분자금에서 영농조합, 축산단지 등에 별도 배정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도별 사육규모, 축산전업농 수 등의 구성비를 기초로 도지회에 축종별로 가배정하고 동시에 동 내용을 시·도에 통지
 - 도지회는 전업경영자금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관내 조합별로 가배정 하고 동 내용을 시·도에 통지
 - 시·도 행정기관은 동 내용을 시·군에 알리고 농가에 홍보
 - 축협조합은 자금지원 신청절차를 자체간행물 및 게시판에 홍보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등에 대한 자금을 별도 배정하고 중앙회에서 관리

- 자금지원 신청
 - 실수요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축협에 신청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 포함)
- 대상자 심사
 - 개별농가
 - 축협조합은 대출신청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 관계 공무원과 2인 1조로 심사단을 구성
 - 심사단은 대출신청자의 신청서류 등을 토대로 축산경영자금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현장확인 원칙)
 - 조합단위 축산경영자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종별로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결정
 - 축협조합장은 축종별 지원결정내역을 도지회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시·군에 통지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
 - 축협조합은 신청서류를 취합, 검토한 후 도지회에 제출
 - 도지회장은 현지심사를 한 후 종합심사를 거쳐 도단위 축산경영자금 심사위원회에 추천
 - 동 위원회는 축협조합에서 결정 통보한 개별농가에 대한 조합의 지원 결정 내역과 도지회에서 추천한 영농조합법인 등에 추천내역 등을 심의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축협중앙회에 자금배정을 요청
 - 축협중앙회는 배정된 한도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자금배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특수목적 양축자금 >

- 법령에 의한 『재해』의 경우
 - 시도지사는 특수목적 양축자금 지원요청내역을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장관은 중앙재해 대책본부 등의 결정에 의거 피해복구계획 확정 시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시·도 및 축협중앙회에 통지

- 기타사고에 의한 경우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특수목적양축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축협 도지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축협 도지회장은 중앙회장에 지원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도지회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다. 대출실행

- 받을 서류(기본서류)

구 분	받 을 서 류	비 고
개별농가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법 인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이사회(또는 총회) 차입결의서 사본 1부	
	○ 기타 필요서류(담보권설정)등	

- 읍자상담 신청서 작성 및 신용조사서 작성은 생략함
- ※ 법인이 아닌 단지 등에 대하여서는 개별농가 대출로 실행함
- 대출실행방법 : 총서대출
 - 종전 양축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는 대출시 상환후 신규대출

< 개별농가대출 >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확인후 대출실행
 - 신분증사본은 대출서류에 편철 보관
 - ※ 채무관계자가 본인이 확실하나 신분증을 가지고오지 않은 경우는 자필 날인(서명 가능)후 무인을 받음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을 필히 채무관계인의 자필로 작성
 - 대필시 대필자와 채무관계인의 무인을 받음
- 대출금 지급은 본인명의 통장에 입금 지급함

< 법인대출 >

- 법인과의 약정은 법인인감을 사용함
 - 서명대출 불가
- 해당법인의 임원중에 과점주주(자기, 친척, 특수관계인 명의의 지분은 합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가 있거나 법령등에서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임원을 개인자격으로 연대입보함
- 대출제외자
 - 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
 - 지원 대상자라하더라도 사업중단지로 확인된 바(비양축가 또는 법인)
 - 중앙회 임직원,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 임직원(현행 양축자금 기시행)
 - 기타 이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의 발생시에는 차순위순으로 대출실행
- 채권보전
 -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무보증·신용대출 : 1천만원 이내
 - 보증(보증인 1인입보 원칙) 신용대출 : 2천만원이내
 - 담보대출 : 2천만원 초과시
 - 사료업체가 자금수혜자가 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3자담보 가능)
 - 이 경우 대출금의 지급은 차주의 지급위임장에 의거 사료업체의 통장에 입금지급할 수 있으며 필히 영수증을 징구 비치
 - 계통축협간은 신용을 원칙으로 함
 - ※ 축산경영자금은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만큼 운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기타 :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함
- 재대출 불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기타 행정사항

- 특수목적 양축자금 지원시 피해액중 가축의 피해액은 축협중앙회등이 조사하는 최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축협중앙회장은 기타 사고에 의한 특수목적 양축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도지회장에게 시달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 본요령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업지해대책법” 및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지원단가 고시”등 현행법령 및 고시 등의 규정에 준용함

V. 생활 환경 개선



여 백

I. 일반정주권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1. 목적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

나.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1,234개 면중 오지(400)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71개 정주권개발대상면 1차지원 완료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내지 제3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사업량(면수)					
- 보조사업		112	53	54	50
- 읍자사업		178	89	39	30
계		676,916	239,713	242,658	248,210
사업비	국고(양여금)	376,852	113,816	125,368	126,077
	지방비	154,051	48,778	53,731	54,033
	읍자	146,013	77,119	63,559	68,100

주1] 사업량은 완료면 기준

주2] 사업비는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5. '98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면개발계획수립

(1) 목적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2) 연차별 계획수립

- 2001년까지 771개의 면개발계획 수립완료
 - 매년 시·군별 사업추진 진도를 참고하여 연간 계획수립 면수 결정

구 분	계	'96까지	'97	'98(P)	'99	'99~2001
면수	771	536 (7)	43	50	50	99

※ ()는 읍승격된 지역 내서

(3)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면당 계획수립비 : 43백만원(시·군의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비에 계상)

(4)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승격 등 변경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5) 중심마을생활권 설정

- 중심마을생활권은 주민편익·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마을과 그 배후의 농지·임야등 농업생산기반 및 산업기반을 포괄하며, 중심마을의 편익·공공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동일 생활권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부락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항등을 공유하는 권역
 - 공공 서비스시설(관공서, 농협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등 교육기관등)
 - 도로 및 교통의 연계성 및 접근
 - 중심마을은 50호이상의 규모 있는 거점마을
 - 시장·상가등 상업 및 유통기능
 -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 중심마을의 공공·편익시설에 의존하는 배후마을
- 중심마을은 주거 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소 및 공공시설, 학교등 교육시설, 금융기관등 서비스시설, 시장 및 공동이용시설등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의 거점마을로 배후마을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
 - 마을 규모 50호 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
 - 도로·교통등 접근성이 좋은 마을
 - 공공·기초서비스시설(관공소, 보건소, 농협, 의료시설, 학교등 교육시설)이 있는 마을
 - 시장, 상가등 유통기능이 있는 마을
 - 복지회관(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이 집중된 마을

(6)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1, 2단계로 구분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과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1단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등을 검토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7)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등을 취하여야 함

(8)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생활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 분야

(9)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10)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42조원 농발계획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2단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중심마을정비계획은 개발방향, 개발계획, 사업효과등을 상세하게 수립함
 - 도상계획(1:5,000도면)
 - 소요사업비
 - 상·하수도계획

- 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 등과 연계여 계획수립
-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문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타부문계획으로 수립하고, 농발계획 및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함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10)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나. 일반정주권개발사업

(1) 사업내용설명

(가)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법정도로는 제외)
- 농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등

※ 타부문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면당 39 ~ 45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융자 9 ~ 15억원)
 - 보조사업비는 양여금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초과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자체적 추진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해 배분
 - 융자사업 : 면당 9~15억원 범위내에서 주택신축 및 개량자금등 지원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 년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년리 3%, 3년거치 7년상환

(다) '98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융자 (농특회계)		
일반정주권개발		248,210	194,177	126,077	68,100	54,033	
- 보조사업	50	180,110	126,077	126,077	-	54,033	
- 융자사업	30	68,100	68,100	-	68,100	-	

※ 사업량은 지원완료면 기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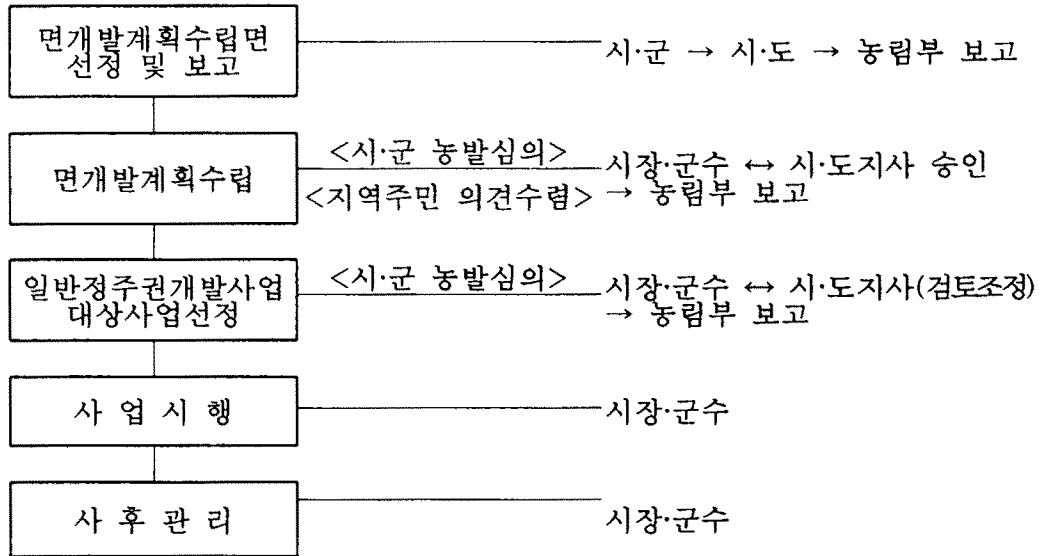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내무국 사회진흥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대상사업선정

(1) 사업대상면 선정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하므로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기간이 6년이상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신규착수 억제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계속 지원가능(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3개내외의 중심마을생활권을 선정

(3)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1단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천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1단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고 그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용지매수, 공사준비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완공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1) 보조사업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업자가 시행시 현지 여건상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등을 보관하여야 함

(2) 융자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내용
 - 농촌주택정비, 농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마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과 연계 지원)
- 융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융자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융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융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융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등 융자가능성에 대하여 융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융자방법
 - 사업시행자가 농민 또는 민간업체인 경우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사업시행자의 여신자금관리계좌에 입금후 사업실적확인(행정기관 또는 사업선정권자)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없이 융자금을 선금으로 일시지급 가능
- 융자종결기한 : 매 회계년도말(12.31)
 - 다만,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별표 1)

나. 사업의 위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름

라.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을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 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 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시·군의 면수비용에 의하여 배분하며, 시장·군수는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

- 용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용자금으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용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동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면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나. 보고

- 면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개발계획승인시(별지 제1호 서식)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정주권개발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정주권개발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 : 매년 3.10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일반정주권)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일반정주권)사업 완료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6호 서식)

[별표 1]

음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음자지원조건

1. 음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조성(생활환경정비)사업	○ 정주권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 문화마을조성(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시·도지사
○ 주택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개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주택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농촌용수설시(상·하수도 포함)	○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시·도지사

2. 음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음자기간(년)			음자한도	음자비율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용지매수	3%	4	2	2	○ 사업지구당 100억원 이내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임대주택	5	20	5	15	○ 지구당 5억원 이내	○ 전체사업비의 50%이내
○ 주택신축(문화마을)	5.5 (5)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주택개량	3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민편익설시	5	5	2	3	○ 사업자당 3천만원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농촌용수설시(상·하수도 포함)	3	20	5	15	○ 지구당 3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 업 명	자 금 의 용 도	용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생활환경정비)사업	○ 문화마을조성(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진공)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	시장·군수 (농진공)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 민
○ 주민편의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편의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촌용수 (상·하수도 포함)	○ 농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면 면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

면적 (㎡)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

구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 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 하수도시설	Km								
○ 상수도시설	개소 (명)								
○ 하천정비	Km								
○ 복지회관	개소								
○ 마을회관	개소								
○ 주택정비	동								
○ 경지정리	ha								
○ 수리답율	%								

4.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구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어촌용배수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농촌주택정비						
10. 기타지역개발						

5. 1단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

○1단계 투자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26-65

199○년도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시·도)

시·군명	대상 면수	사업시행(면수)			개발계획수립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면수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획	
계						면수	면 명	

[별지 제3호 서식]

총26-61

'98정주권개발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 면 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조성			일반정주권개발				비 고		
			보조	용자	보조	용 자		보조	용 자					
						계	용지 매입		주택 신축 ()	계	주택 신축 ()		주택 개량 ()	주민 편익 ()
계														

- ※ 1. ()는 주택호수등 물량
- 2.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방비

[별지 제4호 서식]

자체가26-51

일반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선정결과(추진실적)

(시·도, 시·군,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명	단 위	사업량	'98 사 업 비			용 자	비 고
				계	보 조			
				소계	양여금	지방비		
	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도로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공인도포장 기타	Km 개소 Km 개소 Km 개소 Km 개소 Km 식						
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고설 선별시설 농산물생배장 농기계수리센터 농기술훈련소 기타	개소 동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생산기반정비	소계							
	농경지 생관영 면적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공인 어항 휴게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소계							
	저수지 관정 지역배수 기타	개소 개소 개소 Km 식						
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문물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안전 기타	Km 개소 개소 개소						
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신축 주택개량	동 동						
기타	소계							
	지역개발 계획수립 기타	개소 면 개소 식						

※ 1. 면, 시·군총괄, 시·도총괄표 작성 2. 선정결과와 추진실적을 같은 표로 이용(선정결과/사업실적)

2. 부문별 추진상황

(시·도, 시·군,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명	단위	'98 계 획			추진실적(월말 현재)			진도 (B/A) (%)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 조	용 자	사업량	계	보 조	용 자
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상수도 기타	Km 개소 Km 식								
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공동도포장 기타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Km 식								
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산물집하장 보관창고 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기타	개소 동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대 식								
생산기반정비	소계									
	농경지정리 생산업관 농시영농 기타	Km ha 개소 개소 개소 식								
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게소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농촌용수 및 배수시설	소계									
	저수지 관정 지역배수 기타	개소 개소 Km 식								
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문틀박스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식								
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Km 개소 개소								
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신축 주택개량	동 동								
기타	소계									
	지역개발 개발계획수립 기타	개소 개소 개소 식								

※ 면, 시·군총괄, 시·도총괄표 작성

II. 문화마을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1. 목 적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생활권의 거점마을(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연계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발전가능성이 큰 면단위 정주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시설), 농촌 주택정비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등 병행·연계 추진

나. 장기 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면에 대하여 면당 1개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4
사업량 (완료)	49 (15)	21 (17)	24 (19)	13 (21)		
사업비	계	160,951	68,460	99,098	89,555	
	국고(양여금)	44,479	30,316	38,918	35,114	
	지방비 융 자	18,452 98,020	12,993 25,151	16,679 43,501	15,049 39,392	

주1] 사업량은 착수지구 기준, ()는 단지조성 완료지구

주2] 사업비는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5. '98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면개발계획서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마을생활권 지역의 거점마을(중심마을)에 대하여 마을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
- 마을의 원 지형을 기본 토대로 지역의 특성(전통성, 문화성)을 고려하여 정비
 -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 재배치
 - 마을기반시설(마을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전기·통신시설등)과 농촌주택정비
 - 복지(마을)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익 및 공동 이용시설
 -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유치
- 필요한 경우 기존중심마을내 또는 인접하여 신규택지를 조성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보조 : 20억원수준(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 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
- 융자 : 30억원 수준(농촌주택정비 및 신규택지확보를 위한 용지매수보상)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000만원(연리 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 : 호당 500만원(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용지매수보상 : 소요액(연리 3%, 2년거치 2년상환)
- 보조사업비 재원 :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3]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양여기준 적용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확보 추진

다. '98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 여 금)	용자		
문화마을조성사업		89,555	74,506	35,114	39,392	15,049	-
○ 단지조성	55	70,905	55,856	35,114	20,742	15,049	-
○ 주택건축	46	18,650	18,650	-	18,65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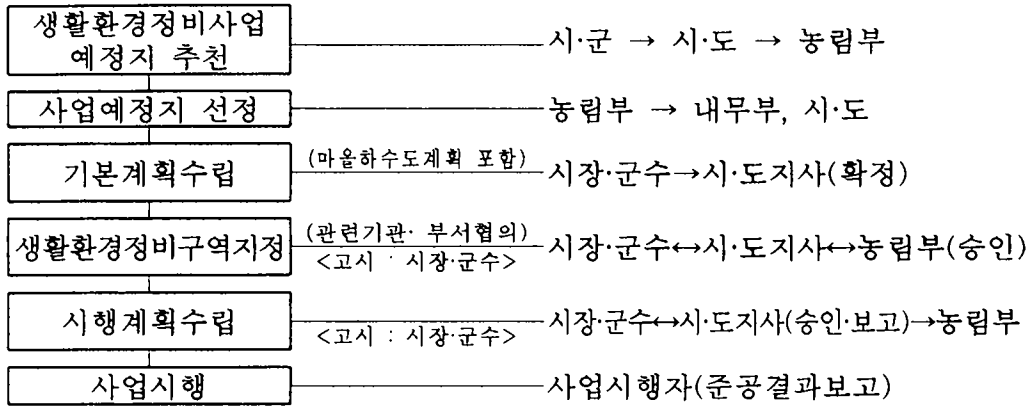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내무국 사회진흥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
(경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는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시행 시에는 가능한한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등을 일괄하여 위탁하며, 이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사업시행자는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면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도시계획구역 제외)중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마을중에서 선정
 - 교통·경제·문화등 중심생활권으로서 발전가능성이 크며, 50호 이상으로 규모화가 가능한 마을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사업등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마을
 - 타부문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마을
 - 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도시근교지역, 주변땅값이 비싼 지역등은 제외)

- 신규택지조성시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

(2)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예정지를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1개면에 1개지구. 단,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개발중이거나 기 개발된 면은 제외)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신규착수 예정지중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 예정지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현황(호수, 인구<농업인/비농업인>),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현황, 주소득원, 호당 연간평균소득,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시설현황, 편익·복지시설현황 등)
 -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 위치평면도(1:25,000) 및 개발계획도(1:5,000)
 - 개발계획내용
 - 주택정비계획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타부문 투자계획
 -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장계획
 - 사업시행후 마을의 발전 전망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가 추천한 지구에 대하여 필요시 농림부장관이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예정지구 확정(단, 추천지구가 많을 경우 년도별 지원기준에 의거 도별 사업량 결정)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예정지구가 선정되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계상된 보조사업비중 일부를 기본계획수립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설정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마을현황,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포함), 마을하수도시설계획, 주택개량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어촌도로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함
- 기존마을정비시 농촌주택개량계획은 사업시행되는 마을에서 주민신청에 의하여 소요물량을 정확히 판단하여야하며, 사업기간내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회관, 농기계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용지와 건축공사비에 대한 재원 및 조달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농림부소관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등)과 타부처소관 연관사업(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은 “농·산·어촌마을 현대화사업통합지침(정비51370-216, '96. 6. 7)”에 의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을 결정하며,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함(별지 제1호 서식)
 - 기본계획서(필요시 환경성검토서 포함) 1부
 - 위치평면도(1:25,000)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각 1부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토록 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비조달계획
 - 농촌마을정비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 편·익복지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계획

<사업시행>

가. 년도별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예산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을 승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5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별표 1) 징구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마.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는 기존마을정비시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택개량(개축 및 개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주택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분준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마을정비시 농촌주택개량(개축, 개량)은 주민의 신청에 의하며, 주택개량의 용자지원기간은 생활환경정비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규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준공전 분양시는 준공)후 1년 이내에 착수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기존마을정비시 주상복합건물의 개축은 용자지원을 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건축을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신규택지에 건축시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택지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등의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동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함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등 요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 49조(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의 요율범위 내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할수 있음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후 필요시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보정 지원
-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주택 및 신규 택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비 융차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전체 소요사업비중 양여금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면)의 면정주권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양여금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당해지구의 공동이용시설과 면정주권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 등)과 연계 지원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에 상호연계하여 종합지원되도록 추진
- 용자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주택개량자가 선정되면 용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며,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용지매수·보상에 소요되는 용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실적 확인없이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용자지원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용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용자대상 : 단독주택(신규마을조성시 상가겸용주택 포함)에 한하며, 기존마을정비시 상가겸용주택 개량(개축)은 제외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자를 신청할 경우 용자취급기관은 용자신청자에게 후취담보로 여신자금관리계좌에 입금후 건축공사 실적에 따라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용자금 취급기관은 용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 정주권개발 용자사업의(별표1)참조
- 사업비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조성용지등의 분양

-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 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부가 정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조성된용지및농어촌주택등의분양업무처리규정(‘96.6.10)”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수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택자금등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조성용지 및 주택등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공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수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차입한 융자금을 기한내 상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전까지의 당해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 분양을 시행한 지구중 공동주택용지등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용지가 있는 경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용지등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는 분양수익금 또는 기타(지방비등)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나. 보 고

- 생활환경정비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승인시(별지 제2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별지 제3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 계획수립시(별지 제4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 준공보고 : 준공시(별지 제6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 분양시(별지 제7호 서식)

다. 사업추진일정

-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구 추천(시·군→시·도→농림부) : 전년 5월말까지
- 사업예정지구 선정시달(농림부→시·도→시·군) : 전년 7월 말까지
- 기본계획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요청(시·도→농림부) : 전년 12월 말까지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농림부→시·도) : 당해년도 3월말까지
- 시행계획 수립(시·군→시·도 승인→농림부 보고) : 당해년도 7월 말까지

라.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정주권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중심마을현대화사업의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별표 1]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_____ 군수(시장)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첨언함)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예 정 면 적	비 고
시 군	읍면동	리					

1 9 9

승 락 자 주 소 :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별표 2]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 %)

구 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	음 자 (농특회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신규택지 조성)	○ 용지확보	-	100	○ 발생이자등 포함
	○ 공 사 비	100	-	○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등 포함
	○ 잡 지 출	100	-	○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등 포함
	○ 관 리 비	100	-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주택건축관리비, 사업관리비, 획변경협의,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시설물관리비, 환경 영향평가비용등 포함
마을하수 처리시설	○ 용지확보및 제공사비	100	-	
기존마을 정 비	○ 기반시설사업	100	-	○ 정주권개발비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 용지매수보상	100	-	

[별지 제1호서식]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업명	○○ ○○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대상 지역 개요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면 적	m ² (평)							
	토지이용 현황(m ²)	지목별 면 적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비율(%)							
	용도지역 현황(m ²)	용도별	계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p>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199</p> <p style="margin-left: 200px;">신청자 : 도지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각 3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생활환경정비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원 - 놀이터 - 주차장 - 정차대 - 배수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				
- 지방				
- 지방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주택정비				
○기타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생활환경정비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m²)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B-A)	비 고
	면적(A)	구성비 (%)	면적(B)	구성비 (%)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원						
- 놀이터						
- 주차장						
- 정차대						
- 배수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주택정비				
○기타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구명 :
- 기본계획확정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사업시행기간 : ~

(수입)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방 양 여 금							
- 지 방 방							
○ 용 자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주 택 정 비							
○ 기 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지정년도	조성면적 (m ²)	주택호수 (호)	총 계획 (A)				'96 까 지 (B)				'97 계 획						누 계 진 도 (D+D)/A (%)	비 고			
시 군	면	리				계	보 조	용 자			계	보 조	용 자			계 획 (C)		()월 말까지 실적(D)				진 도 (D/C) (%)		
								소 계	단 지 조 성	주 택 건 축			소 계	단 지 조 성	주 택 건 축	계	보 조	용 자					용 자	
																		소 계	단 지 조 성				주 택 건 축	소 계
계																								

- ※ 1.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분양계획등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 준공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원 - 놀이터 - 주차장 - 정차대 - 배수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 보 조								
- 국 방 앞 여 고 금 비								
- 지 방 앞 여 고 금 비								
○ 용 자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 공 사 비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상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주 택 정 비								
○ 기 타								

[별지 제7호 서식]

자체가26-53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추진경위

- 예정지선정
- 기본계획수립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 분양일자

3.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

분양계획		순위별 분양현황(필지)						분양가격(천원/평)			
용도별	계획필지	계	1	2	3	5	4	5	6	조성원가	감정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공시설용지											
○ 기타용지											

4. 지역별·거주지별 분양현황(주택건설용지)

(단위 : 필지)

구 분	분양현황	직업별 분양현황						거주지별분양현황				
		농어민	비농어민	회사원	상업	공무원	기타	해당리	해당면	해당군	기타지역	
○ 단독주택용지												
- 무주택자												
- 유주택자												
○ 근린시설용지												

※ 필지별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 덧붙임

Ⅲ. 농촌마을하수도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결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문화마을조성사업등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수질오염이 극심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필요한 지역

나.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 면단위지역에 면당 1개소 설치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99~2004
사업량(개소)		14	16	21	19		
사업비	계	5,600	6,400	8,000	7,600		
	국 고	5,600	6,400	8,000	7,600		

주1] 사업비는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기존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를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2)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 지구당 4억원 수준(국고 100%).

나. '98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마을하수도시설	19	7,600	7,600	7,600	0	0	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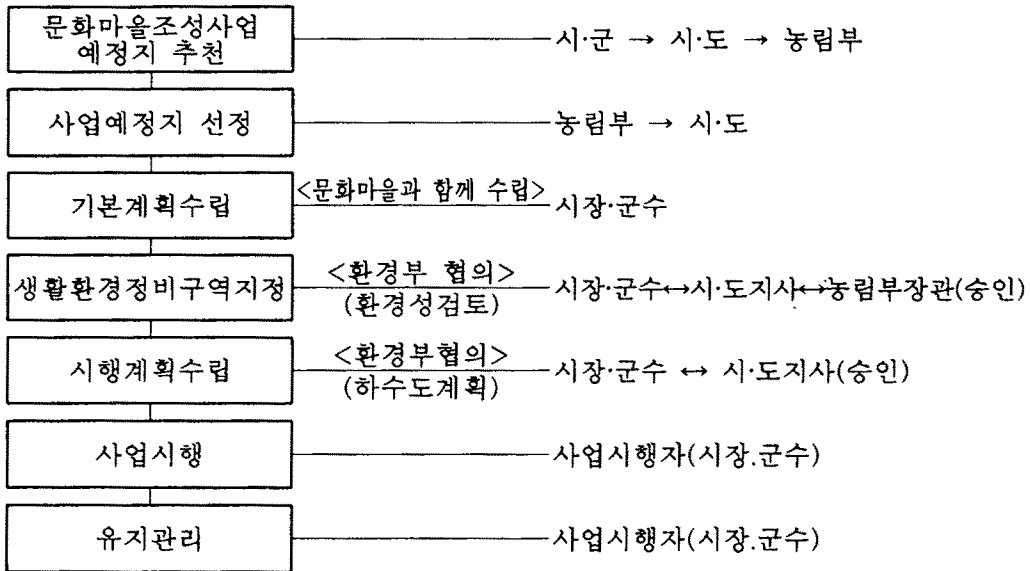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내무국 사회진흥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2항)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마을하수도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설계·시공등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도록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마을하수도 사업시행을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에 관한사항(추진상황, 사업비정산보고등)을 총괄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로 기선정된 지구와 하수체계상 병행처리가 가능한 인근마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가급적 마을규모가 50호 수준이상인 지역으로써
 - 기존마을의 하수체계,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마을
 - 환경오염이 심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

나.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마을하수도업무편람(환경부 1996)을 참고하여 수립하며, 하수도법 규정에 맞도록 계획수립
-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립시에는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리비가 적게들고, 처리효율이 우수한 시설로 계획하며, 무인·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함
- 마을하수도시설의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도록 계획

< 마을하수도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

(단위: mg/ℓ)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비 고
집중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인 : 8이하
현장처리시설	30이하	40이하	30이하	

※ 총질소,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적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마을하수도시설의 기본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서에 관한 사항
 - 슬러지처리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기존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개정하수도법) 제6조의2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후 또는 시행계획승인전에 지방환경관리청장과의 협의
-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문화마을조성사업(단지조성)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위탁시행할 경우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위탁시행자에게 일괄위탁토록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준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수한 토지는 시장·군수 명의로 동기함.
- 용지매수는 가능한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매수시 일괄매입함

다.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법 조항 동일)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설계감리등 요율

-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오·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등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에 의함

마.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홍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함

바. 사업의 준공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 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사업비의 예산은 지구당 4억원(농특회계)을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별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당해년 예산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지방비 등)확보 추진
- 사업비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마을 단지조성 준공년도(문화마을조성 2~3차년도)에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나.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준공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준공시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부서 및 해당 기술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필요시 시·군 조례를 정하여 조달 가능)
- 현지 상주직원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중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을 측정·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설물관리자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점검대장을 비치하며,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수립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별지 제2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마을하수도)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3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마을하수도)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정주생활권개발(마을하수도) 준공보고 : 준공시(별지 제5호 서식)

다. 참고사항

- 시·군에서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하수도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할 경우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안)(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을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생활환경정비사업(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치 :
- 시설규모 : m³/일(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설계기관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 기본계획수립 :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 마을하수도계획협의 :

3.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고
문화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등)(D)					
합계(C+D)					

4. 계획공법 및 처리수질

- 계획처리공법 :
- 계획처리수질

(단위 : mg/l)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보조				
- 국 지방자치 - 중앙지방자치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계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생활환경정비사업(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치 :
- 시설규모 : m²/일(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기관 :

2. 주요변경내용

3.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 리 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사업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승인 : 199
 - 시행계획승인 : 199
 - 준공 예정일 : 199
 - 처 리 용 량 : m³/일(처리계획호수 : 호, 처리계획인구 : 명)
-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 리 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사업 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 지출							
○ 예 비 비							
○ 기 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3. 공정계획(지구별)

지구명 : 지구, 사업시행기간 : , 착공년월일 :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전년)까지	(금년)계획	(금년)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1/4			2/4			3/4			4/4									
					당년	누계	%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합 계																									
공사비																									
-토목공사																									
-오수관로																									
-오수처리조																									
-조경공사																									
-부대공사																									
-기타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자계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사업관리비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예비비																									
기타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사업비 (A)	준공 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계							
○ 보조 - 국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사업비 (A)	준공 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IV.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입니다.

1. 목 적

- 농가주거환경개선으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활개선시범마을 중심 우선지원 → 인근파급지도
-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용별 선택 설치
 -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 중 택일
- 농가별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사업 연계추진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94. 9)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5	'96	'97	'98 (예산안)	'99	2000~2004
사 업 량		47,000 ^호	15,000	12,500	11,500		
사 업 비	계	93,450 ^{백만원}	42,000	43,750	40,250		
	용 자	93,450	42,000	43,750	40,250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사업의 내용

○ 부엌개량 + 목욕실 설치

- 부엌개량 :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입식작업대설치, 채광·환기창 설비 등

- 목욕실 설치 : 상·하수도시설, 욕조·샤워기 설치, 채광시설 등

○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 : 집열판·축열탱크, 온수배관시설 등

(2) 지원대상자 : 생활개선시범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

(3) 지원단가 : 농가당 350만원 용자

나. '9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호 11,500	백만원 40,250	40,250	-	40,250	-	-
부 산	70	245	245	-	245	-	-
대 구	60	210	210	-	210	-	-
인 천	20	70	70	-	70	-	-
광 주	80	280	280	-	280	-	-
대 전	80	280	280	-	280	-	-
경 기	500	1,750	1,750	-	1,750	-	-
강 원	1,000	3,500	3,500	-	3,500	-	-
충 북	530	1,855	1,855	-	1,855	-	-
충 남	2,280	7,980	7,980	-	7,980	-	-
전 북	2,380	8,330	8,330	-	8,330	-	-
전 남	2,630	9,205	9,205	-	9,205	-	-
경 북	770	2,695	2,695	-	2,695	-	-
경 남	1,060	3,710	3,710	-	3,710	-	-
제 주	40	140	140	-	140	-	-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후 7년상환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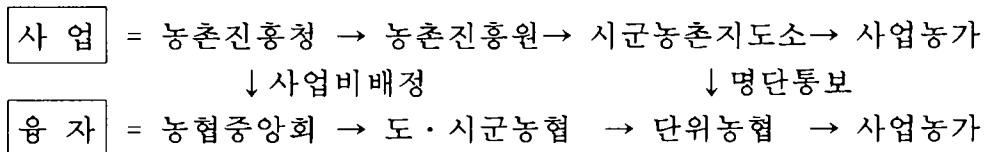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도국 생활개선과 (0331-292-4256)
- 시 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생활개선과,
 광역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 시군자치구 : 시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중앙, 도,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 시군단위 농가교육 실시 :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실시
- 사업추진상황 파악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및 개량전후 사진촬영
- 사업평가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가별 사업평가서 작성
- ※ 대상농가 변경 : 사업포기농가 발생시 차순위농가를 선정하여 지원
(농발심의회 소분과위원회의 심의)

(3) 사업비 집행방법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대출취급기관(농협)에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출금액이 확정 통보되면 사업실적 확인 없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출금을 일시 전액 지급함

라. 기타사항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본 사업용으로 지원된 용자금이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조치함

< 행정사항 >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별지 제3호서식)

6. '9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생활개선시범마을·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

다. 신청절차

- 시범마을 : 마을대표(이장, 생활개선회장 등)는 마을단위로 희망 농가명단을 작성, 시군농촌지도소장(또는 읍면상담소장)에게 신청
- 일반마을 : 희망농가가 시군농촌지도소장(또는 읍면상담소장)에게 신청
- 신청시기 : 사업희망 전년도 1월 31일까지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 제1순위 : 생활개선시범마을 및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내 농가
 - * 생활개선시범마을(읍면당 1개정도씩 선정, 3개년간 계속 육성)
- 제2순위 : 일반마을의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농업인후계자·4-H회원농가
- 제3순위 : 일반마을의 농가

(2) 선정기준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희망농가의 가옥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용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

(3) 선정절차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희망농가를 현지출장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 농가에 통보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위의 경우 시도별로 사업의 종류를 1~2가지로 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선정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기대되는 성과,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을구분 : 시범마을, 일반마을

마을명 : 읍면 리

농가명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 시기 (월)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부엌+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기타	계	음자	자부담	

위와 같이 199년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9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시·군농촌지도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평 가 서

주 소	성 명	사 업 내 용			소 요 사 업 비			완 료 일	평 가
		부역+ 목욕실	태양열 온수기	기타	계	음 자	자부담		

199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체 가 48-8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매분기말)

시도별	사업내용	개량실적(호)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용자액	자부담	기 타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태양열온수 급탕기설치							
	계							

* 사선 상단은 금분기 실적, 하단은 누계

* 3/4분기 보고시는 사업실적 사진을 시도별로 6매씩 제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에 있습니다.

1. 목 적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를 개발, 음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농업·축산용수 등·다목적용수 공급
-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 시설채소재배 수요 등을 사전예측하여 필요수량 확보
-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 2004년까지 5,000개소의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96	'97	'98 (예산안)	'99~2004
사업량(개소)		5,000	1,151	313	471	3,065
사 업 비	계	850,000	173,000	80,000	80,000	517,000
	국 고	425,000	86,500	40,000	40,000	258,500
	지방교부금	425,000	86,500	40,000	40,000	258,500

5. '98년도 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사업추진배경 : 생활용수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

○ 사업내용

- 지하수기초조사 : 지질조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등

- 수 원 공 개 발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오염방지그라우팅, 폐공처리 등

※지구당 시추조사는 필요심도까지 1공을 시행한 후, 실패시는 추가로 1공을 시추조사할 수 있음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수량 확보심도까지 착공하고, 우물자재 구경은 200mm, 1일채수량은 공당 150톤 이상으로 하며,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도지사 책임하에 공당 1일 채수량 100톤 이상으로 조정 가능

- 이용시설설치 : 송·배수관, 배수지(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용가 부담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및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지역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등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170백만원(수원공개발(지하수기초조사 포함) 80, 이용시설설치 90)

○ 지원조건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나. '98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백만원)			지 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471	80,000	40,000	40,000	-	40,0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4-9404, 9405)
- 시·도 :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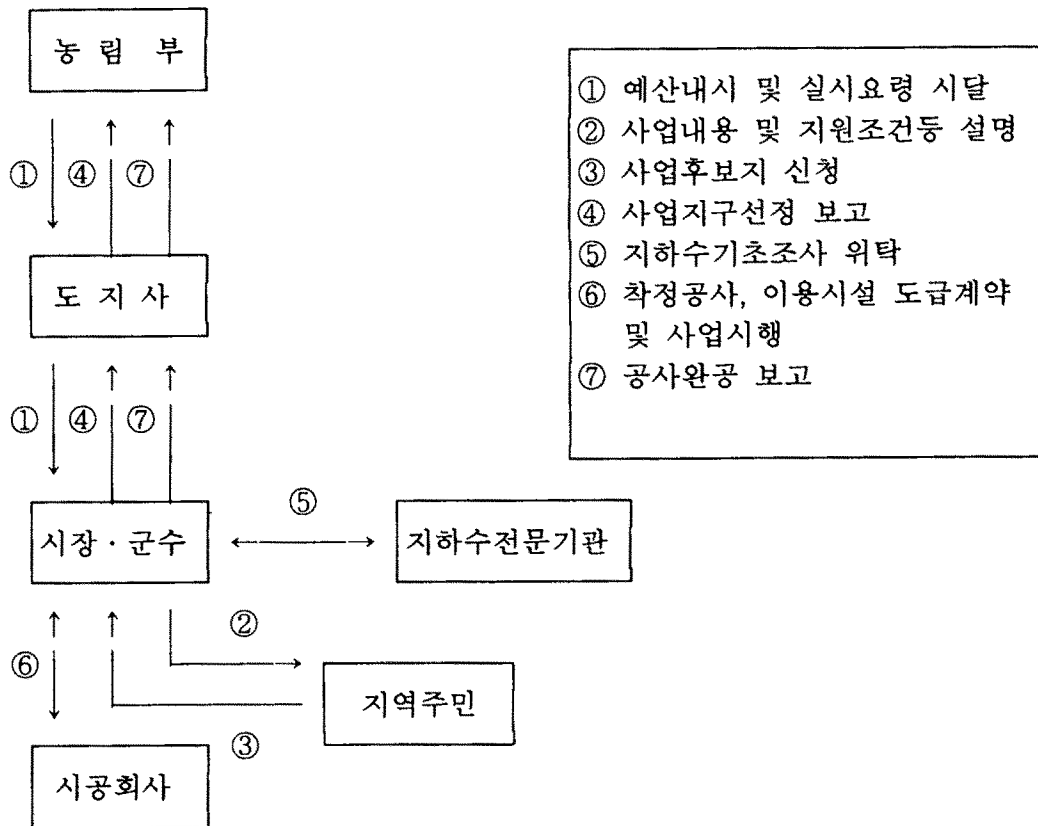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1) 선정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기 관 명	추진내용
농림부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침 작성 ◦ 대상지 검토확정 ◦ 사업홍보(사업내용, 지원조건 등), 대상지선정 ◦ 사업후보자 신청

2) 사업시행 체계도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전국 면단위이하 농촌지역 중 우물 및 하천수 이용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로서, 이용 가구수가 많은 마을(50호이상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정주권개발 및 한계농지정비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마을
-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2)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 설치비용 등 자부담능력, 주민호응도, 사후관리능력, 사업의 효율성, 개발시급성 등을 감안 선정

- 지역주민이 자발적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후관리 등에 적극적인 지원여부 등을 고려(정부에서 강요하는 사업이 아님을 주지시킬 것)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제외
 - 상수도계획 수립예정이거나 수립된 지역
 - 자연수이용 마을이더라도 수질오염이 안된 수량이 풍부한 지역
 - 인구감소로 앞으로 존속할 수 없는 지역
 - 수물예정지 등 항구적 주거지로 부적합한 지역
- 특히 본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 관리조직 구성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비 징수, 적립금 적립이 부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립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년도 예산규모를 감안 수원공개발 및 이용시설설치로 구분 수립(별제 제2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시행계획 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시행. 단, 지구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협의보상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5) 설계 및 시공

<세부설계시 고려사항>

- 정주권개발사업과 동일 지구일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설계 실시
- 각종 시설 및 자재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 사업비 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10.12)을 참고하여 동일공종의 타공인 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개발영향조사>

- 시장·군수는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관정의개발·이용에따른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거 지하수부존량 등에 대한 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의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토록 함. 다만, 해당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영향권역내의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는 등 지하수개발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수원공개발>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양수시험 등은 지하수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에만하여 당해 시장·군수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하수조사업무 대행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전문건설업체가 개발토록 함
- 수원공의 확공위치는 안정수위이하의 심도까지 적합하게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착정 및 우물자재 등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확인
- 수원공개발시(착정)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대표가 날인

※ 수원공개발사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개발을 포기하거나 관정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수질검사 : 수원공 개발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관련규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항목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견시에는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개발 추진.
 - (별표1)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
 - 가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이 미설치된 지구의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지구에 한하여 이용
 - 이용시설설치후 생활용수를 공급하기전에 반드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항목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용수공급

< 이용시설설치>

- 이용시설은 정비51370-246('95.7.21)호로 시달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계획 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
 - 배수지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 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는 용수사용량(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을 고려하여 결정(예 : 도시지역 1일 용수사용량 : 450ℓ/인)
 -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정수시설 필요시 정수시설 설치비는 최고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 등을 투입토록 함.
 - 배수지시설은 외부인 출입방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울타리)을 반드시 설치하고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등에는 시건장치를 설치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공사완료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관정 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1개소당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2) 자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지구여건을 감안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구간 조정시행 가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적격자(시·군 수도과등)와 생활용수관리조직 대표자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시설물을 관리
-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
 -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로 등록하여 시·군 간이상수도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유지 관리
- 관리비용 등 : 시장·군수가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등 포함)를 징수하여 지급·적립조치(지역주민 의견 반영)
- 수질검사 : 관련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조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수·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전항목검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
(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이용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대체시설 개발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2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거 시행
- 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 실시,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지원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시설물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배수지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7호 서식)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 철저

나.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8.30까지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월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기타

-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8. '99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우물,하천수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생활용수개발 신청서
- 위치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별표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생물에 관한 기준(2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세균	100CFU/ml	하수오물, 폐기물,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수처리 효율의 지표로 이용되며,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의 판단자료
2 대장균군	불검출/50ml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10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납(Pb)	0.05mg/l	안료, 도료, 활자제조업, 연관제조업, 인쇄공장, 유리제조공장 등의 폐수 및 납관에서의 유출	0.5mg/day이상 섭취시 축적성 만성중독 - 정신착란, 심근마비, 악성빈혈 급성중독 - 복통, 구토, 소아 : 신경, 면역장애
4 불소(F)	1mg/l	지하수중의 천연상태(불소인회석), 살충제, 방부제, 불소화학	1mg/l 이하 - 충치예방효과 만성중독(1mg/l 이상) - 반상치신장: 지방산산화효소활성저하, 간 : 질소, 지방함량 감소
5 비소(As)	0.05mg/l	광산제련공업, 의약품 및 비소계 살충제 제조공장 폐수, 안료 및 도료공업 유기, 무기상태(3, 5가 : 독성크다)	만성중독(0.21mg/l 이상) - 수족 지각장애, 수족각화증, 빈혈, 흑피증, 손톱, 모발의 위축, 급성중독(성인 : 5~50mg섭취) - 구토, 설사 100~150mg : 경구치사량
6 세레늄(Se)	0.01mg/l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에 이용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성착색, 치아장애, 위장관으로 93%흡수, 알칼리병, 혈운증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은(Hg)	불검출	8소다공업, 농약제조, 수은정제공장, 도료공장폐수, 폐건전지 무기상태(1,2가염: 15% 흡수), 유기수은(메틸수은 : 미생물에 의해 생성, 100%흡수되어 먹이사슬에 축적)	만성중독: 언어장애, 지각이상, 신경쇠약, 난청유발, 생식선 자극(돌연변이) 급성중독: 위장병, 구내염, 신장장해(단백뇨) 유기수은이 축적된 담수어의 섭취(일본 : 미나마타병)
8 시안(CN)	불검출	도금공장, 가스공업, 크로믹스공장, 정유공장 등 폐수 염소처리에 의한 무해한 시안산염으로	세포호흡저해, 질식성경련, 의식장해, 뇌의 젖산함량증가로 인한 혼수상태와 뇌손상 50~60mg : 경구치사량 0.05mg/ℓ 이상 : 물고기에 유해
9 6가크롬 (Cr)	0.05mg/ℓ	염색공업, 피혁제조, 석유화학공업, 도금공장폐수	만성중독- 피부궤양, 폐암유발 급성중독- 미각장해, 위장염 0.1mg/ℓ : 음용수로서 유해
10 암모니아성 질소 (NH ₄ -N)	0.5mg/ℓ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물배설물, 비료, 폐기물	
11 질산성 질소 (NO ₃ -N)	10mg/ℓ	의 침출수, 자동차 및 연소기관, 대기중의 낙진, 토양내의 유기물질	유아 : 10mg/ℓ 이상의 물과 우유는 청색증(Blue Baby)유발 (Methemoglobinemia : 혈액과 반응하여 호흡장애)
12 카드뮴 (Cd)	0.01mg/ℓ	광산(갱내수의 산성화에 의한 용출), 광재, 습식 제련공정중 가용성염의 용출, 도금공장폐수 및 급수설비에 의한 오염	간, 신장, 갑상선, 뼈에 축적 만성중독 - 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해, 골연화증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섭취(일본 : 이따이 이따이병)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5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3	페놀 (C-H-OH) 0.005mg/ℓ	석탄,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약, 페놀계 합성수지공장폐수, 살충제의 미생물 분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 생성(독성보다 악취가 문제) 만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14	총트리할로메탄(THM) CHCl & CHBr Cl & CHBr 0.1mg/ℓ	자연유기물(폴빈산, 휴민산)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발암성물질(THM) 생성	발암성 물질 만성중독 - 불안, 불면, 흥분, 간위축, 신장장애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피부탈지
15	다이아지논 0.02mg/ℓ	유기인계 농약물질, 살충제 합성제조, 석유제품 촉매	맹독성, 발암성물질, 신경과 뇌신경계 마비증상, 근육경련
16	파라티온 0.06mg/ℓ		
17	말라티온 0.25mg/ℓ		
18	페니트로티온 0.04mg/ℓ		
19	카바릴 0.07mg/ℓ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감퇴, 혼수, 호흡곤란
20	1,1,1-트리클로로에탄 C H Cl 0.1mg/ℓ		눈 점막자극 고농도 : 마취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C Cl 0.01mg/ℓ	금속탈지공업, 드라이클리닝 용매, 염소화탄산수소류생산공장	중추신경계 억제, 불쾌감, 마취 고농도 : 의식불명, 반사기능저하, 간장장애, 다발성신경염, 간중양유발(새앙쥐)
22	트리카로로에틸렌(TCE) C H Cl 0.03mg/ℓ	금속산업 : 비윤활용매, 드라이클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억제, 두통, 간장해, 관절이상 간중양유발(새앙쥐)
23	디클로로메탄 CH Cl 0.02mg/ℓ		
24	벤젠 CH 0.01mg/ℓ	화학공장 : 페놀, 사이크로헥산 생산의 중간물질	만성중독 - 빈혈, 백혈구감소, 면역기능저하
25	톨루엔 C H CH 0.7mg/ℓ	공업: 플라스틱, 페인트경화제의 합성을 위한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기형, 발암, 변이성은 없음
26	에틸벤젠 C H C H 0.3mg/ℓ	중간물질이나 용매, 기계 코크생산의 부산물	현기증, 호흡곤란
27	크실렌 CH ₄ (CH ₃) ₂ 0.5mg/ℓ		메스꺼움, 구토, 의식불명 유발, 신장 및 간장손상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16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8	경도	300mg/ℓ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Ca, Mg, Sr, Ba)	세탁, 보일러용수 장애 다량존재시 불쾌한 맛
2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폐기된 유기물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
30	냄새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이외는 무미무취	용수원의 수질변화, 물처리공정의 결함,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미생물 성장을 암시	
31	맛			
32	동(Cu)	1mg/ℓ	동제련공장, 금속표면(도금)업소, 수도용 동관	1mg/ℓ : 청색, 착색 1.5~3mg/ℓ : 금속성 맛 5mg/ℓ : 텁은 맛 80~170mg/ℓ 섭취 : 간장장애
33	색도	5도	미생물, 플랑크톤의 번식 용해성물질, 오수 등의 혼입	심미적 나쁜 영향
34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mg/ℓ	합성세제	1.0~1.5mg/ℓ : 기름기있고, 생선 냄새 규제이유 : 맛, 거품
35	수소이온농도(PH)	5.8~8.5	알칼리폐수 또는 산폐수	낮은 PH : 수도시설의 부식 높은 PH : 쓴맛, 미끈미끈한 느낌, PH8.0이하에서 염소소독이 효과적
36	아연(Zn)	1mg/ℓ	광산제련공업, 지하수중 천연유래	20~30mg/ℓ : 금속맛, 텁은맛 급성중독 : 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 불균형
37	염소이온(Cl)	150mg/ℓ	세균소독을 위해 투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38	중발잔유물	500mg/ℓ	맛, 경도, 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스템의 부식, 스케일 형성
39	철(Fe)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중에서 천연유래	0.3mg/ℓ : 황갈색, 적갈색 0.5~1mg/ℓ : 금속성맛 급성중독 - 설사, 구토, 혈액증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40	망간(Mn)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 수중에서 천연유래	0.05mg/ℓ : 흑색, 흑갈색 0.5~1mg/ℓ : 금속성맛 56mg/ℓ : 개의 치사량
41	탁도	2도	가정 및 산업용수의 일반적인 수질오염지표	살균소독방해, 유기체에 의한 질병감염 우려, 부유물질의 함유 의미
42	황산이온 (SO)	200mg/ℓ	산업폐수; 대기방출, 화석연료의 연소	1000mg/ℓ : 설사유발 알카리도 낮은 물에서 급수계 금속부식
43	알루미늄 (Al)	0.2mg/ℓ	산업폐기물, 광물, 토양 침출, 응집처리	0.1mg/ℓ 이상 : 변색(퇴색)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배제외), 호흡기흡입시 허파와 임파선에 축적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개발공수	급 수 대 상						사 업 비 (백만원)			선 정 기준		수 맥 조 사		비 고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업업등	계	국 고	지방교부금	기 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 시	미 실 시		
						총이용량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 작											전 작	국 고
계					공	m/ 일	m/ 일	호	명	m/ 일	ha	ha	m/ 일										

- ※ 1. 생활용수는 250 ℓ -300 ℓ /인/일 기준
-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별지 제2호 서식]

자책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 공 년 월 일 :

(단위 : 천원)

	승인액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 수 원 공	공													
○ 이 용 시 설														
- 양수장	m'													
- 물탱크	m'													
- 송수관	m													
- 기 타														
○ 용자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진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 고	지방교부세	기 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m'	m								

자체가 26-5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 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재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치내용	비 고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

시 설 명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관리번호			개발년도			
위 치	시·군		면		리	
관정구경	m/m	심 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모타설치심도	m	동 력	HP		양수량	m ³ /일
관 리 자	○○ 시·군 ○○ 면 ○○ 리 ○○ 번지 성명 ○○○ (TEL)					
	○○ 시·군 ○○ 과 ○○ 계 성명 ○○○ (TEL)					
수질검사 실시현황	일 자	의 퇴 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p>협 조 사 항</p> <p>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입니다.</p> <p>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와 관계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염행위 및 시설 이상을 발견시에는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군 수 (시장)</p>						

- 규 격 : 가로 40cm , 세로3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양수장 출입문 좌측 상단

